

2023 예원예술대학교 요람  
Yewon arts university



**예원예술대학교**  
YEWON ARTS UNIVERSITY





교 훈  
예 지 · 창 의 · 진 리  
(SAGACITY·CREATIVITY·VERITAS)

예원인은 문화선도자적 예지(叡智·SAGACITY)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미래와 밝은 삶을 통찰하고, 예원의 기상과 역량을 세계에 펼치는 창의(創意·CREATIVITY)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진리(眞理·VERITAS)탐구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정열을 불태워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 교육이념

학술연구, 덕성함양, 도의실천, 사회봉사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예원예술대학교는 창의력과 진취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고 예술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문화예술인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 교육목적

우리 대학은 국민정서의 순화와 함께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분야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실천하는 전인적인 인간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교육목표

창조적 예술인

- 21c 새로운 문명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선도할 세계수준의 창조적인 문화예술인 양성
- 문화예술정보화시대에 따른 전문예술인 육성

실용적 전문인

-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교육
- 최첨단정보화시대에 따른 디지털문화예술 교육
- 주문식 맞춤형 실용교육

봉사적 교육인

- 지역참여 교육
- 지역문화서비스 교육
- 지역봉사 교육

## 2023학년도 학사일정

### □ 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1학기 주요학사일정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 2023학년도 1학기 개강 및 입학식</li> <li>• [3/2 ~ 3/8]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및 재학생 수강신청 확인/정정 기간</li> <li>• [3/27] 수업일수 1/4선(일반휴학 및 복학 마감)</li> <li>• [3/27 ~ 3/29] 교과목 Drop 신청기간</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0 ~ 4/26] 1학기 중간고사</li> <li>• [4/22] 수업일수 2/4선</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 어린이날(공휴일)</li> <li>• [5/15 ~ 5/19]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li> <li>• [5/17] 개교기념일</li> <li>• [5/19] 수업일수 3/4선</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 대체휴일</li> <li>• [6/6] 현충일(공휴일)</li> <li>• [6/8 ~ 6/16] 1학기 기말고사</li> <li>• [6/16] 1학기 수업일 종료(수업일수 4/4선)</li> <li>• [6/19 ~ 8/27] 하계방학</li> <li>• [6/19 ~ 6/22] 보강주간</li> <li>• [6/23] 하계 계절수업 개강</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3] 하계 계절수업 종강</li> <li>• [7/24 ~ 7/26] 2023학년도 2학기 전과 신청기간</li> </ul>

□ 2023학년도 2학기

2023학년도 2학기 주요 학사일정	
8월	• [8/11]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8/14 ~ 8/18] 2학기 등록기간
	• [8/21 ~ 8/25] 2학기 수강신청 기간
	• [8/28] 2023학년도 2학기 개강
	• [8/28 ~ 9/1]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9월	• [9/18 ~ 9/20] 교과목 Drop 신청기간
	• [9/23] 수업일수 1/4선(일반휴학 및 복학 마감)
	• [9/28 ~ 9/30] 추석
10월	• [10/2] 대체휴일(공휴일)
	• [10/3] 개천절(공휴일)
	• [10/9] 한글날(공휴일)
	• [10/16 ~ 10/20] 2학기 중간고사
	• [10/20] 수업일수 2/4선
11월	• [11/13 ~ 11/17]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11/16] 수업일수 3/4선
12월	• [12/4 ~ 12/12] 2학기 기말고사
	• [12/12] 2학기 수업일 종료(수업일수 4/4선)
	• [12/13 ~ 익년 3/1] : 동계방학
	• [12/13 ~ 12/19] 보강주간
	• [12/20] 동계 계절수업 개강
2024년 1월	• [1/10] 동계 계절수업 종강
	• [1/22 ~ 1/24] 2024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기간
2024년 2월	• [2/14]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2/9 ~ 2/11] 설날
	• [2/12] 대체휴일
	• [2/19 ~ 2/23] 2024학년도 1학기 등록 기간
	• [2/22 ~ 2/23] 2024학년도 신입생 OT 및 입학식
	• [2/26 ~ 3/1]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 차 례

## 1. 총람

### 교육목적, 연혁 및 역대총장

교육 목적	-----	11
연혁	-----	13
역대 총장	-----	14

### 학교법인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	-----	15
-----------------	-------	----

### 대학기구 및 교직원

행정기구표	-----	30
보직현황	-----	31
교원	-----	33
직원	-----	39

## 2. 학사행정

<input type="checkbox"/> 수강신청	-----	43
<input type="checkbox"/> 시험과 성적	-----	47
<input type="checkbox"/> 출석과 결석	-----	49
<input type="checkbox"/> 계절학기 수업	-----	50
<input type="checkbox"/> 휴학	-----	51
<input type="checkbox"/> 복학	-----	52
<input type="checkbox"/> 제적·자퇴	-----	53
<input type="checkbox"/> 전과	-----	
<input type="checkbox"/> 편입학	-----	
<input type="checkbox"/> 재입학	-----	
<input type="checkbox"/>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	
<input type="checkbox"/> 졸업	-----	
<input type="checkbox"/> 조기졸업	-----	
<input type="checkbox"/> 학생증 · 제증명발급	-----	
<input type="checkbox"/> 강의평가	-----	
<input type="checkbox"/> 자격증취득	-----	
<input type="checkbox"/> 장학	-----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	
<input type="checkbox"/> 병무	-----	

### 3. 학과소개 및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학과소개 및 전공교육과정

- ▶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 ▶ 뷰티디자인전공-----
- ▶ 융합조형디자인전공-----
- ▶ 만화게임영상전공-----
-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 ▶ 애니메이션&웹툰전공-----
- ▶ 공연예술전공-----
- ▶ 실용음악전공-----
- ▶ 음악전공-----
- ▶ 스포츠과학학과-----

### 4. 부속·부설기관

- 학생생활관-----
- 도서관-----
- 국제교류교육원-----
- 평생교육원-----
- 교수학습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사회봉사센터-----
- 학생상담센터-----
- 학생종합지원서비스센터-----
- 취업창업지원센터-----
- 원격교육지원센터-----

### 5. 학생자치단체

- 총학생회-----
- 동아리-----

### 6. 부록

- 졸업생일람-----
- 학칙 및 학사규정-----
  - ▶ 학칙



- ▷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 ▷ 대학원학칙
- ▷ 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 문화영상창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 사회복지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 국내·외 대학(원)에서의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 ▷ 교수 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운영규정
- ▷ 장학금지급규정
- ▷ 학생준칙
-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 학생단체 등록·운영에 관한 규정
- ▷ 학력증명서 발급규정
-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 ▷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

교조·교화·교목-----

캠퍼스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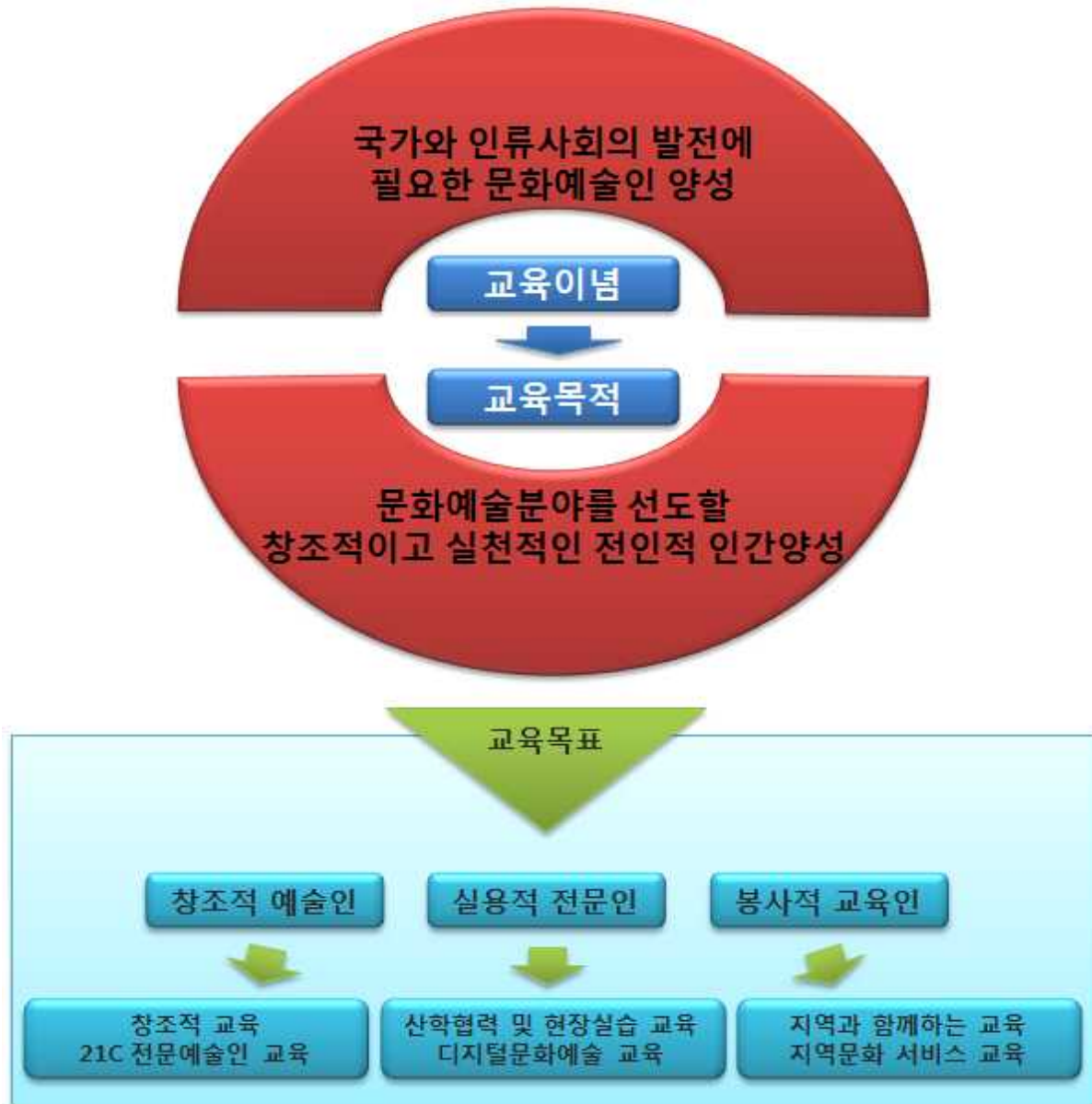
교가 -----

## 총 램

- 교육체계, 연혁 및 역대총장
- 학교법인
- 대학기구 및 교직원
  - 행정기구표
  - 보직현황
  - 교원
  - 직원



# 교육목적



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 체계도

## □ 대학의 건학이념·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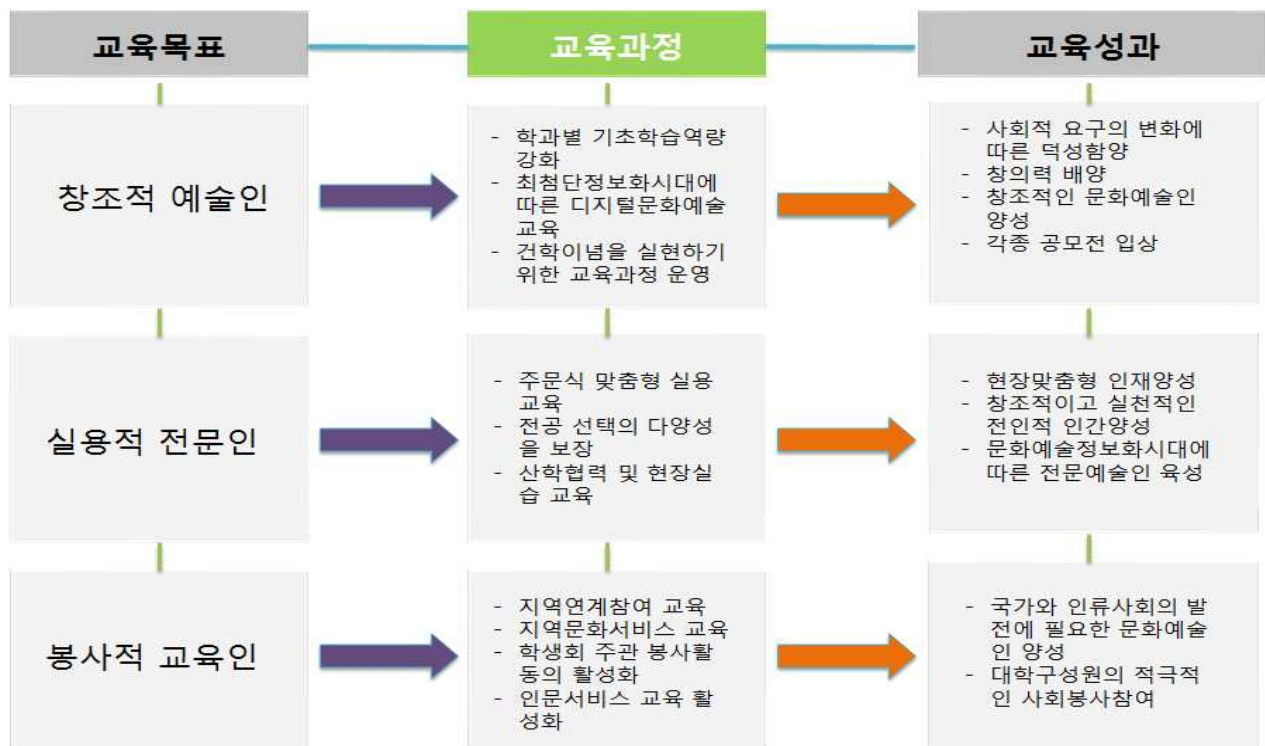
- 예원예술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스포츠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덕성함양, 도의실천, 사회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함.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명제아래 우리의 문화·예술·스포츠의 우월성을 세계 인류사회에 선양하고자 하며, 더불어 21세기 새로운 문명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선도 할 전인적 인재의 양성을 근본으로 함.
- 학술연구, 덕성함양, 도의실천, 사회봉사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정서 순화와 함께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분야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전인적 인간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이 설정됨.

-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예원예술대학교는 창의력과 진취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고 예술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문화예술인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설정함.
- 우리대학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창조적 예술인 ② 실용적 전문인 ③ 봉사적 교육인의 3대 교육목표가 설정되었음.

창조적 예술인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선도할 세계수준의 창조적인 인재로서 예체능과 인문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예술·정보화 시대에 따른 전문예술인육성을 의미하며, 실용적 전문인은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주문식 맞춤형 실용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따른 디지털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실용적인 전문인 양성을 의미하고, 봉사적 교육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예술의 지역사회보급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지역문화서비스 교육 등 지역사회에 대한 실천적 부분을 의미함.

### □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

- 우리대학은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구하며 교육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고 있음.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재학생들이 전공, 교양 및 해외연수와 전문가교육과정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의 편성 그리고 교육지원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

# 예원예술대학교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00. 3. 1	예원대학교 개교(초대 진성태총장 취임)
2000.12.27	학교법인 예문학원 설립(초대이사장 차종선박사 취임)
2002. 2. 7	정보통신부 IT학과 정원확대,비IT학과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선정
2002. 9.12	예원대학교 제 2대 총장 이선구박사 취임
2002.11.18	2002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2003. 2.27	2003년도 정보통신부 IT장비, 비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선정
2003. 7.14	교명변경(예원대학교 → 예원예술대학교)
2003. 7.22	학교법인 명칭 변경(학교법인 예문학원 →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2003. 8.25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설립(입학정원 25명)
2003.10. 2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2004. 2.18	예원예술대학교 제1회 졸업식
2004. 2.25	2004년도 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선정
2004. 6.16	NURI사업(디지털애니메이션 영상 인력양성 사업) 선정
2004.10. 8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설립(입학정원 30명)
2005. 2.17	2004년도 신설대학 종합평가(3개영역 최우수대학 선정)
2005. 6.17	NURI사업(전통문화상품개발인력 양성사업)선정
2006. 8.22	예원예술대학교 제 3대 차종권총장 취임
2006.10.12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RIS)선정
2007. 8.30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평생교육원)
2007. 9.17	사회복지대학원설립(입학정원 30명)
2007. 9.20	2차년도 지방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 우수사업단(한지사업단) 선정상품개발인력양성
2007.11.21	중국 전매대학남광대학 외 6개 대학 교육교류협약 체결
2008. 7. 4	필리핀 세부(UC)대학 외 중국 산동성내 11개 고등학교 교육협약체결
2008. 8.25	3차년도 지방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 최우수사업단(한지상품개발인력양성사업단) 선정
2008.12.26	중국 사천음악대면양예술대학 공동학과 설립 협약체결
2009. 3.26	캠퍼스 위치변경 설립추진 MOU(양주시)· 계획승인(교과부)
2009. 5. 1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육성사업 및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선정
2009. 6.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선정(한지체험교육지원사업단)
2009. 7. 1	중소기업청 대학창업강좌 지원사업 선정 (미술·디자인학부)
2010. 2. 1	대학생중소기업체험학습 지원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선정
2010. 2. 1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선정
2010.10. 8	예원예술대학교 제 4대 총장 윤호군 박사 취임
2010.11.23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기공식
2011. 5. 9	2011학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
2012. 5.14	2012학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2회 연속)
2012.12.14.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문화체육관광부)
2014. 3. 3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개교(위치변경인가, 편제정원 396명 이전) 입학정원(임실캠퍼스 225명, 양주캠퍼스 99명)
2014. 12. 1	위치변경학과(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만화게임영상학과,연극영화·코미디학과,음악학과) 문화영상창업대학원을 문화예술대학원과 통합

년 월 일	내 용
2014. 12. 1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영상창업학과 개설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양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40명, 임실캠퍼스(문화예술대학원 25명, 사회복지대학원 20명)
2015. 1. 13	입학홍보처 신설, 입학홍보처에 취업창업지원센터 신설 교학지원처 교학지원팀을 교무지원팀과 학생지원팀으로 분리 교학지원처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종합서비스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2015. 8. 28	예원예술대학교 대학기관평가 인증 취득
2015. 2. 25	캠퍼스 명칭 변경(전북희망캠퍼스, 경기드림캠퍼스)
2016. 5. 27	예원예술대학교 입학정원 조정(전북희망캠퍼스 207명, 경기드림캠퍼스 99명)
2016. 8. 23	뷰티생활문화연구소 신설
2016. 8. 26	예원예술대학교 제 6대 총장 채영덕 박사 취임
2017.10.	베트남 하노이 화빈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어센터 교육관 개설
2017.11. 30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컨소시엄(VR경찰훈련시스템개발기관선정)
2017.12. 1	경기콘텐츠진흥원(VR/AR 아카데미 지정교육기관 선정)
2018.10. 08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성남 박사
2019. 2. 26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삼수 박사
2019. 9. 16	예원예술대학교 제 6대 김홍대 총장 취임
2020. 5. 17	예원예술대학교 개교 20주년
2022. 3. 5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고광모 박사
2022. 4. 1	예원예술대학교 제 7대 총장 송용운 총장 취임
2022.12. 13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고광모 박사

## 역대 총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예원예술대학교	제1대	총장	진성태	2000.03.01. ~ 2001.12.15
예원예술대학교	제2대	총장	이선구	2002.06.17. ~ 2006.06.16
예원예술대학교	제3대	총장	차종권	2006.08.21. ~ 2010.08.20
예원예술대학교	제4대	총장	윤호군	2010.10.08. ~ 2016.07.31
예원예술대학교	제5대	총장	채영덕	2016.08.26. ~ 2018.10.07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성남	2018.10.08. ~ 2019.02.25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삼수	2019.02.26. ~ 2019.09.15
예원예술대학교	제6대	총장	김홍대	2019.09.16. ~ 2022.03.04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고광모	2022.03.05. ~ 2022.03.31
예원예술대학교	제6대	총장	송용운	2022.04.01. ~ 2022.12.12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고광모	2022.12.13. ~ 현 재



#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원예술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2 에 둔다.(개정 2014.12.23.)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개정 2015.2.16.)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 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6.12.18)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2(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2006.12.18)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 설치)** (삭제 2006.12.18)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2006.12.18)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2006.12.18)



제16조(회의) (삭제 2006.12.18)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06.12.18)

### 제3장 기관

####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개정 2014.12.23.)
2. 감사 3년 (개정 2006.12.18)

②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2.18)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2.18)

제18조의3(임원의 공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 임원의 경우 임원의성명,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8조의4(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제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6.12.18, 개정2008.7.16)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2008.7.16)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개방이사과 감사의 자격 및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건축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는 자로 한다. (개정2008.7.16)

② 개방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2008.7.16)

③ 이사장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전)이내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7.16)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임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2008.7.16)

⑤ 이사장은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지시할 수 있다. (신설2008.7.16)

⑥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감사는 단수 추천)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2008.7.16)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3(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회가 선출한 평의원 4인
2. 직원회가 선출한 평의원 2인
3. 학생회가 선출한 평의원 1인
4. 교외 평의원 4인(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및 인사)

③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4(대학평의원회 조직)**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5(대학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자문한다. (개정2008.7.16)

1. 대학의 발전계획안에 관한 사항
2. 대학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2008.7.16)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6(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등)** 대학평의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19조의7(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18)

③ 이사 정수의 3분의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1(2명)로 한다. (신설 2006.12.18)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 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12.18)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6.12.18, 개정2008.7.16)

**제21조(이사장 선임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6.12.18)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2008.7.16)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2008.7.16)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2008.7.16)

## 제2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18)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18)

**제28조(이사회 의결 및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18)

## 제4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
2. 기타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1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사업 및 기타수익사업을 경영한다.

**제33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1조의 수익사업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2 에 둔다. (개정 2014.12.23.)

**제34조(관리인)** ① 제31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해산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4.12.23.)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제37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원

#### 제1관 임명

**제38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임면하는 경우는 전임총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개정 2008.7.16., 개정 2016.8.19)

② 2002.1.1 현재 재직중인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승진·재임용 때마다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1. 교 수 정년까지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6년(개정 2019.02.08)
4. <삭제 2014.12.23.>

③ 신규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임용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나. 부교수 및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4.12.23.)
2. 급여 : 정관 제44조로 정하는 보수에 의해 지급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업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대학 교육기관의 대학원장·부총장·기획조정처장·교학지원처장·입학홍보처장·행정지원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외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하고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개정 2007.08.08)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2008.7.16)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기타사유

**제40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8.7.16)
7.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39조 제2, 3, 4, 6, 8, 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39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제43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 실시 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별도 규정이 없을 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5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5조의4(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준용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18)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 대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9.02.08.)

2. 삭제(2019.02.08.)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과 사회봉사활동
-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성원과 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사위원회 회의 및 심의 내용을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법인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외부위원(1명)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02.08.)
- 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9.02.08.)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의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원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2.08.)
- ⑤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9.02.0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54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7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제5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9)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07.19)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통고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1호 내지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호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2.08.)

1. 금품 및 향음을 수수한 경우(신설 2019.02.08.)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신설 2019.02.0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신설 2019.02.08.)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신설 2019.02.08.)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신설 2019.02.08.)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신설 2019.02.08.)

**제60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①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02.08.)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2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사무직원(개정 2019.02.08.)**

**제6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직무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 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9.02.0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수행직무 및 직종에 따라 학력, 경력, 전문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자격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2.08.)

③ 재직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3조의2(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08.)

**제64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2.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9.02.08.)

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과 학교간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2.08.)

**제64조의2(근속승진)**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예원예술대학교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개정 2019.02.08.)

**제6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08.)

**제66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2.08.)

**제67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08.)

**제6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19.02.08.)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2.08.)

## 제7장 직제

### 제1절 법인

**제69조(법인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4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대학교

**제70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의 경우 교수 또는 2급직원으로 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외협력부총장의 경우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8.19.)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의2(대학원장)**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23.)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1조(학부(과)장)** ① 대학교의 각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둔다.

②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학부(과)의 교무를 총괄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2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조정처, 교학지원처, 입학홍보원처, 행정지원처를 두고, 대학원에는 대학원교학팀을 둔다. 교학지원처장·입학홍보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획조정처장·행정지원처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이나 4급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18) (개정 2014.12.23.)

② 각 처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행정지원처장은 4급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02.08.)

③ 각 처에는 필요한 팀 또는 부서를 두며, 부처장 또는 팀장은 처장급보다 하위의 교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02.08.)

④ 대학교에 교육, 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2.08.)

⑤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2.08.)

**제73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총장이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02.08.)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절 정원

**제74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별표1, 2와 같다.

## 제8장 보칙

**제75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지역)

신문에 공고한다.

**제7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7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차 종 선	1954. 12. 1.	4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37 서호아파트 105동 801호
이 사	김 덕 순	1968. 11. 19.	4년	익산시 부송동 1075 주공 2차아파트 204동 1205호
이 사	김 용 규	1952. 9. 4.	4년	익산시 영등동 2차 제일아파트 203동 801호
이 사	권 양 기	1957. 2. 7.	2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2
이 사	이 재 호	1958. 4. 23.	2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6-2 성원골드아파트 가동 201호
이 사	국 영 희	1956. 12. 22.	2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205-2 전원빌라 207호
이 사	진 성 태	1945. 2. 17.	2년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20 동성아파트 11동 1409호
감 사	안 태 관	1968. 3. 2.	2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1 아주 대우1차아파트 107동 309호
감 사	조 창 호	1964. 2. 1.	1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동아현대아파트 104동 1403호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교직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직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정관 규정에 의한다.
- 3.(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예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4.(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 제청된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 제청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재임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2006.12. . 변경)(2015.5.26. 변경)(2016.8.19. 변경)

직 군	직 급	정 원
일 반 직	2급	1
	4급	1
	6급	1
	8급	1
	소 계	4
총 계		4

「별표2」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2006.12. . 변경)(2015.5.26. 변경)(2016.8.19. 변경)

직 군	직 급	정 원
일 반 직	2급	1
	3급	1
	4급	5
	5급	6
	6급	7
	7급	14
	8급	
	9급	
	소 계	34
기 술 직	5급	1
	7급	1
	9급	1
	소 계	3
총 계		37명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내역

1. 건축기준면적 : 15,200㎡

2. 확보내역

구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감정평가액	소유자	비 고
부동산	토지	전북 임실 신평 창인리	271	학교용지	24,673		예문학원	
			304	전	532		"	
			78-5	도	659		"	
			78-6	도	31		"	
			78-7	도	63		"	
			314-5	도	31		"	
			315-1	도	46		"	
			317-2	도	371		"	
			소 계			26,406		
	건물	상 동	271		10,756	3,600,000,000	예문학원	
			상 동		4,600	2,121,000,000		
			소 계			15,35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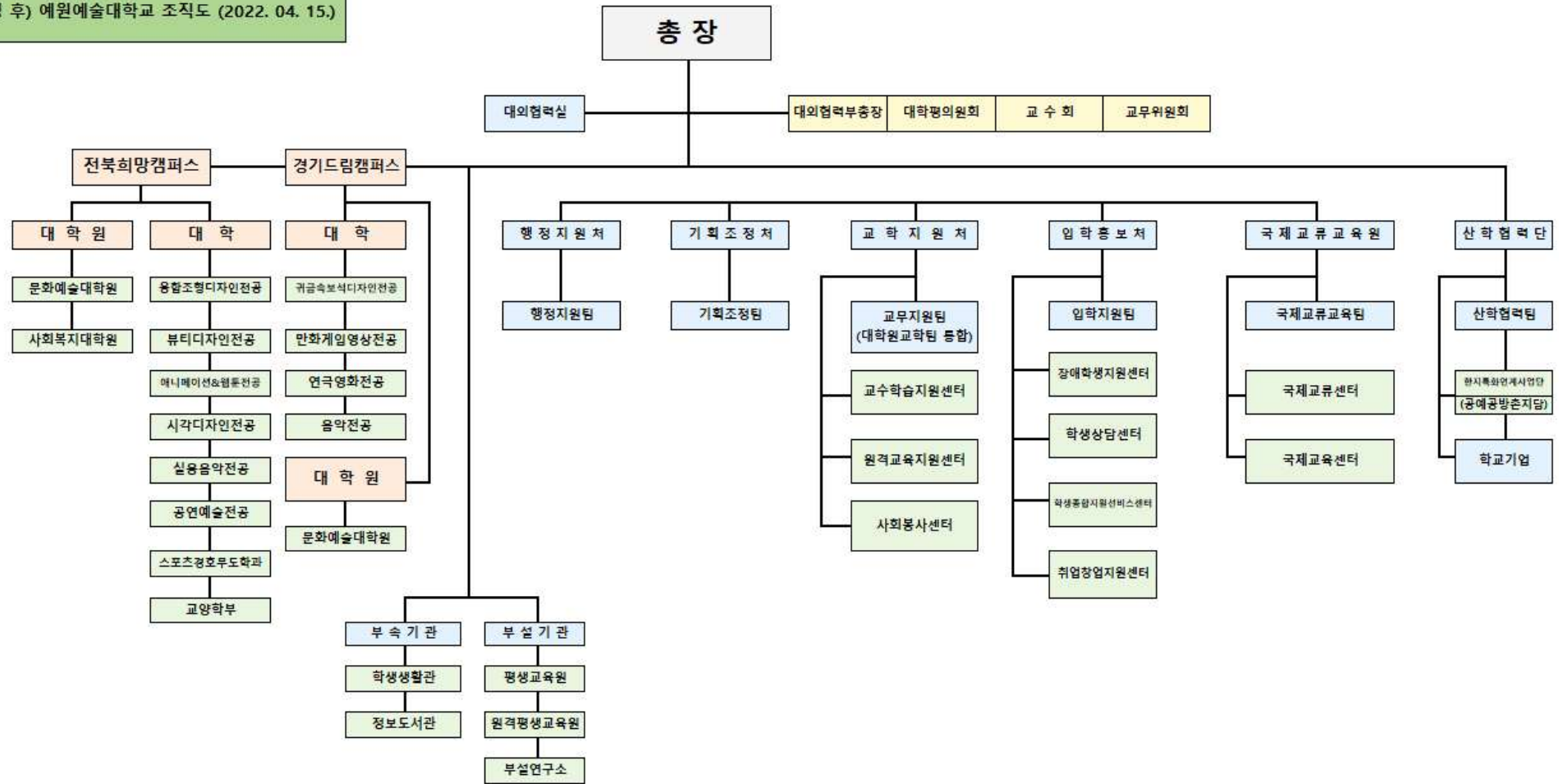
1. 기준액 : 4,400,000,000원

2. 확보내역

구분	재산의 종류	예치기관			수량	금액 (평가액)	예금주 (출연자)	비고
예금	정기예금	(주) 고려상호신용금고			1	520,000,000	학교법인 예문학원	
						20,000,000	학교법인 예문학원	
소계						540,000,000		
구분	재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금액 (평가액)	소유자	비고
부동산	토지	익산시 팔봉동	371-1	전	3,425	3,817,340,000	예문학원	
			371-2	답	443			
			372-3	대	431			
			372-5	대	399			
			372-8	도	60			
			383-2	대	1,276			
			383-3	산	767			
			384-1	전	1,256			
			385	대	1,000			
			385-1	대	795			
			386-1	대	1,319			
			387-1	대	1,203			
			전주시 태평동1가	39-1	대	2,112	455,000,000	예문학원
소계				14,486	4,272,340,000			
구분	재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		금액 (평가액)	소유자	비고
부동산	건물	익산시 팔봉동	372-3 372-5 383-2 385 385-1 386-1 387-1	음식점 326.55㎡ 1층 예식장 397.53㎡ 2층 예식장 280.8㎡ 지하실 116.7㎡ 음식점 72㎡ 음식점 72㎡ 사무실 (사위장, 휴게실) 105.3㎡ 1층 골프연습장 106.98㎡ 2층 골프연습장 106.98㎡		801,623,400	예문학원	
소계						801,623,400		
총계						5,613,963,400		

# 예원예술대학교 행정기구표

(변경 후) 예원예술대학교 조직도 (2022. 04. 15.)





# 보 직 현 황

## 1. 대학본부

총장	송 용 운		
교학지원처장	이 성 호	기획조정처장	최 희 연
행정지원처장	차 종 삼	대외협력실장	차 종 삼
산학협력단장	김 규 희		

## 2. 대학원장

문화예술대학원장	이 성 호	사회복지대학원장	이 성 호
----------	-------	----------	-------

## 3. 부속 및 부설기관장

평생교육원장	박 정 훈	원격평생교육원장	박 정 훈
국제교류교육원장	김 연 중	정보도서관장	송 민 구
학생생활관장	장 성 식	학생상담센터장	서 재 열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김 나 리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정 재 업
사회봉사센터장	김 나 리	학생종합서비스센터장	서 재 열
국제교류센터장	김 진 호	국제교육센터장	김 세 영
취업창업지원센터장	신 동 은		

## 4. 학과장

미술조형디자인학부장	서은성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주임교수	서은성
미술조형전공주임교수	김연중	융합조형디자인전공주임교수	김연중
뷰티디자인전공주임교수	최정순	디지털콘텐츠학부장	고병희
만화게임영상전공주임교수	이동민	애니메이션&웹툰 전공주임교수	고병희
시각·영상디자인전공주임교수	신동은	공연예술학부장	유록식
연극영화전공주임교수	유록식	공연예술전공주임교수	김재명
실용음악학과장	안시현	음악전공주임교수	홍정인
교양학부장	송민구	스포츠과학과 학과장	서재열
생활체육학과장	서재열	경호무도학과장	서재열

## 5. 각 위원회

부서	위원회명
교학지원처	교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수학습지원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기획조정처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기획연구위원회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행정지원처	직원인사위원회
입학홍보처	입시홍보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취업지원위원회 학생정원조정위원회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문화예술대학원운영위원회 문화영상창업대학원운영위원회 사회복지대학원운영위원회

부서	위원회명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학생생활관	생활관운영위원회
정보도서관	정보도서관운영위원회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교육원운영위원회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 교원

## 1. 총장

성명	직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공분야
송용운	총장	박사/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 2. 전임교원

소속	성명	직위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융합조형디자인전공	이철규	교수	석사/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융합조형디자인전공	김선태	교수	석사/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융합조형디자인전공	김연중	조교수	석사/New York Academy of Art	조각&설치
융합조형디자인전공	송미령	조교수	석사/예원예술대학교	미술전공
융합조형디자인전공	유봉희	조교수	석사/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융합조형디자인전공	김미진	조교수	석사/예원예술대학교	미술
융합조형디자인전공	홍남기	조교수	석사/경희대학교	회화
금속조형디자인전공	소현정	교수	석사/원광대학교	산업공예학과
금속조형디자인전공	신원철	교수	석사/원광대학교	산업공예학과
금속조형디자인전공	서은성	부교수	박사수료/원광대학교	산업공예학과
뷰티디자인전공	최정순	조교수	박사/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패션과뷰티문화)
뷰티디자인전공	서지영	조교수	박사/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패션과뷰티문화)
만화게임영상전공	김용관	부교수	박사수료/송실대학교	미디어아트
만화게임영상전공	류창수	부교수	박사/목원대학교	전자정보보호공학
만화게임영상전공	이동민	부교수	박사수료/한세대학교	IT융합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이현우	부교수	박사수료/군산대학교	디자인
만화게임영상전공	조형익	부교수	석사/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전공	고병희	교수	박사수료/중부대학교	정보과학과
애니메이션전공	강효순	부교수	박사/중부대학교	정보과학과
애니메이션전공	방우송	부교수	박사수료/중부대학교	정보과학과
애니메이션전공	차양훈	부교수	석사/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애니메이션전공	임소영	부교수	박사/홍익대학교	영상학과

소속	성명	직위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시각디자인전공	김경실	부교수	박사수료/원광대학교	디자인
시각디자인전공	김혁진	조교수	석사/강남대학교	전자계산학
시각디자인전공	신동은	부교수	박사/중앙대학교	디자인
연극영화전공	고광모	교수	박사/부르고뉴대학교	문학
연극영화전공	유록식	부교수	학사/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연극영화전공	조예진	조교수	박사/동덕여자대학원	체육학
연극영화전공	김나리	조교수	석사/middlesex university london	무용안무
실용음악전공	홍혜정	부교수	석사/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
실용음악전공	이윤석	조교수	석사/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
실용음악전공	안시현	조교수	박사/경희대학교	응용예술학과(보컬)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신윤정	교수	석사/전주대학교	음악과(성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김재명	부교수	석사/전주대학교	음악(성악)
공연예술뮤지컬전공	박정훈	부교수	석사/국립음악원 니콜로 피친니	성악
공연예술뮤지전공	이우연	조교수	석사/conservatorio di muscia giuseppe verdi	성악
공연예술뮤지전공	최정근	조교수	박사/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
음악전공	전현수	교수	석사/오비인시립음대	오브에
음악전공	김규희	부교수	박사/the boston conservatory	피아노
음악전공	최수정	부교수	석사/볼로냐국립음악원	피아노
음악전공	김버들	조교수	석사/프랑스 Strasbourg Conservatoire	바이올린
음악전공	홍정인	조교수	석사/목원대학교	관현악
스포츠경호무도학과	문병량	교수	박사/건국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이성호	교수	박사/원광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최희연	부교수	박사/경희대학교	스포츠의과학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정용우	부교수	박사/인천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서재열	조교수	박사수료/우석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윤현정	조교수	박사수료/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오현택	조교수	박사/서울대학교	체육교육

소속	성명	직위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교양학부	김삼수	교수	박사/원광대학교	경제학과
교양학부	남궁재	교수	박사/원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양학부	김영숙	교수	박사/서울대학교	철학과/사회철학
교양학부	김명희	교수	박사/국민대학교	스포츠심리학
교양학부	김윤우	부교수	박사/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양학부	김영란	부교수	박사/국민대학교	체육학
교양학부	김도영	조교수	박사/전북대학교	문화재
교양학부	김준	부교수	박사/안양대학교	경영학
교양학부	정재엽	조교수	박사/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
교양학부	이화선	조교수	석사/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패션과뷰티문화)
교양학부	이동희	조교수	박사/전북대학교	사학과(한국사)
교양학부	김보경	조교수	박사/고려대학교	영어교육
교양학부	송민구	조교수	박사/동국대학교	전산통계학
교양학부	박주희	조교수	박사/고려대학교	교육학
문화예술대학원	최병창	부교수	박사/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문화예술대학원	전경미	교수	박사수료/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문화예술대학원	박앤젤리나	조교수	박사/가스파레스폰티니공립음악원	재즈피아노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	박사/독일 쾰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복지대학원	편성진	부교수	박사/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국제교류교육원	김진호	조교수	박사/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문학박사)
국제교류교육원	이준영	조교수	박사/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

### 3. 겸임교수

소속	성명	직위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융합조형디자인전공	김은희	겸임교원	박사/건국대학교	실내건축설계전공
뷰티디자인전공	안재규	겸임교원	석사/상명대학교	웨딩비즈니스학
뷰티디자인전공	김혜연	겸임교원	석사/성신여자대학교	메이크업, 특수분장
뷰티디자인전공	이송희	겸임교원	석사/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뷰티디자인전공	정환희	겸임교원	박사/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뷰티디자인전공	송지현	겸임교원	석사/성신여자대학교	메이크업
뷰티디자인전공	이유림	겸임교원	박사/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연극영화전공	박승연	겸임교원	석사/예원예술대학교	방송제작
실용음악전공	김진환	겸임교원	석사/세종대학교	실용음악
시각·영상디자인전공	백장미	겸임교원	석사/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

### 4. 조교

소속	성명	직위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애니메이션&웹툰전공/ 교양학부	김수진	행정조교	학사/예원예술대학교	음악
연극영화전공/ 공연예술전공	이준형	행정조교	학사/예원예술대학교	유지컬
뷰티디자인전공	신민경	행정조교	학사/예원예술대학교	뷰티패션디자인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스포츠학과/ 문화재보존예술학과/ 무용학과	권지유	행정조교	학사/예원예술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
만화게임영상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경호무도/ 생활체육	김경하	행정조교	석사/예원예술대학교	영상콘텐츠
융합조형디자인전공/ 한지공간조형디자인학과/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 미술조형	이채영	행정조교	학사/예원예술대학교	한지공간조형디자인
융합조형디자인전공/ 한지공간조형디자인학과/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	금찬	행정조교	학사/예원예술대학교	한지공간조형디자인
음악전공/실용음악전공	김유진	행정조교	학사/예원예술대학교	실용음악

## 직 원

구분	처/부속/부설	센터/실/팀	직위	성명	비고
1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팀장	최상범	
2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팀장	박지선	
3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팀장	서주영	계약직
4	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팀장	이용섭	
5	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팀원	나영선	
6	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팀원	김현우	
7	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팀원	김누리	
8	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팀원	김다은	
9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교육팀	팀장	노진수	
10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교육팀	팀원	강제이	
11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교육팀	팀원	문필선	계약직
12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교육팀	팀원	필릭스	계약직
13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팀장	노은정	계약직
14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팀원	김종민	계약직
15	입학홍보처	입학지원팀	팀장	차상원	
16	입학홍보처	입학지원팀	팀원	김상윤	
17	입학홍보처	입학지원팀	팀원	이준석	
18	입학홍보처	입학지원팀	팀원	김수진	계약직
19	양주학생생활관	양주학생생활관	관장	장성식	
20	정보도서관	정보도서관	팀원	박은수	계약직
21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김공식	계약직
22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처장	차종삼	
23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장	문덕현	
24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송재민	
25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백진민	
26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최희수	
27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홍지영	
28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최영이	계약직
29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김홍기	계약직
30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강주식	계약직
31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안여명	계약직
32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박석흥	계약직
33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오연석	계약직
34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김옥례	계약직
35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이순옥	계약직
36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조병섭	계약직
37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	팀원	도석현	계약직
38	대외협력실	대외협력실	팀원	고단비	계약직







## 학사행정

- 수강신청
- 시험과 성적
- 출석과 결석
- 계절학기 수업
- 휴학
- 복학
- 제적.자퇴
- 전과
- 편입학
- 재입학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 졸업
- 조기졸업
- 학생증 . 제증명발급
- 강의평가
- 자격증취득
- 장학
- 취업지원
- 병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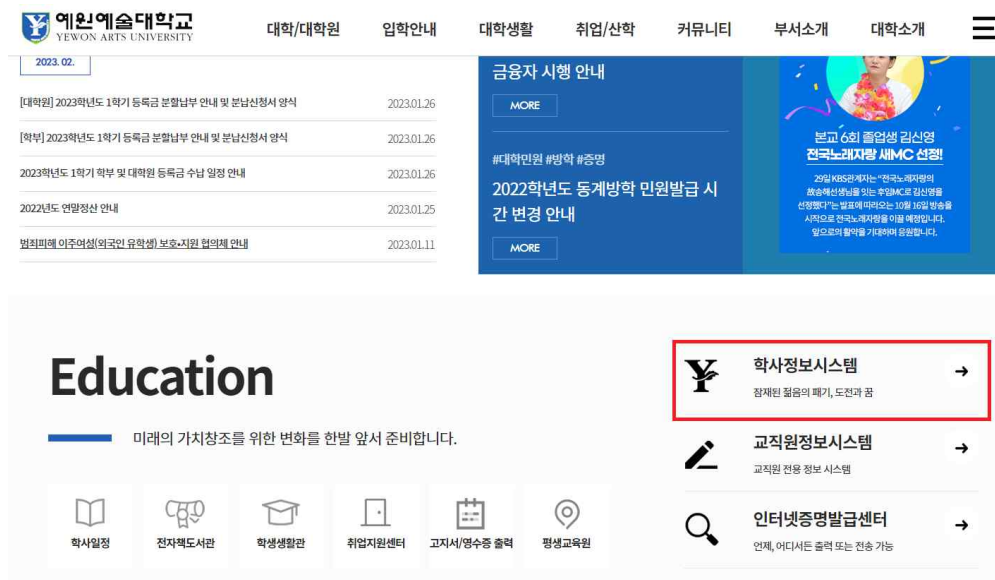


# 수강신청

## 1) 수강신청 요령

- 수강신청은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수업정보-강의계획서조회)에 게시된 강의계획서를 열람하고 수강과목과 해당사항을 학과장·조교의 지도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 3.2(목) 13:00 ~ 3.8(수))

가.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의 학사정보시스템을 클릭하여 학번, 비밀번호(!생년월일)를 입력 후 접속한다. 학번을 모르는 경우 좌측의 아이디 찾기에서 확인한다.



나. 학적정보의 학적사항변경을 클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연락처 및 주소 등 변경된 사항을 수정한다.(각종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반드시 확인 및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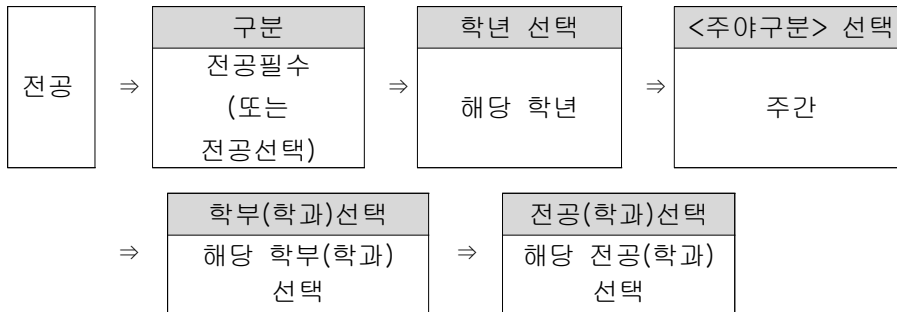
다.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본인 해당 학과를 찾아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실시한다.



i) 교양 수강신청하고자 할 때



ii) 전공필수·전공선택 수강신청하고자 할 때



★★ iii) 졸업이수학점

이수 구분	교양	전공필수			전선	계선 (자선)	졸업이수 학점
		전기	전필	전심			
이수 학점	교양이수학점 20학점 교양필수 5~9학점 필히 이수하여야함. (각 이념별 학과목씩 필수)	6학점	12학점	6학점	6학점	80학점	130학점
		24학점					

★※ <교양> 과목은 전체 학기 합산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합친 학점이 최소 20학점이어야 함.  
단, 교육이념(창조적예술인, 실용적전문인, 봉사적교육인)별  
1과목 이상은 필수로 이수해야 함.

★※ <전공> 과목은 전체 학기 합산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심화, 전공선택을 합친 학점이 최소 24학점 이상이어야 함.

★※ 전공필수로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함.

※ K-MOOC 이수 - “K-MOOC”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말한다. K-MOOC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발급받은 재학생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교양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K-MOOC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말 시험 1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K-MOOC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K-MOOC 이수증 원본 1부 .

※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 -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단, 학기당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수업정보를 클릭하여 시간표를 조회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학사정보시스템' (Academic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On the left is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공지사항', '학적정보', '전공결정', '수업정보', '수강신청', '성적정보', '계절학기', '등록/양학', '원격강의', and '기타'. The '수강신청' (Course Selection) option is highlighted. The main area displays a table for '수강신청 과목' (Course Selection Subjects) with columns for '구분' (Category), '수강코드' (Course Code), '교과목명' (Course Name), '학점' (Credits), '담당교수' (Instructor), '배강' (Section), '재/대' (Semester/Year), '재수강학기' (Retake Semester), and '재수강과목' (Retake Course). Below this is a '수강신청 정보' (Course Selection Information) section with fields for '신청과목:' and '신청학점:'. At the bottom is a '시간표' (Class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요일' (Day), '교시' (Class Time), '교수' (Instructor), '강의실' (Lecture Room), and '과목' (Course).

구분	수강코드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배강	재/대	재수강학기	재수강과목
교선	10329	심리학개론	3		개강			
전선	10027	확스모델링	2	백경동	개강			
전필	10026	장신구제작기법1	2	소현정	개강			
전선	10029	금속성형기법	2	노병득	개강			
전선	10028	장신구CAD/CAM실무1	2	서은성	개강			
전선	10030	커머셜주얼리디자인1	2	고황선	개강			

요일	교시	교수	강의실	과목
월	1교시	고황선	예지관3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1
월	2교시	고황선	예지관3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1
월	3교시	고황선	예지관3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1
월	5교시	소현정	예지관105	장신구제작기법1
월	6교시	소현정	예지관105	장신구제작기법1
월	7교시	소현정	예지관105	장신구제작기법1
화	1교시	서은성	예지관216	장신구CAD/CAM실무1
화	2교시	서은성	예지관216	장신구CAD/CAM실무1
화	3교시	서은성	예지관216	장신구CAD/CAM실무1
화	5교시	백경동	예지관105	확스모델링
화	6교시	백경동	예지관105	확스모델링
화	7교시	백경동	예지관105	확스모델링
수	1교시	노병득	예지관107	금속성형기법
수	2교시	노병득	예지관107	금속성형기법
수	3교시	노병득	예지관107	금속성형기법
수	5교시	황지호	예지관213	유색보석학감별
수	6교시	황지호	예지관213	유색보석학감별
수	7교시	황지호	예지관213	유색보석학감별

마. 로그아웃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이며, 수강과목 전산입력 오류로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이 진다.

③ 편입학자 수강신청

가. 이수해야할 학점 및 교과목

-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학 학년인 3학년부터 4학년 해당 학부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전공이수학점인 48학점이상(인정 전공학점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적학교의 전공학점이 인정되더라도 본교에서 반드시 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본교 편입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최소 65학점이상이므로 전공포함 기타 과목(자유선택)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편입학자의 경우 교양학점은 일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 교양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 2) 신청기준학점

① 매학기 수강신청기준 학점은 16~17학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최종학기 평점평균에 따라 수강신청학점을 산정) 평점평균이 A(4.0)이상인 자는 19학점까지, 평점평균 D(1.0) 미만인자는 수강신청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최종학기 및 매학기에는 9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 이수 신청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된다.

## 3) 수강신청확인, 변경 및 정정

① 수강신청 확인, 변경 및 정정은 개강 후 1주일 이내로 하며, 학생은 이 기간 중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기간 내에 수정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된 교과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0”점 처리한다.

4) **수강 불인정** -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과목(최종 수강신청확인통지서에 없는 교과목과 교과목이 있더라도 최종 수강신청 확인서상의 수강분반이 아닌 분반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수강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수강신청과목의 취소(Drop)**

-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학칙에 의거 취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후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신청 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단 결석일수가 4분의 1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학기별 수강과목의 취소(Drop)는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소 후 수강 잔여학점이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수강취소된 교과목은 학적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며, 해당학기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로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미달되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

6) **재 수강과목의 수강신청** -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취득성적이 C+(2.5)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이수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7) **수강신청 종료**

- ① 매학기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까지 1과목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무계결석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과장의 제적제외에 의거 장기 결석자와 동일하게 제적처리한다.
- ② 단, 미 수강신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학부과장이 특별히 구제를 요청할 경우 총장의 승인 후 학년별 최저신청학점의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 후 제적을 유보시킬 수 있다.

8) **수업시간 안내**

교시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주말 주간	주말 야간
1교시	09:00~09:50	19:00~19:50	09:00~09:50	19:00~19:50
2교시	10:00~10:50	20:00~20:50	10:00~10:50	20:00~20:50
3교시	11:00~11:50	21:00~21:50	11:00~11:50	21:00~21:50
4교시	12:00~12:50	22:00~22:50	12:00~12:50	22:00~22:50
5교시	13:00~13:50		13:00~13:50	
6교시	14:00~14:50		14:00~14:50	
7교시	15:00~15:50		15:00~15:50	
8교시	16:00~16:50		16:00~16:50	
9교시	17:00~17:50		17:00~17:50	
10교시	18:00~18:50		18:00~18:50	

# 시험과 성적

## 1) 시험

- 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평가의 기준은 담당 교·강사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의 성적평가 반영 비율에 따른다.
- ⑤ 학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할 경우는 7일 이내에 추가시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공주임교수 및 소속 학과장 그리고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⑥ 학업성적의 등급별 비율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다만,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A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등급	A	B	C	D	F
비율(%)	10~30%	20~50%	0~40%	0~50%	0~50%

- ## 2) 시험감독
-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 교·강사로 한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교·강사를 배치 할 수 있다.

## 3) 성적평가

-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학생의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수시평가성적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강의계획서에 따라 평가한다.
- ② 담당 교·강사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근본으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의 기준은 담당 교·강사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의 성적평가 반영 비율에 따른다.
- ③ 학업성적은 등급 또는 평점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한다.
- ④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로 평가하며 성적의 등급은 A+(4.50, 95~100), A0(4.00, 90~94), B+(3.50, 85~89), B0(3.00, 80~84), C+(2.50, 75~79), C0(2.00, 70~74), D+(1.50, 69~65), D0(1.00, 60~64), F(0.00, 0~59)로 세분한다.
- ⑤ 낙제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반드시 재 이수하여야 한다.
- ⑥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및 학부(과)에서 지정한 Pass과목은 P(합격), F(불합격)로 성적을 평가한다.

## 4) 성적 이의신청

-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학지원처에서 공고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학지원처는 교과목별로 정리 담당교수에게 일괄 확인케 하여 그 적부를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성적 정정

-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성적의 정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성적정정공고기간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신청원을 교학지원처를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의 정정은 그 착오의 원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교수의 평가와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나.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다. 기타 착오 발생의 원인이 학생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신청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 6) 군입대자의 성적처리

①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경과한 군입대자는 조기시험을 신청해야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전에 입대한 자는 당해 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7) 시험부정행위자

① 시험부정행위자는 그 과목의 성적을 F학점으로 “0”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자는 시험 부정행위 증거물을 첨부 및 사실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고 교학지원처장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적발 당일로부터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으로 처한다.

③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

#### 8) 성적의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①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학기 성적의 전부

② 시험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가 동일한 시험기간내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전부

③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④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⑤ 수강 신청한 과목 이외의 과목의 성적

#### 9) 휴학자의 성적처리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일반 휴학한 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기말고사 기간중이라도 해당학과 학년의 기말시험 종료 후 휴학한 자는 해당학기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

#### 10) 평균백분율성적 산출 및 평점평균산출

① 학업성적의 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평점(실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신청학점합계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실점인 경우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가. 신청학점수

나. 평점합계

다. 평균(백분위)성적

#### 11) 학사경고 조치

① 매학기말 성적이 D(1.0)에 미달한 자 또는 3과목이상 F인자는 학사경고한다.

② 학기말 성적에 따라 본인의 성적통지표에 "학사경고" 표시를 한 후 발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에 14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 12) 학사경고의 연속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입대휴학 하였다가 복학한 학기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연속 횟수로 처리한다.



---

---

## 출석과 결석

---

---

### 1) 출석

- 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불참석 할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 낙제가 된다.
- ② 출석 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로 하여 기산일로 하되, 수강신청을 변경한 과목은 변경일 이전일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2) **지각의 결석처리** - 지각은 수업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출·결석점수

- ① 교수는 매 강의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한다.
- ② 교원은 종강과 함께 출석부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공결 및 유계결석

① 아래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 및 유계결석신청서를 작성,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공결 및 유계결석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시하여야 한다.

#### 가. 공결

- 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
- ii) 학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자(홍보, 공연, 대회참가, 대회참가를 위한 합숙훈련 등)
- iii)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자.
- iv) 병사관계(신체검사)
- v)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vi)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7일전에 공결 및 유계결석 신청서를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vii) 공결을 허락받은 자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결석일수(시간)로 인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 viii) 공결 허용일은 사유발생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 나. 유계결석

- i) 직계가족의 사망.
- ii) 직계존속중 부모의 대소기일.
- iii) 본인의 결혼, 신병.
- iv)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v) 공결 및 유계결석 신청서는 사유발생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vi) 유계결석으로 허락을 받은 자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결석일수(시간)로 인한 어떠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 vii) 유계결석에 준하는 결석 허용일은 다음과 같다.
  - (1) 직계가족의 사망 : 직계가족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 사망시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내로 하고, 형제자매의 사망시는 공휴일 포함하여 5일 이내로 한다.
  - (2) 부모의 대소기일 : 2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3일까지 인정한다.
  - (3)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증빙서류에 의거 7일간 인정한다.

## 5) 공결 및 유계결석자의 조치

- ① 공결 및 유계결석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기말성적 및 종합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 ② 공결 및 유계결석 대상자일지라도 학기중 공결일수(시간수) 및 유계결석 일수(시간수) 총일수(시간수)가 1/4 이상 넘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계절학기 수업

---

---

- 1) 용어의 정의 - “계절수업”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 2) 교과목 개설 - 교과목 개설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학사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개설하되, 수강인원이 8인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8인 미만인 교과목 중 개설 사유가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으로 개설 할 수도 있다.
- 3) 수강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등록하고 당해 학기에 수강절차를 마친 자는 수강 자격을 갖는다.
- 4) 수강신청
  - ① 수강희망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학과장을 경유·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 ② 수강신청 마감 후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폐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취소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은 개강 전일까지 설강된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강신청 범위는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5) 수업기간 - 수업기간은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되, 그 기간은 6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6) 강의내용 - 당해 학기에 실시한 강의내용을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학점 -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시험시간 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
- 8) 성적평가
  - ① 교과목 출석이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성적은 학칙32조에 의거 평가한다.
  -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에 적용하는 성적의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전체성적(졸업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삼입한다.
- 9) 등록 - 학생은 계절수업 등록 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금은 수강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이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단,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의 납입금을 환불한다.

---

---

# 휴학

---

---

## 1) 휴학의 절차 및 사유

### ① 일반휴학

- 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소속 학과장을 거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등록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당해연도 군입영, 임신·출산·육아휴학이나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 다.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당시의 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 ② 군입대 휴학

- 가. 재학 또는 일반 휴학중인 학생이 군복무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하기 10일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휴학을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나. 등록된 자가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입영 휴학한 경우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은 전역 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에 입영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다.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되며 일반휴학기간 중 에 군입대 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라. 군입대 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 마. 입영휴학을 신청한 자가 귀향 또는 입영연기 되었을 때는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육아 휴학

- 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학생은 최장 1년(2개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여 학생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최장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다.

### ④ 창업 휴학

- 가.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 다.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라. 학기말고사 종료 후 부터 다음 학기 개강 초 1개월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특별휴학

- 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휴학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발생한 경우
  - (2) 휴학이 만료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3)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총장이 휴학을 권고한 자

## 2) 휴학의 기간 및 휴학원 제출시기

- ① 휴학은 학기 초로부터 4분의 1선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휴학의 기간은 휴학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휴학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가. 일반휴학 : 1회에 1년(2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 소멸 시 6월(1학기)로 단축 할 수 있다. 단, 9학기 이상 재수강자의 휴학기간은 6월(1학기)로 한다.
  - 나. 군입대휴학 : 군 의무 복무기간으로 한다.
  - 다. 특별휴학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 소멸 시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휴학원 제출시기
  - 가. 학기 중(방학 중 제외) : 질병, 돌발적인 사고 등
  - 나. 등록기간 이내(수업일수 4분의 1이내) : 일반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 다. 군 휴학자 : 학기 중에는 입대일 14일 이전

## 3) 휴학의 제한 및 휴학자의 성적인정

- ① 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군입대 및 임신, 출산, 육아 휴학기간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신입생은 군 입대 휴학만 하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④ 중간고사를 필한 후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휴학하는 자 중 해당학기 성적이수를 원하는 자는 휴학원 접수일 2주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기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휴학원 접수일로부터는 휴학기간이 진행되므로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복학

---

---

## 1) 시기·절차

-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지원팀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질병 휴학자 : 건강진단서 1부
  - 나. 군입대 휴학자 : 병역사항 기록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2) 허가·등록

- ① 휴학기간 중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과의 학생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

---

## 제적·자퇴

---

---

- 1) **제적** - 제적이라 함은 일단 우리 대학교의 학적을 취득했던 자가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적요건**
- ①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 초로부터 4분의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때
  - ②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때
  - ③ 신고 없이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상 결석한 때
  - ④ 타교에 입학한 때
  - ⑤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 ⑥ 기타 학칙을 위반한 때
  - ⑦ 재학연한을 초과한 때
- 3) **제적처분 통지** - 교학지원처장은 제적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적처분 통지서에 의하여 제적자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 4) **자퇴** -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처리일자는 자퇴원 제출일자로 한다.

---

---

## 전과

---

---

- 1) **시기 및 허용범위**
- ① 교내 전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 학업성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
  - ② 교내 전과는 제2학년과 3학년, 4학년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교내 전과 희망자로서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는 소정기간 내에 전출 및 전입학과 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원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처리절차 및 지원자격**
- ① 전과 희망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전과원(이전 학년 성적증명서 첨부)을 작성,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 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
- 3) **교과이수 및 재학연한**
- ① 전과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입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전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과 학점인정표를 제출하여 동일한 교과목과 학점만을 인정받고 잔여과목은 전입학과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

## 편입학

---

---

1) 시기 - 일반 편입학은 학기 초에 실시한다.

### 2) 허가 및 선발

- ① 편입학은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편입시험을 거쳐 허가한다.
- ② 대학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2년 이상을 수료,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이어야 한다.
- ③ 본교에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편입학원서(소정양식), 전적학교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학교가 지정한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및 수험료는 과오납 수험료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3) 학점인정 및 이수

- ① 교양과목은 교필, 교선 구분없이 일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양, 전공과목 총 65학점을 일괄 인정한다.
- ②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한 동일 학년과 같은 교과과정을 적용하며,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승인 전공 학점 이외에 본교에서 반드시 전공은 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전공과목이 저학년에 개설된 과목이라도 학부(과)의 전공특성에 따라서는 학과장의 지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④ 편입학 첫 학기는 19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인정학점은 전적대학교 전공인정학점 포함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3,4학년에 개설된 전공필수 과목은 전부 들어야 한다.

4) **학력조회** - 편입생에 대한 학력조회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행한다.

5) **편입학취소** - 학력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편입학을 취소한다.

---

---

## 재입학

---

---

1) **경과기간 산출** - 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입학홍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학점인정** -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3) 선발 및 등록

- ① 본교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입학원서

- 나. 성적증명서
  - 다. 서약서
  - 라. 학적부 사본
  - 마. 기타 학교가 지정하는 서류
- ② 다른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는 재입학 자격이 없다.
  - ③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 ④ 재입학자는 납입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신입생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금은 재입학 허가 학년의 납입액으로 한다.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 1) **자격** -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이수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2) **계획서의 제출** - 졸업논문 심사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 졸업실기(작품)발표 계획서, 졸업연주발표계획서, 졸업종합시험계획서를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을 거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개인연구** -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논제**
  - ① 논제는 반드시 소속 학과의 전공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 ② 논제의 선정은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논문제출 시기** - 논문은 지정된 규격 및 서식에 맞추어 10월말(후기 졸업자는 5월말)까지 소속 학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 및 심사**
  -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명의 전임교원이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 ② 위원은 학과장이 선임하여 교학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③ 논문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합·부 판정은 심사위원이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부로 한다.
- 7) **실기심사**
  - ① 실기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학과인 경우 학과장은 주제, 장소 및 심사위원 등 필요한 사항을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실기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성적 평균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논문심사 결과 보고** - 학과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졸업예정자 졸업심사결과표에 따라 11월말(또는 6

월말)까지 교학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논문심사 결과 조치**

-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만을 수여한다.
- ② 논문심사가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37조에 의한 졸업을 인정하되 그 시기는 논문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10) 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다

**11) 졸업소요 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 논문심사에 합격된 자가 졸업 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격을 1년간 인정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12) 논문대치** - 논문 이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과하는 학과일지라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13) 보관** - 졸업논문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4) 졸업종합고사**

- ① 졸업 종합시험의 실시 시기는 매년 10월중(후기 졸업자는 5월중)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험과목은 각 학부(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5과목 이상을 출제하며 각 과목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졸업종합시험의 채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점 이하를 과목 낙제로 하며, 성적평가는 전 과목 성적의 평균치로 하고, 성적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④ 졸업종합시험과목 중 2과목 이하의 과목이 낙제일 경우 1회에 한하여 낙제과목에 대하여 재 응시할 수 있으며 3과목 이상의 과목이 낙제일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하여 재 응시하여야 한다.
- ⑤ 졸업 종합시험을 실시하는 학부(과)의 학과장은 졸업 종합시험 실시 후 졸업예정자 종합시험성적 집계표를 작성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졸업 종합시험의 부정행위자는 전 과목을 무효로 하며 시험 합격 후 부정 행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

## 졸업

---

---

**1) 졸업 회수** - 8월 졸업자의 졸업 회수는 해당년도 2월 졸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2) 졸업기준** -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등록기간은 8학기이상으로 한다.
- ② 취득학점은 13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졸업대상자는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공부문의 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

## 조기졸업

---

---

1) 정의 - 졸업성적이 우수하여 초과학점을 취득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수업연한을 1~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신청 및 성적기준

- ①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의 조기졸업은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로 한다.
- ③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성학점은 따로 정한다.
- ④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졸업논문(졸업작품·연주 또는 종합시험)이 통과 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

### 3) 자격상실

- ① 조기졸업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가. 학칙 제41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다.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
- ②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은 최종학기 최소 수강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정시기 - 조기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은 매 학기말에 한다.

---

---

## 학생증 · 제증명발급

---

---

### 1) 학생증 발급

- ① 교학지원처장은 신입생(편입생 포함)에 대하여는 입학 허가 후 학생증을 발급한다.
- ②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본교와 협약된 해당 은행에서 재교부 신청(신분증지참)을 하여야 한다.

### 2) 제증명 발급

- ① 교학지원처장은 이 대학교의 재적자, 각 학년 수료자 및 졸업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재학증명서
  - 나. 휴학증명서
  - 다. 수료증명서
  - 라. 졸업(예정)증명서
  - 마. 성적증명서
  - 바. 학적부
  - 사. 재적증명서

- ② 증명서의 발행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되, 제증명 발급대장은 별도 관리한다.
- ③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발행한다. 다만, 최종학기 재학자로서 취업 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이 될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④ 제증명신청접수증 접수 시에 소정의 증명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우편 또는 동사무소 FAX민원에 의한 신청서는 발행 시에 징수할 수 있다.

## 강의평가

### 1) 실시목적

- ①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수업의 질 향상
- ② 재학생의 선호 강의 파악
- ③ 교수 개인의 자기 발전을 위한 자료 제공
- ④ 교수 평가 자료로 활용
- ⑤ 학생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학생 만족도 조사

### 2) 평가 대상 - 본교 전임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수, 시간강사의 담당 전 교과목

### 3) 조사기간 - 해당학기 성적 공개일로부터 3주간 성적 열람 시 평가실시(강의평가 실시 후 성적 열람 가능)

### 4) 평가산출 근거

- ① 재학생 수강과목별 설문조사를 통한 강의평가에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
- ② 항목별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도출

### 5) 평가결과 활용

- ① 평가분석자료는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수 개별 확인하여 추후 강의에 참고 활용
- ② 강의평가 분석을 통해 재학생의 선호 강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③ 교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 및 학생과 교수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6) 강의평가 설문자료

번호	평가영역	내용
1	강의계획성	교과목의 교육 목적 또는 수업의 학습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2	강의계획성	본 수업에서 증진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전공능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3	학습 및 평가	학습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
4	학습 및 평가	학습 내용과 활동이 핵심역량(전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	학습 및 평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6	학습 및 평가	학습활동(과제 수행, 토론 등)은 학습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7	학습 및 평가	학습활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8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 과정에서 교수와 다양한 의사소통(예 : 질의 응답, 피드백 등)이 이루어졌다.
9	학습 및 평가	학습 과정에서 학생 간의 의사소통 기회가 제공되었다.
10	학습 및 평가	평가(시험, 과제물 평가 등)는 나의 학습을 검토하고 설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11	학생자신에 대한 평가	나는 이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였다.
12	학생자신에 대한 평가	나는 이 교과를 열심히 공부였다.

## 자격증취득

### 1)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 ①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법상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③ 2급 문화예술교육사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3과목-○○교육론,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개발)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 ④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분야별 이수교과목

분야	개설학과 및 이수교과목
공통	교양학부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총 2과목)
디자인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공 30학점 이상
만화애니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공 30학점 이상
연극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공 30학점 이상
음악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공 30학점 이상
	공연예술학부 음악전공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공 30학점 이상

---

# 장 학

---

## ■ 교내장학금

1. **예원 장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수업료 전액을 감면하되, 신입생 차석 합격자에게도 수업료 전액을 1년간 지급
2. **특별 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입학자와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입학취업실에서 추천한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3. **신입우수 장학금** : 신입생중 학부(과)별 수석 합격자에게는 입학학기동안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4. **체육특기장학금** : 개인기능이 우수하여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
5. **예능 장학금** : 당해 연도에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예능(음악, 무용, 미술)대회요강을 준하여 동일 계열 입학자에게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
6. **보훈 장학금** :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7. **교직원 직계 장학금** : 본교 및 부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8. **학부 성적우수 장학금** : 재학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중 성적순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
9. **일반 장학금**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중 학부(과)장의 추천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10. **근로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11. **공로 장학금** :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바탕하여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교학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12. **형제 재학 장학금** : 당해 학기에 형제가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
13. **후생복지 장학금** : 교내 각종 후생시설에서 얻은 순 이익금 중 일부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14.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15. **동창회 장학금** : 본교 동창회 운영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총동창회에서 선발하여 지급
16. **산학장학금** : 가계가 곤란한자를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
17. **해외유학 장학금** : 대학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외에 유학을 희망하는 자가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 국외의 자매대학 또는 희망대학에 교비 장학생으로 해외유학의 특전을 부여하며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장학금을 지급
18. **서영춘 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생활이 곤란한 자를 각 학부(과)장 추천을 받아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지급
19. **특성화 장학금** : 학부(과) 특성화에 부합되는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는 학부(과)장 추천과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
20. **총장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승인 한자에 대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으로 우수한자,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한 자, 학업태도가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자, 그 밖에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높여 특별장학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21. **희망 장학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중 매학 기 초 해당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22. **교육기부 장학금**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사업(교과목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특기적성 교육 및 멘토링활동 등)을 참여하는 학생(학기당 최소 10시간)에게 장학금을 지급
23. **컬처라이센싱 장학금** : 학기 중 공인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전공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24. **장애우가정 장학금** : 학생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장애를 가져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 ■ 교외장학금

1. **국가 장학금** : 국가장학생 신청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및 백분율 80점이상인 자에게 장학금 지급
2. **국가 근로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교내외 근로기관에서 근로를 통해 장학금 지급
3. **외부 장학금** : 외부 기관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 취업지원

- 1) **자기 탐색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 저학년을 위한 진로설정, 고학년을 위한 취업 및 자가 창업을 위한 인성·직무·직업 적성검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정밀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취업·창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2)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 심리검사 : 개인의 흥미를 정확하게 측정·평가하여 진로선택과 진로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고 진로 계획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리검사 진행  
(진로 관련 심리검사 : Holland 적성탐색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 개인상담 : 졸업 후 진로, 가치관,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
  - 집단상담 : 비슷한 도움을 원하는 학생 10명 내외와 1인의 집단리더와의 만남으로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 소통능력 향상, 진로탐색 및 설계, 학습방법 등과 같은 개인의 관심 주제별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
- 3) **채용설명회 및 채용상담** :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 인사담당자가 대학을 방문, 또는 채용박람회 참가 설명회 및 개별 상담을 통하여 기업채용정보 제공
- 4) **취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 : 입사지원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면접유형별 대응전략, 기업별 맞춤형 모의면접 등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취업경쟁력강화  
(취업캠프, 이력서 콘테스트, 모의면접경진대회, 취업특강 등)
- 5) **진로지도 및 취업전담교수제도** : 졸업 전 지도교수를 통해 진로, 취업역량, 취업목표등을 점검하고 개발하며, 졸업 후 취업전담교수를 통해 최종 진로결정에 따른 진학, 취업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함
- 6) **창업경진대회 프로그램**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학생이 창업계획서를 발표,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함으로써 창업마인드 고취

# 병 무

##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된다. 징병검사는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다.

### <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로 내가 검사받고 싶은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종료 35일 전까지)
-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 거주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 대전·충남 ↔ 충북, **광주전남 ↔ 전북**, 부산·울산 ↔ 경남, 경기북부 ↔ 강원도
-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민원-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한다.

☞ 전자민원서류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인인증서 필요

### ●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학력	신체등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 면제	재검사 대상
고 졸							
고퇴 · 중졸	보충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 면제	재검사 대상
중학중퇴이하							

## 2) 재학생 입영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있다.
- 본인이 직접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원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가 될수 있다.

### ●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사법 연수 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2 년제	3 년제	4 년제	6 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 년제	법학전 문대학 원등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3) 현역병 입영

#### ● 육군 일반병 입영

##### 1. 재학생입영원

- 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이 신청하며, **입영 희망월을 선택**하는 제도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원하는 달 선택 가능

##### 2. 입영일자 본인선택

- 재학생입영연기자 등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에서 신청

#### ● 육·해·공군 모집병 입영

1. 육·해·공군 병 모집은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경력자로서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 중 선발하는 제도로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2.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지원한 달로부터 2개월차에 입영한다. (예. 3월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5월에 입영)

##### 3. 모집병 종류

###### 가. 육군

- 기술행정병 : K-1전차승무병 등 260여개 군사특기
- 전문특기병 : S/W관리병, 사이버수사병, 군종병, 군악병, 카투사 등 40 여개 군사특기
-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와 함께 지원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1,3군 예하 35개 부대) 지원
- 유급지원병 : K-9자주포조종수 등 74개 군사특기

나. 해군 : 일반, 기관, 특전 등 17개 계열, 유급지원병

다. 해병대 : 일반, 수색, 화학 등 9개 계열, 유급지원병

라. 공군 : 일반, 기계, 차량운전 등 18개 직종, 유급지원병

※ 지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군지원서비스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신청

※ 육·해·공군 병 지원은 병무청에서,

※ 장교, 부사관, 의무경찰 등은 각 군 본부, 경찰청 등에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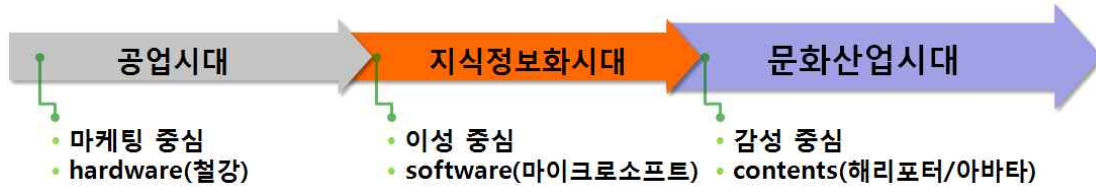
## 전공소개 및 교육과정

- 교양교육과정
  
- 전공소개 및 전공교육과정
  - ▷ 융합조형디자인전공
  - ▷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 ▷ 만화게임영상전공
  - ▷ 애니메이션&웹툰전공
  - ▷ 연극영화전공
  - ▷ 실용음악전공
  - ▷ 공연예술전공
  - ▷ 음악전공
  - ▷ 뷰티디자인전공
  - ▷ 스포츠과학학과



# 교양학부 소개 및 교육과정

## - 교양학부 소개



###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

참다운 인격형성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문적 기초를 다짐으로써 학생들을 주체성을 가진 세계인, 폭 넓은 교양을 지닌 전문인, 문화의 시대에 부흥하는 문화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협동인, 도전적 창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부흥하기 위해서 교양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과목을 제공하여 전인적인 인성함양, 풍부한 정서 함양에 힘쓰고 있다.

## - 교육목표



## - 교육체계도

창조적 예술인		실용적 전문인		봉사적 교육인	
1영역 문화예술역량	2영역 창의융합역량	3영역 지식과 기술탐구 및 활용 역량	4영역 디지털 활용역량	5영역 글로벌 역량	6영역 공존공감 역량
디지털표현기법1	다큐로 보는 20세기의 역사와 문화	직업진로와 미래설계	4차 산업혁명과 창의적 사고	언어와 사회	사회봉사론
자유연상과 표현기법1	동양미술사의 이해와 감상	직업과 자기관리	디지털 예술정보 활용방안	비즈니스영어1	사회봉사
무도실기1	전통문화의 이해	취업을 위한 패션과 이미지전략	빅데이터와 디지털예술	토익	생활 속의 요가
운동역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 감상	예술분야 취업세미나	컴퓨터 활용 능력	글로벌 시사영어1	호신술
콘텐츠 기획1	외국인을 위한 문학 읽기와 창작	성공적 인간관계론	문화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스크린영어1	풋살
발성법1	역사속의 예술가	서비스의 이해	행복한 경영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엑티브에이징 신체활동론
음악교수학습방법	한국현대소설속의 언어표현과 감상	성공적 외모 경영과 퍼스널 브랜드	미디어속 패션 읽기	한국어 교육1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신체리듬
시창청음3		실버실기지도론	예술치료	한국어 교육3	전문적신체밸런스
문화예술교육개론		실버건강관리와 운동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미래사회와 리더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와인의 역사, 문화를 만나다	조선 국왕의 리더십
영화로 보는 현대사회와 문화		한국의 국보와 콘텐츠		세계문화와 복식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이해		문화 융복합과 콘텐츠 산업론		커피문화기행	
서양 근현대미술사		문화콘텐츠의 기획			
한국미술사의 이해와 감상					
한국무형문화유산					
예술작품 이해와 감상1					
움직임을 통한 신체리듬					
한국무용 역사와 지도론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 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고
					이론	실습		
2	1,2	교양	문화예술교육개론	2	2	0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정책적, 사회적, 교육적 배경을 통하여 교육에서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예술전문성을 확장하여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정체성과 책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형성하고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전문성과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직무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1,2	교양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2	1	1	본 과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정기관에서 습득한 교육이론과 원리를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보고 그 타당성을 검증, 개선, 내면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대상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험 및 실습 과정이다. 실습에 앞서 교육현장에 대한 조사, 분석의 과정을 통해 교육 대상의 요구를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러한 실습 계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현장실습 이수 보고서>로 종합하고, 이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지속적해서 자신의 교육 실천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태도를 형성한다.	
1	1	교양	영화로보는 현대사회와 문화	3	3	0	영화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본다. 예를들어 전쟁, 인간소외, 불안, 트라우마, 환경, 그리고 페미니즘과 동성애와 같은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인의 고뇌를 인식하는 것이다.	
2	1	교양	서비스의 이해	3	3	0	경제의 어려움속에 서비스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기업과 자신의 생존전략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한다.	
1	1	교양	서양 근현대미술사	3	3	0	서양 근현대미술사는 서양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상주의 미술부터 도다, 입체주의를 거쳐 판타지에 이르는 현대미술의 역사적 전개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1	1	교양	한국미술사의 이해와 감상	3	3	0	한국미술사의 큰 맥락과 각 시대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쟁점이 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토론을 통하여 지금까지 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미술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1	1	교양	한국무형문화유산	3	3	0	무형문화재의 가치재으로써의 인식, 포괄적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활용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주체에 따라 접근과 활용 등 시각차가 크다. 본 강의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원형(archetype), 전형(typifier) 등 필수용어의 개념 정리와 한국의 무형유산에 대한 고찰과 시대적 재해석을 통해 현대 당면 문제인 문화재보호법, 지원제도, 보호주체, 활용사례들을 고찰하고 세방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적 전승과 문화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1	1	전선	예술작품 이해와감상1	3	3	0	작품 감상에서는 형식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세분화된 예술작품의 형식과 이론 그리고 역사를 습득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나아가 예술작품 통해 인간과 문화에 대한 성찰의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	
2	1	교양	움직임을 통한 신체리듬	2	0	2	본 강좌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밸런스외 신체리듬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으로 간주하며, 창조성은 문제 찾기외도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욕구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동작이라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내면세계의 갈등이 표현되고 승화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므로서 예술 수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1	1	교양	한국무용역사와 지도론	3	3	0	한국무용의 역사를 바로알고 춤을 즐길수있는내용을 습득한다.	

학 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고
					이론	실습		
1	1	교양	다큐로 보는 20세기의 역사와 문화	3	3	0	본 강좌는 지난 20세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를 살펴봄으로써 20세기 서양역사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20세기를 인식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수 없다. 20세기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을 약 12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강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 BBC에서 제작한 다큐필름을 주요재로 선택하였다. 이 다큐는 20세기의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1	교양	동양미술사의 이해와 감상	3	3	0	동양미술사의 큰 맥락과 각 시대별, 나라별 특성과 화법 그리고 회화미학의 변천과 특성을 이해하고,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연구한다.	
2	1	교양	전통문화의 이해	3	3	0	풍수와 음양오행, 민속문화, 한지, 왕의 초상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그 특질을 살펴서 우리의 전통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2	1	교양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 감상	3	3	0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여 원활한 한국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1	교양	외국인을 위한 문학읽기와 창작	3	3	0	문학 읽기를 통해 기본적인 문학 이론과 개념을 습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이해력과 창의력을 향상하여 원활한 한국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1	교양	역사속의 예술가	3	3	0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예술은 혹은 예술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한다.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이 역사의 큰 흐름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거꾸로 각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강좌의 대주제는 역사 속의 예술가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남성중심의 권위적인 서양역사 속에서 특히 여성예술가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둘째는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미술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제까지 예술에 관한 내용이 주로 회화만을 다루었다면 이 강좌에서는 장르를 뛰어넘어 인간이 만들어 낸 다양한 예술, 즉 회화, 음악, 무용 등을 함께 다룬다.	
1	1	교양	한국현대소설속의 언어표현과 감상	3	3	0	한국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소설의 본질과 특성을 학습하고, 질곡된 현대사의 흐름과 시대상황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현대소설 속에 담긴 시대담론과,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그리고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비전을 토론하면서 풍부한 예술적 감상력과 자아 정체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1	1	교양	직업진로와 미래설계	3	3	0	자신의 분석과 이해에 의한 탐색, 목표설정 및 계획	
1	1	교양	직업과 자기관리	3	3	0	인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직업선택과 자기관리 계획 및 실천방안을 모색	
1	1	교양	취업을 위한 패션과 이미지전략	3	3	0	현대인에게 필요로 하는 퍼스널이미지 경영의 특성을 이해하고 퍼스널이미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및 관리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복장, 자세, 대화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의 기술을 익혀 효과적인 자기경영을 할 수 있다.	
1	1	교양	예술분야 취업세미나	3	3	0	본 강좌는 예술분야 취업에 대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목표를 관리해 가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보다 알찬 대학생활과 더불어 준비된 인재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배양함에 목적이 있다. 즉 취업준비를 위한 경력관리 방안 자기소개서의 작성시 자기만의 차별화 전략, 입사지원서 작성법,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소개 및 취득방안등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사회진출을 위한 기본 소양을 터득하게 한다.	
2	1	교양	성공적 인간관계론	3	3	0	급변하는 현대사회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과 성공적 인간관계를 이끌어 내 위기 상황에도 잘 대처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1	교양	서비스의 이해	3	3	0	경제의 어려움속에 서비스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기업과 자신의 생존전략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고
					이론	실습		
1	1	교양	성공적 외모 경영과퍼스 널 브랜드	3	3	0	긍정적 이미지 연출과 패션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1	교양	실버실기지도론	3	1	2	실버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버의 체력과 운동능력의 유지향상을 시킬수 있는 지도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자격증 실버체육지도자 취득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1	1	교양	실버건강관리와 운동	3	2	1	신체의 올바른 움직임의 이론 및 건강증진향상에 목적을 둔다. 실버스포츠 지도사 관련과목	
2	1	교양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3	2	1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을 할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2	1	교양	한국의 국보와 콘텐츠	3	3	0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인 국보의 가치와 내용 그리고 의미와 다양성을 살펴보는 콘텐츠를 통해 선현의 예술혼을 느껴보고 우리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더 나아가 실제 작품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보는역사적·예술적·학술적·기술적인가치가큰문화재로써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한우리나라 최고의문화유산이다.콘텐츠(content)란,원래서적이냐는문등의원형이나내용,목차를일컫는말이다.이러한 콘텐츠들이모여복수형콘텐츠(contents)를이루면디지털화를통한가공이나새로운아이디어의결합을통한 재창조의과정을거쳐새로운가치를부여하거나드높이게된다. 이처럼선현의예술혼이담긴국보의탁월하고독창적인 콘텐츠를면밀하게분석·조명하여아카이브를저장하는 일련의학습과정은송고한우리민족문화예술에대한당연한도리이자,실용적예술인을지향하는대밀거름이될 것이며장차창작의모티브를끊임없이제공할것이다.	
2	1	교양	문화 융복합과 콘텐츠 산업론	3	3	0	문화콘텐츠산업은융복합적산업으로성장하고있다. 자신의전공과유관한산업외에도다른산업에대한지식을습득하는것은융복합적이고창의적인사고의선행요건이라할수있다. 본 과목을통해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 돕고융복합적인문화예술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한다	
1	1	교양	문화콘텐츠의 기획	3	3	0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획 방법을 습득하여, 창의적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기초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은 One Source Multi Uses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기획 접근하여 새로운 콘텐츠 기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1	교양	4차산업혁명과 창의적사고	3	3	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훈련방법을 통해 창의력 향상을 도모한다.	
2	1	교양	디지털 예술정보 활용방안	3	2	1	본 강좌는 스마트시대에 발생하여 축적된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예술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각자가 필요로 하는 예술정보를 가공하는 방법과 활용방안을 강의 및 실습한다. 그리고 현대의 예술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컴퓨터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이론 강의와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다. 습득된 컴퓨터 관련 기술을 예술정보 활용에 접목하여 예술분야의 디지털 에이더정보 도출의 기술적 수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1	교양	빅데이터와 디지털예술	3	3	0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디지털예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예술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를 알아보고 특히 디지털예술의 발전에 빅데이터 방법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도의한다. 디지털기술의발달로수많은데이터를축적할수있는빅데이터 시대에살고있다.예술역시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라 많은영향을받았고컴퓨터코드를예술창조의도구로사용하는예술가도있다.또한현실에서뿔아낸데이터가 다시현실속의예술작품으로만들어지는데이터의재구성이라는과정을거쳐예술작품이탄생하기도한다. 따라서빅데이터와디지털예술에대한학습은학생들이 향후확대될수있는예술사조에선제적으로대처하고졸업후취업에도도움이될것이라판단된다.	
2	1	교양	컴퓨터활용 능력	3	1	2	엑셀의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엑셀의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사무자동화 능력을 배양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고
					이론	실습		
2	1	교양	문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3	3	0	문화콘텐츠산업과 해당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직업이나 해당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학생들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가며 문화콘텐츠분야의 전략적 사고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1	1	교양	행복한 경영학	3	3	0	비즈니스의 성공적 방정식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며 더 나가 기업의 숨겨진 성장 전략을 찾아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 나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1	교양	미디어속 패션 읽기	2	2	0	영화속에 나타난 사회배경과 의복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패션의 형태를 이해한다.	
2	1	교양	예술치료	3	1	2	본 강의는 미술이라는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통해서 피검자의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자신도 모르게 억압되어있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 창의적인 학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돕고자 한다. 과목 이수 후 민간자격증(미술치료상담사 2급) 취득과 연계하여 학습한다.	
1	1	교양	언어와 사회	3	3	0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하나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 언어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제보적인 기능, 의례적인 기능, 정서적 기능, 제시적 기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언어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 주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며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해준다	
1	1,2	교양	비즈니스영 어1	3	3	0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한 나라와 접촉, 특히 경제적인 측면의 무역거래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권유, 조회, 오퍼, 주문, 보형, 선적, 결제, 크레임, 대립점 등 각종 무역 실무에 관한 영문의 학습이 필요함에 따라 무역실무에 대한 다양한 영문의 학습을 통해 이해 및 응용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1	1	교양	토익	3	3	0	현 시대에서는 토익이라는 영어시험이 영어 실력을 재는 잣대로서 대부분 취업시장의 선발 기준이 되고 있다. 본 과목은 토익 자료를 여러 가지 각도와 기준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토익에 관한 명확한 틀과 접근법을 제시하고 토익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내용을 실어놓았다. 따라서 교과목의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면 토익시험의 성공적 준비는 물론, 기업영어 혹은 입사 후 필요한 비즈니스 대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1	1,2	교양	글로벌 시사영어1	3	3	0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어회화와 단어들을 배운다. 미국신문, 잡지로 배우는 글로벌 세상 읽기! 미국주간지 Time지에서 기사를 발췌하여 독해 능력과 글로벌 시사영어, 해외이슈등을 접하면서 미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한다.	
1	1	교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글쓰 기	3	3	0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1	1	교양	한국어교육 1	3	3	0	외국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반적인 언어 영역에 대한 한국어 수업	
2	1	교양	한국어교육 3	3	3	0	외국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반적인 언어 영역에 대한 한국어 수업	
1	1	교양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2	2	0	국내외의 경험이 부족한 강사를 초빙하여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해하고, 국경을 넘어 인간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마음가짐 교양을 기르는 목표임. 본 강좌는 한 학기동안 14회 이상 강의를 아시아에 대한 전문 강사가 다른 테마를 다뤄 진행함.	
1	1	교양	와인의 역사, 문화를 만나다	3	2	1	1. 와인의 역사와 문화알기 2. 각각의 전공과 와인문화의 융합 3. 와인 서비스에 대한 이해 4. 인류의 출현과 함께해 온 와인의 세계를 통해 인간과 문화 그리고 예술을 이해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고
					이론	실습		
2	1	교양	세계문화 와 복식	3	3	0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패션을 학습하고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패션경향에 미칠 영향과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2	1	교양	커피문화 기행	3	2	1	1. 커피, 제대로 알고 행복하게 즐긴다. 2. 커피, 아는 만큼 독립적으로 커피를 3. 마실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는다 4. 커피를 통한 여유, 행복, 소통, 이해, 5. 교감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안다. 커피문화, 역사를 통해 인문학의 정서를 함양한다.	
1	1,2	교양	사회봉사 론	1	1	0	대학생의 사회봉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가치와 이론은 어떠한가, 사회봉사의 수행은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1,2	교양	사회봉사	2	0	P	대학생의 사회봉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가치와 이론은 어떠한가, 사회봉사의 수행은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1	교양	생활 속의 요가	2	1	1	요가(YOGA)란 바쁘고 피로한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안정을 주는 효과적인 심신정화의 도구이다. 이 교과목의 강의를 통해 육체적 단련과 심리적, 정서적 조절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1	1	교양	호신술	2	0	2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 합기도, 태권도, 유도 따위가 있다. -핵심기술- 1.발기술쓰기2.손기술쓰기3.낙법4.손목수술기 5.의복수술기6.방권술술기7.방축술술기 8.좌기,와기,각종무기방어술기	
1	1	교양	풋살	2	0	2	본 강좌는 실내외에서 행해지는 5인제 미니축구 경기를 말한다. 1930년 우루과이 YMCA의 청소년 대회 시 5인제 축구의 형태로 처음 실시되었다. 경기를 통해 4가지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를 통해 기술적 수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1	전선	액티브에 이징 신체활동 론	3	3	0	현대인에게 필요한 정신 및 신체건강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및 건강관리 방법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1	1	전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신체리듬	3	1	2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통찰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긴장감을 해소 할 수 있으며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한 움직임의 방법을 습득한다	
2	1	전선	전문적 신체발란 스	3	1	2	스트레칭지도를 통하여 평소 쓰지 않은 근육을 움직여 몸을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혈액 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정신 및 신체건강 관리를 위한 밸런스코어 방법을 습득한다	
2	1	교양	미래사회 와 리더쉽	3	3	0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1	1	교양	조선 국왕의 리더쉽	3	3	0	태종과 세종, 연산군과 광해군 등 역대 조선 왕들의 뛰어난 지도력과 부적절한 처신을 살펴서 리더로서 역량을 배양하고 반연교사를 삼는다.	
2	1	교양	프리젠테 이션을 활용한 커뮤니케 이션	3	2	1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 혹은 이해관계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과정이라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수업인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우선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및 본질에 대한 다각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토대로 프리젠테이션의 발표 의도와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단순한 텍스트를 활용한 보여주기 형식이나 정형화되고 지루한 프리젠테이션은 청중의 기억에 오래남지 못하게 되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	

\* 필수영역은 졸업 전까지 1과목 이상씩 꼭 이수해야함.

## 전공소개 및 전공교육과정

### 1. 융합조형디자인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예술가 양성

순수예술부터 디자인적 시각으로 현시대에 적합한 조형예술을 다양한 공간과 도시 속에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미래주도 가치형 학과입니다.

한국적이며 동시에 세계화를 지향하며, 공공미술프로젝트, 현대미술, 영상, 입체, 설치 등 3차원 세계를 디자인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되는 커리큘럼으로 다른 학교·학과와 차별화된 예술 전문 학과로 경쟁력있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핵심역량 혹은 주요진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대학원 진학	아트퍼니처	예술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	--------------	-----------	-------	-----	--------------

4학년	현대 미술과 오브제 졸업 작품연구 1,2 융합조형 워크샵1,2 창업 교육 솔루션1,2	포트폴리오와 프리젠테이션 전시 기획과 설치
3학년	공간과 구조 디자인 교수 학습방법(문) 공공미술 프로젝트 1,2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1,2 신소재 조형 연구 1,2	디지털 표현과 미디어 연구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
2학년	미술사 입문과 현대미술 소프트메테리얼 연구 디자인과 생활 디지털 표현 기법 1,2 자유연상과 표현 기법 1,2	디자인 교육론(문) 하드 메테리얼 연구 디자인 사례연구 특수 소재 워크샵
1학년	기초 컴퓨터1,2 기초 드로잉 기초 조형 1,2 색채학1,2 기초 디자인 1,2 퍼스펙티브 드로잉	

- 교육체계도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 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계선	기초드로잉	3	1	2	스케치 역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 드로잉 실습을 통해 선과 면을 이해하고, 크로키, 정밀묘사 등의 기본적인 드로잉 능력 배양.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넓히며 다양한 경험 축적한다.	
1	1	계선	기초조형1	3	1	2	조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평면조형과 입체조형 표현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습득하여 기초적인 재료, 구조, 표현기법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적 조형감각 축적한다.	
1	1	계선	기초디자인1	3	1	2	본 교과목은 디자인에 대한 기초과목으로 선행사례를 연구하고 기초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요소(선재, 면재, 입체물)를 사용한 실습 과일을 통한 실습 결과물에 대한 토론으로 학생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계획, 진행, 정리의 과정을 습득하게 하여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 강의의 목표를 둔다. 본 강의는 디자인 기술의 습득보다 디자인에 대한 창의적 사고에 중점을 두는바, 강의생의 규모에 따라 토론 및 평가를 진행한다.	
1	1	계선	색채학1	2	1	1	본 교과목은 빛과 색을 이해하며 색 지각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색채배색과 조화를 이해한다. 또한, 색채의 체계와 분류를 이해하고 색채이론에 대해 학습하여 색채를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배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로인한 색의 다양성과 인간의 감정 효과에 따른 색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1	전기	기초컴퓨터1	3	1	2	컴퓨터를 다루는 기본적 기술 습득과 본인의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한다.	
1	2	계선	퍼스펙티브 드로잉	3	1	2	원근감, 균형, 시각, 시계 등, 견해, 관점, 시점 등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투시하여 파악하며, 이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니컬 드로잉(Technical Drawing) 능력을 함양한다.	
1	2	계선	기초조형2	3	1	2	조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평면조형과 입체조형 표현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습득하여 기초적인 재료, 구조, 표현기법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적 조형감각 축적한다.	
1	2	계선	기초디자인2	3	1	2	디자인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 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수업으로, 아이디어 도출 > 조형에 대한 탐구 > 시각화 과정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평면적으로 시각화/구체화 하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Styling(조형)과 Concept(개념) 중 조형에 초점을 맞춘 수업으로 Hand Drawing(펜, 마커)/Fineart Tool(회화 도구) 등을 통하여 Visualization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기를 확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1	2	계선	색채학2	2	1	1	색채를 이용한 본 교과목은 다양한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색의 대한 중요성과 다양한 공간 연출, 입체연출과 색채감각을 키우고자 한다. 그로인한 색의 심리적, 문화적 기능을 활용한 색채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고, 색채 디자인을 통해 계획 및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또한 색채배색과 사람의 감성을 나타내는 이미지 언어를 학습하고 배색의 의미, 테크닉,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1	2	전기	기초컴퓨터2	3	1	2	컴퓨터를 다루는 기본적 기술 습득과 본인의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한다.	
2	1	전필	미술사 입문과 현대미술	3	1	2	서양미술의 역사를 조망하고 미술이 당대의 사회적 현실 즉 현대 작품과 어떻게 맞물려 왔는가를 해명한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여 현대 미술로 이르기까지 설명하며 각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실험적 비교 혹은 고찰을 통해 미술가와 그의 작품, 미술사조를 조망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 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1	계선	디자인과생활	3	1	2	생활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알아가는 수업으로 디자인 원리를 비롯하여 한국과 서양의 디자인사 그리고 순수미술과의 관계와 생활 속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미술 전반을 핵심적인 요소들을 습득 한다.	
2	1	계선	디지털표현기법1	3	1	2	기본적으로 디지털 작품제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습득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디지털 작품을 구현한다. 디지털 그래픽 아트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크닉이 가미된 영상예술을 지향하고 차별화된 작품을 연구한다.	
2	1	계선	자유연상과 표현기법1	2	1	1	본 과목에서는 무의식의 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 상상과 은유의 즐거움을 통해 다양한 연상, 배치, 조형의 요소 및 원리, 아이디어의 발상을 통한 자유연상 학습과 재료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의 기본형태 분석 및 시각 표현 프로세스, 다양한 재료를 통한 표현기법에 대해 학습하여 창의적 능력을 함양한다.	
2	2	계선	하드메테리얼 연구	3	1	2	전통과 현대적 조형미를 융복합한 조형수업으로 조화로운 예술방향 제시 및 체형한다.	
2	2	전선	디자인교육론(문)	2	2	1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교과목이며, 디자인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교육전문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목. 디자인분야의 예술전문인인 동시에 예술교육전문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경험하여 자신의 교육철학을 형성하고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2	2	계선	디자인사례연구	2	1	1	디자인의 특징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은 상황적이며 변화적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연구하는 수업이다	
2	2	계선	디지털표현기법2	3	1	2	현대미술이 요구하는 창조적 사고와 다양한 시각을 미디어아트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오픈소스, 오디오, 매체를 적극 이용하여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시각예술교육을 진행한다.	
2	2	계선	자유연상과 표현기법2	2	1	1	본 과목에서는 자유연상을 통해 얻어지는 시각적 반응, 개인의 예술적 감성과 독자적인 예술 언어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의 전개, 자신으로부터의 표현에 관한 창작 논리와 분석능력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시각 이미지로 기록하여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2	2	계선	특수소재 워크샵	2	1	1	새롭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자료 수집, 관찰, 분석, 비교, 실험과정을 통하여 재료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다양한 표현기법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조형감각을 기른다.	
3	1	계선	공공미술 프로젝트1	3	1	2	공공예술의 개념과 사례를 배우고, 전 과정을 기획하며 실제 프로젝트 진행 경험 축적한다. 자신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사회와 산업, 환경에 적용하여 보는 연구과정이다..	
3	1	계선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1	3	1	2	학생 2명 이상이 함께 작품 기획단계에서 완성까지 팀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디자인. 상호소통과 통합까지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작업 프로세스 습득한다.	
3	1	계선	신소재조형연구1	3	1	2	금속 목재, 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정제되어 있거나 개발지향적 작업에서 탈피, 지속가능한 작업의 경험으로, 예술적, 과학적, 문학적 감성을 융합하는 감각 양성한다.	
3	1	전선	디자인교육프로그램개발(문)	2	1	1	디자인교육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교육프로그램개발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고, 디자인지도 영역별 특징, 교육대상별 차이에 대한 이해수업, 창의적 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역량 강화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2	계선	공공미술 프로젝트 2	3	1	2	공공예술의 개념과 사례를 배우고, 전 과정을 기획하며 실제 프로젝트 진행 경험 축적한다. 자신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사회와 산업, 환경에 적용하여 보는 연구과정이다..	
3	2	계선	콜라베이션 프로젝트 2	3	1	2	학생 2명 이상이 함께 작품 기획단계에서 완성까지 팀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디자인. 상호소통과 통합까지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작업 프로세스 습득한다.	
3	2	계선	신소재조형연구2	3	1	2	금속 목재, 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정제되어 있거나 개발지향적 작업에서 탈피, 지속가능한 작업의 경험으로, 예술적, 과학적, 문학적 감성을 융합하는 감각 양성한다.	
3	2	전필	디지털 표현과 미디어연구	3	1	2	디지털 뉴미디어 아트와 현대 미술 디자인의 선구로 알려지는 미디어의 예술적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디자인, 아트의 예술적·사회적 기능성에 주목하며, 미래 예술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3	2	전선	디자인 교수학습 방법(문)	2	1	1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목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전략들을 이해한다. 창의적 교수학습과정을 작성,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보다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교수역량을 함양한다.	
4	1	계선	졸업작품 연구1	3	1	2	졸업작품 전시 계획 및 제작 연구 발표한다. 개별적으로 연구 테마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작품 연구과제에 따라 진행, 제작한다.	
4	1	계선	융합조형 워크샵1	3	1	2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 사고의 전환과 응용력을 숙지, 자신의 작품세계 분석과 새로운 개념 설정한다. 한차원폭을 넓힌 창작세계 확보, 전통과 현대, 회화와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 작업 경험 축적한다.	
4	1	계선	창업교육 솔루션1	3	1	2	국내외 현대 미술의 동향과 생태계를 연구하고 미래의 예술경영 분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에 매칭하여 인큐베이터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트 스튜디오, 갤러리스트, 독립기획자, 작가 등 예술 경영관련 제반 분야의 학문을 탐구한다.	
4	1	전심	현대미술과 오브제	3	1	2	전통과 현대적 조형미를 융복합하여 현대적으로 풀어어나가는 조형수업으로 조화로운 예술방향 제시 및 체험한다.	
4	1	계선	포트폴리오와 프리젠테이션	2	1	1	본인의 의도, 컨셉, 계획안으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제안을 위하여,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본인을 표현하는 이론 및 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디지털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의 효과적 활용법을 함께 습득,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향후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높여도 록 한다.	
4	2	계선	졸업작품 연구2	3	1	2	졸업작품 전시 계획 및 제작 연구 발표한다. 개별적으로 연구 테마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작품 연구과제에 따라 진행, 제작한다.	
4	2	계선	융합조형 워크샵2	3	1	2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 사고의 전환과 응용력을 숙지, 자신의 작품세계 분석과 새로운 개념 설정한다. 한차원폭을 넓힌 창작세계 확보, 전통과 현대, 회화와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 작업 경험 축적한다.	
4	2	계선	창업교육 솔루션2	3	1	2	지역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토대를 마련하여 추가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청년의 경제참여 확대를 위해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 및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도 록 한다.	
4	2	전심	전시기획과 설치	3	1	2	공간, 장소에 대한 이해와 기획까지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며, 공간에서의 조형적 표현 능력과 작품을 관조하는 통찰력과 감각을 기르며, 대중과의 교감을 통해 조형언어의 깊이와 폭을 넓혀 종합적 예술능력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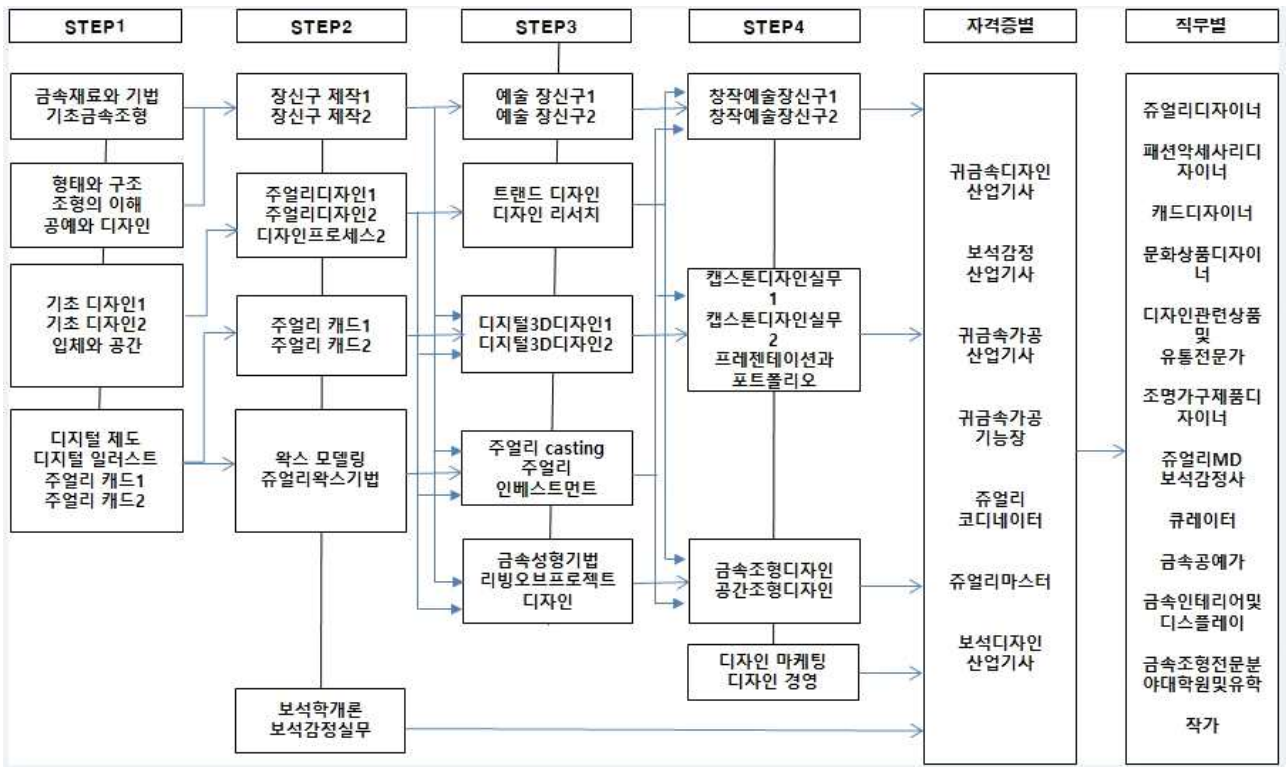
## 2.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 21세기 금속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세계적인 금속디자이너 육성!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은 금속의 다양한 기법과 전문적인 이론 및 산업체 연계 교육을 통한 21세기 세계적인 금속디자이너를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다양한 첨단 기자재를 구비하고 학생들의 창작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금속공예 전반적인 산업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전교수진들 및 강사진들은 최선의 교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교육체계도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전기	금속재료와 기법	3	1	2	귀속공예의 기초를 이루는 기법들을 이론적 바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기, 실습을 하며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	
1	1	계선	기초디자인 1	3	1	2	디자인의 기본요소와 조형 요소의 개념을 이해하여, 창의적인 사고,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 방법들을 습득하여, 창의성과 조형감각, 디자인 감각을 함양한다.	
1	1	계선	조형의 이해	2	1	1	조형의 이해는 조형 원리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형태를 표현하는 언어와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인지능력을 개발시키고 조형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1	계선	디지털제도	3	1	2	주얼리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표현 방법과, 제도, 투시도, 랜더링 기법을 통해 사물에 대한 관찰훈련과 표현능력을 기르고, 기초그래픽을 이해하고 사용툴을 숙련, 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1	1	계선	형태와 구조	3	1	2	형태와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여 창의력, 구성력 및 표현 감각을 기른다. 조형의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창작 기초능력을 습득한다.	
1	2	전기	기초금속조형	3	1	2	금속재료와 기법을 이수 후보다 복합적인 기법과 창조력을 향상하여 창의적인 금속공예 작업능력을 배양한다.	
1	2	계선	기초디자인 2	3	1	2	다양한 사물들을 관찰하여 사실적인 표현능력을 기르고 창의적이고 조형 감각을 개발, 디자인 표현능력을 배양한다.	
1	2	계선	공예와 디자인	2	2	0	공예와 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역사, 철학 및 산업적 측면을 학습하고, 공예와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며 올바르게 생각하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른다.	
1	2	계선	디지털일러스트	3	1	2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하여 그래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고 활용 방법을 배양한다.	
1	2	계선	입체와 공간	3	1	2	입체와 공간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조형적 표현과 실제 제작을 통해 조형 감각을 익혀 디자인에 필요한 조형 감각 능력을배양한다.	
2	1	전필	주얼리캐드 1	3	1	2	라이노 3D캐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조형 표현 능력을 습득하고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주얼리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조형 표현 능력을 함양한다.	
2	1	계선	주얼리디자인 1	3	1	2	주얼리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과정 이해, 디자인 개발능력 배양과 실무능력 극대화. 완성도 높은 주얼리 디자인 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2	1	계선	왁스모델링	3	1	2	왁스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료와 도구, 제작 기법과 정밀주조공정, 양산방법 등을 교육한다.	
2	1	계선	장신구제작 1	3	1	2	장신구 상품이 더욱 아름답고 돋보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 세공 기술을 지도하여 실무중심의 능력을 배양하여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2	1	계선	보석학개론	2	1	1	다이아몬드와 유색보석의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보석의 이론 지식을 습득하여 보석의 감정, 가공 및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2	2	전필	주얼리캐드 2	3	1	2	컴퓨터를 활용한 3D캐드 프로그램을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3D모델링, 실사 랜더링의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주얼리 프로젝트 제품 개발 방식으로 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2	계선	주얼리왁스 기법	3	1	2	왁스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료와 도구, 제작 기법과 정밀주조공정, 양산방법 등을 교육한다.	
2	2	계선	장신구제작 2	3	1	2	생활환경에 필요한 실용적, 창의적인 장신구 디자인을 전개하여 사용재료와 제작기법을 다양화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별 디자인컨셉 설정 및 아이디어 스케치, 제작 가능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장신구 제작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	
2	2	계선	보석감정실 무	2	1	1	다이아몬드와 관계되는 특성 및 재료의 종류생성, 역사와 물리적, 화학적 재질과 특징을 미적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고, 유색보석의 특성과 분류 및 천연, 합성 또는 모조의 진위를 감별 교육한다.	
3	1	전필	예술장신구 1	3	1	2	예술 장신구의 디자인 및 제작을 통하여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 제작함으로써 장신구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조형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다양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장신구를 제작한다.	
3	1	전선	주얼리Cast ing1	3	1	2	왁스모델링과 주얼리장신구 정밀주조기법을 접하고 익혀서 작품제작에 응용하고 더 나아가 주얼리산업현장에서일의무를담당할수있도록교육한다.	
3	1	계선	디지털3D디 자인1	3	1	2	실무 중심의 컴퓨터 교육과정으로 주얼리 제품 개발에 필요한 CAD/CAM/3D의 디지털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에 맞는 프로그램(Rhino 3D)를 익혀 디자이너로서의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며 다양한 3D작업과 실물제작을 통한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시킨다.	
3	1	계선	트렌드 디자인	3	1	2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적 트렌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주얼리 디자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3	1	계선	금속성형기 법	3	1	2	금속의 판금작업과 성형작업을 통하여 실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조형능력을 배양한다.	
3	2	전필	예술장신구 2	3	1	2	예술 장신구의 디자인 및 제작을 통하여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 제작함으로써 장신구, 문화상품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조형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다양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장신구, 문화상품을 제작한다.	
3	2	전선	주얼리Cast ing2	3	1	2	정밀주조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주얼리 산업화에따른대량생산기법을익힌다.	
3	2	계선	디지털3D디 자인2	3	1	2	CAD/CAM/3D의 여러가지 장점을 살려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부분적인 조립과 팔찌등에 들어가는 장식의 종류와 세부적인 사항을 배운다.장식의 작동 원리를 캐드를 통해 살펴보고 실무에 적용시키는 방법과 응용방법을 배운다. 제품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특이성을 이해한다.	
3	2	계선	디자인리서 치	3	1	2	다양한 산업 장신구를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들에 욕구 충족과 시장성, 경제성등을 이해하여 디자인의 개발계획 수립 능력을 향상 시키며,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능력을 배양한다.	
3	2	계선	리빙오브젝 트 디자인	3	1	2	현대생활 문화 속에서 적용되어 질 수 있는 문화상품 및 테이블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젝트 과정속에서 문화적 요소, 생활디자인, 디자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익혀 제품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4	1	전심	금속제품디 자인1	3	1	2	금속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사회에서 금속제품의 대량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금속제품 디자인 이론, 실기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독창적인 금속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4	1	계선	창작예술장 신구1	3	1	2	창작과 예술 바탕으로 한 장신구 제작 표현 능력과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양한 현대 장신구디자인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4	1	계선	프리젠테이 션과 포트폴리오	3	1	2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제작과정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류 및 포트폴리오 제작한다.	
4	1	계선	마케팅 디자인	3	1	2	판매자가 원활한 판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현황, 디자인 트렌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분석하며 판매력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판매활동에 필요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둔다.	
4	1	계선	캡스톤디자 인 실무 1	3	1	2	예물주얼리 구입형태와 특징, 구매 경험과 인식등을 통해 국내 예물 주얼리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예물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와 시장 잠재력을 도출하여 이를 타개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구매 타겟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소비트렌드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제품개발 능력을배양한다.	
4	2	전심	금속제품디 자인2	3	1	2	금속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사회에서 금속제품의 대량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금속제품 디자인 이론, 실기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독창적인 금속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4	2	계선	창작예술장 신구2	3	1	2	창작과 예술 바탕으로한 장신구 제작 표현 능력과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현대장신구디자인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4	2	계선	디자인경영	3	1	2	디자인 경영에 대하여 이해하고, 디자인 경영을 활용한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키는 능력을 배양한다.	
4	2	계선	캡스톤디자 인 실무 2	3	1	2	다양한 산업장신구를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들에 욕구 충족과 장식성, 경제성 등을 이해하여 디자인의 개발계획 수립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능력을 배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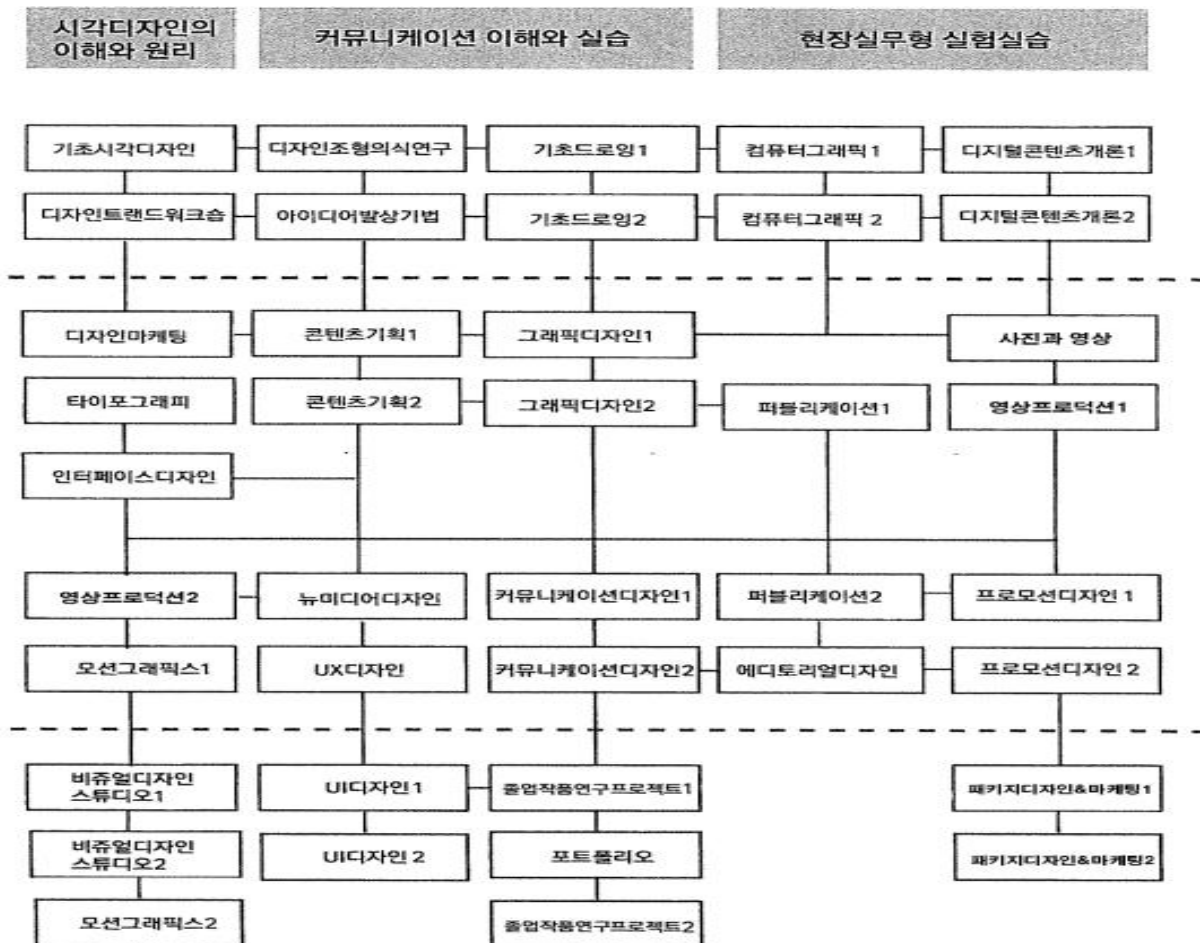
### 3. 시각·영상디자인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21세기에 다양한 정보매체와 타 분야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시각디자인의 영역을 넓혀 국내 및 국제 디자인계에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시각디자인의 전문 분야별 디자이너를 양성하여 디자인의 메카로 자리 잡는다.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정보매체의 발달에 적응하는 풍부한 감성과 이 지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미래지향적인 학과이다. 또한 다양하고 폭 넓은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기술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최선의 교육을 다하고 있으며 종합적 감성에 호소하는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시각디자인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시각디자인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대체능력을 키우고, 시대가 요구하는 고도의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풍부한 감성과 이성적 사고능력을 지닌 우수한 시각디자이너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전문지식과 관련지식을 습득하여 미래사회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시각디자인전공의 교육 목표는 급변하는 정보매체 발달에 부응하여 관련 다른 분야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시각디자인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새로운 이론과 교육방법을 창출하여 현 교육체제에 반영 실시함으로써 21세기 국내 및 국제 디자인계에서 창조적으로 능동적인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시각디자인의 전문 분야별 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 - 교육체계도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전기	기초시각 디자인	3	1	2	기초 디자인조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켜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교육과정이다. 조형적 요소와 구성, 형태, 색채감각의 훈련 등을 통하여 표현력과 조형감각을 체득하게 함은 물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공간의 상호관계, 공간성 파악 등 3차원조형의 형성 원리를 익히도록 학습한다.	
1	1	계선	기초 드로잉 1	3	1	2	사실적 표현과 구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표현 방향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2D 및 3D 표현의 특성을 학습하여 시각적 표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힌다.	
1	1	계선	컴퓨터그래픽 1	3	1	2	그래픽 디자인에 요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실기실습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그래픽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학습한다.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사용법과 함께 다양한 매체 적용에 대해 학습한다.	
1	1	계선	시각디자인론	2	2	0	2차원적 표현과 3차원적 표현의 특성과 차이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소양을 배양한다.	
1	1	계선	디자인 조형의식 연구	3	1	2	물질적 예술, 공간적 예술, 시각적 예술로서의 디자인 조형에 관하여 예술작품이나 그것에 관련한 문제들을 음미하고 디자인 조형에 대한 트렌드와 의식구조에 대해 학습한다.	
1	2	전기	디자인트렌드 워크숍	3	2	1	현대 디자인 분야의 핵심 이슈와 트렌드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 디자인 발전방안을 탐구하고 학습한다.	
1	2	전선	색채와 응용	2	2	0	색채 처리 능력 및 활용방법을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색채계획을 위한 기초 지식부터 색명법, 색의 혼합 및 혼색, Color System, 색의 시각현상, 색채 Image, 색의 배색 관계, 색채계획등을 학습한다.	
1	2	계선	기초 드로잉 2	3	1	2	인쇄매체를 통한 기능적 예술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매체특성에 부합되는 함목적적인 표현을 습득하며 실험적이고 창의적 내용을 담는 기법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학습한다.	
1	2	계선	컴퓨터그래픽 2	3	1	2	컴퓨터의 구성과 컴퓨터그래픽의 개념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툴과 기능을 익힌다. 2D 그래픽의 기본적인 벡터방식의 Illustrator와 이미지합성과 영상작업의 기본적인 Photoshop의 툴과 메뉴를 예제를 통하여 학습하고 작품제작을 통한 그래픽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1	2	계선	아이디어 발상기법	3	1	2	일상적인 사고패턴을 깨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디자이너의 창의적사고력 증진을 위해 설강된 과목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변형, 왜곡, 과장 등의 비추얼 펀(fun)을 통해 유머와 재치가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해 내는 과정등을 학습한다.	
2	1	전필	타이포그래피	3	1	2	글꼴의 조형 원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타이포그래피의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전달과 미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집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을 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1	전선	광고기획& 프리젠테이션	2	1	1	프리젠테이션의 전문적인 디자인 기법과 이론을 학습하고 독창적인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이론적, 기술적 기반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에 임하는 발표자의 마음 자세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원리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듣고 성공적 프리젠테이션을 기획, 작성, 발표하기 위한 학습을 한다.	
2	1	계선	디자인 마케팅	3	2	1	디자인 마케팅은 마케팅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와 이론 중에서 디자이너와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최소한의 요소들만 이끌어내어 디자인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2	1	계선	사진과 영상	3	1	2	카메라의 메커니즘과 광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 실습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을 연출하는 프로덕션 과정을 학습한다.	
2	1	계선	그래픽 디자인 1	3	1	2	디자인에서 문자는 시각 전달매체로 상당히 중요하다. 한글 및 영문의 기본적인 서체 훈련을 통하여 문자의 균형과 조화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감각과 형태의 문자조형으로 창작문자 디자인을 개발하고 학습한다.	
2	2	전필	영상프로덕 션1	3	1	2	영상제작의 프로세스인 기획-촬영-편집&후반작업의 전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체형하여, 기초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다.	
2	2	계선	정보디자인	2	1	1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이해하고, 콘텐츠 기획에 필요한 기획력과 프로젝트 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다양한 실무 요건들을 학습한다.	
2	2	계선	그래픽 디자인 2	3	1	2	상품광고Poster 공익광고Poster 및 판촉용Calender 제작을 통하여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며 디자인기획에서 완성까지의 전과정을 습득케 하여 실무 적응능력을 키우도록 학습한다.	
2	2	계선	퍼블리케이 션 디자인 1	3	1	2	창의적인 시각적 질서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기 위한 편집디자인의 중추적인 요소인 레이아웃과 그리드 시스템의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고 인쇄매체디자인을 실습한다. 책, 잡지, 신문 등 다양한 인쇄홍보물의 정보를 기획, 생산하고 제작하는 과정 등 종합적인 편집디자인 과정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2	2	계선	인터페이스 디자인	3	1	2	사용자가 정보컨텐츠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과 제작과정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3	1	전필	영상프로덕 션2	3	1	2	기본적인 영상 제작 프로세스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 스토리보드, 카메라 워크, 조명, 사운드, 프로젝트 관리, 후반작업 등의 전문적인 영상 제작 과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영상작품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3	1	전선	커뮤니케이 션 디자인 1	3	1	2	좀 더 폭넓은 조형요소와 원리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매체에 적합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도록 학습한다.	
3	1	전선	퍼블리케이 션 디자인 2	3	1	2	편집 및 인쇄과정을 이해하고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사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통하여 디자인의 전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한다.	
3	1	전선	프로모션 디자인1	3	1	2	POP, 전단, 옥외매체 등 다양한 방식의 광고 형식을 접하고 기획, 제작해 봄으로 그 특성과 기능을 이해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학습한다.	
3	1	전선	뉴미디어디 자인	2	1	1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뉴미디어의 활용분야와 사례들을 학습한다. 뉴미디어 구현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바탕을 이해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2	전필	프로모션 디자인2	3	1	2	레이블에서 포장지, 쇼핑백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포장 재료의 선택과 기능적인 포장 구조의 연구, 효과적인 포장 처리 등 종합적인 조형능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3	2	전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	3	1	2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관리를 위한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적 개발 과정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3	2	전선	모션그래픽 스1	3	1	2	영상 미디어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션그래픽 기법의 원리와 활용 툴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2	전선	에디토리얼 디자인	2	0	2	독자의 독서 행위를 고려하면서 글과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책의 구조적인 디자인, 인쇄와 제본 방식을 결정하는 포괄적 디자인 행위를 학습한다.	
3	2	전선	UX 디자인	3	1	2	웹디자인과 모바일 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의 개념과 브라우저의 활용방법을 익히고 학습한다. 아울러 웹과 모바일 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제작에 필요한 ① 에디터프로그램② 그래픽프로그램, ③ 프로그래밍, ④ 기타 주변기기에 관하여 학습한다.	
4	1	전심	UI디자인	3	1	2	사용자가 정보컨텐츠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과 제작과정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또한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고, 관객과 디자인 결과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어해보는 실습을 한다.	
4	1	계선	프로모션 디자인2	3	1	2	레이블에서 포장지, 쇼핑백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포장 재료의 선택과 기능적인 포장 구조의 연구, 효과적인 포장 처리 등 종합적인 조형능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4	1	계선	비주얼디자 인 스튜디오 1	3	1	2	시각적 아이디어 발상과 전개를 경험케 하며 문자와 이미지의 조화로운 레이아웃 방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시각디자인 영역의 다양한 매체활용과 제작을 통해 종합적인 비주얼 전략을 전개하고 학습한다.	
4	1	계선	졸업작품연 구프로젝트 1	2	0	2	졸업작품제작에 요구되는 통합적 전시기획을 작성하고 개인별, 조별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작품성과 표현기법에 대한 전략을 학습한다.	
4	1	계선	패키지디자 인&마케팅1	3	1	2	레이블에서 포장지, 쇼핑백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포장 재료의 선택과 기능적인 포장 구조의 연구, 효과적인 포장 처리 등 종합적인 조형능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4	2	전심	패키지디자 인&마케팅 2	3	2	1	레이블에서 포장지, 쇼핑백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포장 재료의 선택과 기능적인 포장 구조의 연구, 효과적인 포장 처리 등 종합적인 조형능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심화과정)	
4	2	계선	비주얼디자 인 스튜디오 2	3	1	2	시각적 아이디어 발상과 전개를 경험케 하며 문자와 이미지의 조화로운 레이아웃 방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시각디자인 영역의 다양한 매체활용과 제작을 통해 종합적인 비주얼 전략을 전개하고 학습한다.	
4	2	계선	포트폴리오	2	0	2	포트폴리오는 자신을 표현하는 소중한 미디어 도구이자 전략이다. 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그 용도와 유형, 그리고 구성과 표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학습한다.	
4	2	계선	UI디자인2	2	0	2	사용자가 정보컨텐츠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과 제작과정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또한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이용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고, 관객과 디자인 결과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어해보는 실습을 한다.	
4	2	계선	졸업작품연 구프로젝트 2	2	0	2	졸업작품제작에 요구되는 통합적 전시기획을 작성하고 개인별, 조별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작품성과 표현기법에 대한 전략을 학습한다.	

## 4. 만화게임영상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 융복합형 콘텐츠 인재양성!

현대 사회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과 각종 미디어들이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복합 콘텐츠의 추구이다. 이에 걸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 전통적인 방법에 더해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각 분야의 장점이 결합된 전인적 교육과 그에 맞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에 만화, 게임, 영상이라는 3가지 큰 트랙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융합되어 영향을 주는 커리큘럼을 토대로 각종 문화 콘텐츠 융합교육, 게임 엔진 및 V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 교육체계도

창조적 예술인		실용적 전문인		봉사적 교육인	
창조적 콘텐츠 기초 기술 함양	창조적 콘텐츠 응용 기술 함양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위한 기초 교육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위한 응용 교육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 과목	
기초 드로잉 1	기초드로잉2	컴퓨터 그래픽1	컴퓨터 그래픽2	디지털 콘텐츠 개론1	원화 일러스트레이션1
만화화면연출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3D기초모델링 & 맵핑	시네마틱영상 제작실습	디지털 콘텐츠 개론2	원화 일러스트레이션2
콘텐츠 기획1	콘텐츠 기획2	모션그래픽 기초1	모션그래픽 기초2	졸업작품 프로젝트1	졸업작품 프로젝트2
만화연출 및 제작1	만화연출 및 제작2	3D맵핑응용	모션 그래픽 실무1	게임원화 일러스트레이션1	게임원화 일러스트레이션2
웹툰 기획 및 제작1	웹툰 기획 및 제작2	게임동작표현1	3D게임 캐릭터 & 배경제작1		
게임 UI 디자인1	게임 UI 디자인2	게임동작표현2	모션 그래픽 실무2		
	포트폴리오 연구1	3D게임 캐릭터 & 배경제작2	VR 콘텐츠 실습1		
	포트폴리오 연구2	VR 콘텐츠 실습2	사운드 디자인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전기	영상 작품 분석	3	1	2	기존의 영상 작품들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고전에서부터 최근작까지 선정하여 분석해보고 이론을 정립시킨다.	
1	1	계선	기초 드로잉 1	3	1	2	드로잉의 기본이 되는 인체의 구조를 익히고 표현. 사실적 표현을 기반으로 만화의 인체특성을 반영하여 표현해본다. 이시간에는 해부학적 기초지식과 입체구조, 그리고 선의 특성을 익힌다.	
1	1	전선	컴퓨터그래픽 1	3	1	2	벡터 그래픽, 비트맵 그래픽, 디지털 색체에 관한 컴퓨터 그래픽 전반적인 기초적인 이론 및 실습을 배우는, 모든 커리큘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과정이다.	
1	1	계선	디지털 콘텐츠 개론 1	2	2	0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기초적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수업으로 창작자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를 습득하고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1	1	계선	만화화면연출	3	1	2	만화에서 연출되고 있는 기본적 화면구도를 미장선과 몸다주 중심으로 학습하며 각종 연출방법을 익히는데 주력한다.	
1	2	전기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3	1	2	만화와 영상작품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대본)를 분석한 후 스크립트(각본)를 제작. 이후 스토리보드(콘티) 드로잉을 제작하여 스토리가 있는 화면연출을 훈련.	
1	2	계선	기초 드로잉 2	3	1	2	드로잉의 기본이 되는 인체의 구조를 익히고 표현. 사실적 표현을 기반으로 만화의 인체특성을 반영하여 표현해본다. 이시간에는 해부학적 기초지식과 입체구조, 그리고 선의 특성을 익힌다.	
1	2	전선	컴퓨터그래픽 2	3	1	2	벡터 그래픽, 비트맵 그래픽, 디지털 색체에 관한 컴퓨터 그래픽 전반적인 기초적인 이론 및 실습을 배우는, 모든 커리큘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과정이다.	
1	2	계선	디지털 콘텐츠 개론 2	2	2	0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알리며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각 콘텐츠의 특징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2	계선	모션그래픽 기초 1	3	1	2	영상이펙트 툴을 사용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움직이는 이미지와 정지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를 2D 공간에 통합한 다음 각 요소를 시각적으로 애니메이션 처리하고 보다 높은 효과를 위해 사운드를 추가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작하여 본다.	
2	1	전필	모션그래픽 기초 2	3	1	2	Blender 3D 툴을 사용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움직이는 이미지와 정지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를 3D 공간에 통합한 다음 각 요소를 시각적으로 애니메이션 처리하고 보다 높은 효과를 위해 사운드를 추가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작하여 본다.	
2	1	계선	디지털 콘텐츠 연출 심화 과정	3	0	3	만화와 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들에 사용되는 연출기법중 심화과정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2	1	계선	만화연출 및 제작1	3	1	2	캐릭터의 성격, 외형, 대사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출방법을 학습한 후 만화형태로 제작해본다	
2	1	계선	3D 기초 모델링&맵핑	3	1	2	3D graphics를 위한 기초 과정으로 각종 모델링 명령어를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3D 모델링과 맵핑과정을 배우는 과정이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1	계선	콘텐츠 기획 1	2	1	1	프리젠테이션의 전문적인 디자인 기법과 이론을 학습하고 독창적인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이론적, 기술적 기반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에 임하는 발표자의 마음 자세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원리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듣고 성공적 프리젠테이션을 기획, 작성, 발표하기 위한 학습을 한다.	
2	2	전필	모션그래픽 실무1	3	1	2	모션그래픽 영상에 필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보편적인 모델링 수업으로 모델링의 종류와 원리를 이해 및 제작하여보고 셰이딩(재질) 및 맵핑을 실습하여 본다.	
2	2	계선	디지털 조형 실습	3	0	3	디지털 3D 조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실습을 통해 알아보는 과목이다.	
2	2	계선	만화연출 및 제작2	3	1	2	캐릭터와 배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태를 구성한 후 각 장르의 만화형태로 제작해 본다.	
2	2	계선	3D 맵핑응용	3	1	2	PBR(물리기반렌더링) 적극적인 사용방법을 익혀 실사와 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맵칭 심화과정이다.	
2	2	계선	콘텐츠 기획 2	2	1	1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이해하고, 콘텐츠 기획에 필요한 기획력과 프로젝트 수행에 수반되어야할 다양한 실무 요건들을 학습한다.	
3	1	전필	웹툰 기획 및 제작 1	3	1	2	디지털 매체에 최적화 되어 있는 웹툰을 기획 및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만화 제작 능력을 함양하는데 주를 두는 수업이다.	
3	1	계선	게임 원화 일러스트레 이션1	2	1	1	게임 실무에서 제작되는 캐릭터 및 소품, 배경 원화의 과정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고 그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각종 게임 원화 작업을 실제로 묘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1	계선	모션그래픽 실무2	3	1	2	Blender 3D와 영상이펙트 툴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응용 및 활용하는 과정으로 2D와 3D 그리고 실사영상을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3	1	계선	게임 동작표현1	3	1	2	동작표현의 이론 및 원리를 바탕으로 게임에서 사용되는 기본 동작표현의 각종 기초 내용들을 학습해본다.	
3	1	계선	3D 게임 캐릭터&배 경제작1	3	0	3	그동안 배운 3D 기능들을 이용하여 각종 3D 캐릭터 및 배경을 제작하는 응용 및 고급 과정이다. 이번 학기에서는 게임 엔진을 통한 최종 콘텐츠 제작을 실습한다.	
3	2	전필	웹툰 기획 및 제작 2	3	1	2	디지털 매체에 최적화 되어 있는 웹툰을 기획 및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만화 제작 능력을 함양하는데 주를 두는 수업이다.	
3	2	계선	게임 원화 일러스트레 이션2	2	1	1	게임 실무에서 제작되는 캐릭터 및 소품, 배경 원화의 과정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고 그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각종 게임 원화 작업을 실제로 묘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2	계선	게임 동작표현2	3	1	2	1학기 때 학습한 동작표현의 이론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이번학기에는 각종 응용동작 구현 및 실무기법들을 익히는데 주력한다	
3	2	계선	3D 게임 캐릭터&배 경제작2	3	0	3	그동안 배운 3D 기능들을 이용하여 각종 3D 캐릭터 및 배경을 제작하는 응용 및 고급 과정이다. 이번 학기에서는 게임 엔진을 통한 최종 콘텐츠 제작을 실습하여 이후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4	1	전심	VR 콘텐츠 실습1	3	1	2	오쿨러스, Gear VR 등의 HMD 기기에서 작동하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Unity로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VR 콘텐츠 개발을 위한 3D 렌더링, 물리시스템, VR 인터랙션과 UI, VR 움직임 등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스킬을 익히는 과정이다.	
4	1	계선	졸업작품 프로덕션1	3	0	3	졸업작품전에 대비한 자기 전공 작품 제작을 함으로서 창의적인 작품개념을 유도하고 자신의 노력과 창조적 상상력, 인내심 그리고 옳은 것을 받아 드릴 수 있는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협동의 마음을 경험케 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 하고자 하는 용기와 변화에 대한 빠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 졸업 후 유능한 애니메이터와 디자이너 등 적성 분야에서 자질을 갖추도록 특별 프로젝트를 연구 발표 하도록 한다.	
4	1	계선	포트폴리오 연구1	2	1	2	포트폴리오는 자신을 표현하는 소중한 미디어 도구이자 전략이다. 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그 용도와 유형, 그리고 구성과 표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학습한다.	
4	1	계선	사운드 디자인	2	1	1	영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운드의 음성, 음악, 효과음을 녹음 및 편집. 이미지와 사운드 결합의 다양한 사례를 감상 및 응용하여 효과적인 사운드 연출방법을 함양.	
4	1	계선	게임 UI 디자인1	3	1	2	게임에서 사용되는UI에 대한 이해와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 배워보면서 게임 고급기술 제작 및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2	전심	VR 콘텐츠 실습2	3	1	2	오쿨러스, Gear VR 등의 HMD 기기에서 작동하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Unity로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VR 콘텐츠 개발을 위한 3D 렌더링, 물리시스템, VR 인터랙션과 UI, VR 움직임 등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스킬을 익히는 과정이다.	
4	2	계선	졸업작품 프로덕션2	3	0	3	졸업작품전에 대비한 자기 전공 작품 제작을 함으로서 창의적인 작품개념을 유도하고 자신의 노력과 창조적 상상력, 인내심 그리고 옳은 것을 받아 드릴 수 있는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협동의 마음을 경험케 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 하고자 하는 용기와 변화에 대한 빠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 졸업 후 유능한 애니메이터와 디자이너 등 적성 분야에서 자질을 갖추도록 특별 프로젝트를 연구 발표 하도록 한다.	
4	2	계선	포트폴리오 연구2	2	1	2	포트폴리오는 자신을 표현하는 소중한 미디어 도구이자 전략이다. 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그 용도와 유형, 그리고 구성과 표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학습한다.	
4	2	계선	게임 UI 디자인2	2	1	2	게임에서 사용되는UI에 대한 이해와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 배워보면서 게임 고급기술 제작 및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 5. 애니메이션&웹툰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 예술과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뉴미디어 디지털 영상콘텐츠 인재양성!

애니메이션전공은 다양한 문화의 예술과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융합형 종합예술의 결정체로서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고,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관련 분야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체계적인 문화콘텐츠 융합교육, 창의력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연출하고 운용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화시대에 맞는 뉴 미디어 시대의 문화예술 산업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교육체계도

핵심영량 혹은 주요진로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터	만화산업 웹툰작가	게임산업/ 출판산업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산업/ 게임산업 3D디자인
4학년	졸업작품제작1 캡스톤디자인1 포트폴리오1 창업과 취업연구1 졸업작품 발표전시1	졸업작품제작2 캡스톤디자인2 포트폴리오2 창업과 취업연구2 졸업작품 발표전시2		
3학년	실험애니메이션 웹툰스튜디오1 3D애니메이션실무1 영상연출과이펙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1	만화애니메이션교수학습방법(문) 웹툰제작2 3D애니메이션실무2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개발(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2 졸업작품 워크샵		
2학년	콘텐츠기획1 스토리보드 3D모델링1 애니메이션액팅연출1 영상편집1 입체조형디자인	콘텐츠기획2 배경과레이아웃 3D모델링2 애니메이션액팅연출2 만화애니메이션교육론(문) 영상편집2		
1학년	디지털콘텐츠개론1,2 컴퓨터그래픽1,2 기초드로잉1,2 2D애니메이션기초실습1,2 웹툰제작기초1,2 컨셉디자인1,2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전공 기초	기초드로잉 1	3	1	2	다양한 드로잉 재료들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드로잉 기법과 현재 유행하는 드로잉 기법을 학습하고,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고유 감성을 추가함으로써 독창적인 재현방법을 경험하게함으로써 사물을 재현해내는 능력을 배양한다.	
1	1	계열 선택	디지털 콘텐츠 개론1	2	1	1	학부 전공의 핵심영역인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디지털디자인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분야의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에 대해 학습한다.	
1	1	계열 선택	컴퓨터 그래픽 1	3	1	2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태블릿을 활용하여 디지털 드로잉, 디지털 페인팅, 디지털 디자인의 기초 실무과정을 학습한다	
1	1	계열 선택	2D애니메이 션 기초실습 1	2	1	1	애니메이션 제작도구를 활용한 기초 실습을 통하여 캐릭터와 배경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연출 타이밍을 연구한다.	
1	1	계열 선택	웹툰 제작 기초1	2	1	1	웹툰 기획, 시놉시스, 시나리오, 캐릭터디자인, 배경디자인, 칸 설정, 레이아웃, 편집에이르기까지웹툰제작기초실무를학습한다.	
1	1	계열 선택	컨셉디자인 1	2	1	1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디지털영상콘텐츠 산업분야에서 컨셉디자인의 개념과 포지셔닝, 컨셉디자이너의 업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캐릭터, 배경/장소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기초 실무를 학습한다.	
1	2	전공 기초	기초드로잉 2	3	1	2	다양한 드로잉 재료들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드로잉 기법과 현재 유행하는 드로잉 기법을 학습하고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자신 고유의 감성을 추가함으로써 독창적인 재현 방법을 경험케 함으로서 사물을 재현해내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1	2	계열 선택	디지털 콘텐츠 개론2	2	1	1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산업의 국내외 산업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시장에 출시된 성공작품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분야의 직무를 이해하고 실무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요 역량을 파악한다.	
1	2	계열 선택	컴퓨터 그래픽 2	3	1	2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태블릿을 활용하여 디지털 드로잉, 디지털 페인팅, 디지털 디자인의 심화 실무과정을 학습한다	
1	2	계열 선택	2D애니메이 션 기초실습 2	2	1	1	애니메이션의 모든 제작구성의 기본요소는 드로잉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곧 생명이 없는 대상물을 인위적으로 생명이 들어 있게끔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물 물체의 움직임을 통해 애니메이션 기본동작의 움직임연출 표현,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연구함으로써 캐릭터 디자인에 맞추어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을 완성 할 수 있도록 한다.	
1	2	계열 선택	웹툰 제작 기초2	2	1	1	웹툰 제작 기초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웹툰 기획, 시놉시스, 시나리오, 캐릭터디자인, 배경디자인, 칸 설정, 레이아웃, 편집에이르기까지웹툰제작기초실무를학습한다.	
1	2	계열 선택	컨셉디자인 2	2	1	1	기존에 유명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그래픽, 캐릭터의 컨셉디자인 과정, 제작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캐릭터와 배경의 컨셉 개발을 위한 창의력과 시각적 표현능력을 학습한다.	
2	1	전공 필수	스토리보드	3	1	2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창의적인 스토리 기획 및 연출을 사례 연구하고 기초 실습을 통해 스토리보드링 능력을 배양한다.	
2	1	계열 선택	콘텐츠 기획1	2	1	1	UN이 인류 발전과 지구 보호를 위해 제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이해하고, 이와 연관된 국내외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의 기획서를 완성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1	계열 선택	애니메이션 액팅 연출1	2	1	1	애니메이션 영상연출에 관한 미학적 모티브를 공부하며 영상연출 디자인의 특성과 분석을 통한 실습을 한다.	
2	1	계열 선택	입체조형디 자인	2	1	1	본인이 구상한 작품 성격에 맞는 캐릭터와 배경오브젝트를 지정도와 유도를 활용하여 입체조형물로 제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	1	계열 선택	영상편집 1	2	0	2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본인이 제작한 캐릭터 및 배경 이미지들과 사운드를 통해 움직이는 동영상 제작 편집 기초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2	1	계열 선택	3D모델링1	3	1	2	캐릭터와 배경 사물의 입체적인 표현기법에 대해 학습하고, 3D Computer Graphics Tool 실습을 통해 인간과 사물, 배경오브젝트를 3D로 모델링, 매핑하는 기초 실무과정을 학습한다	
2	2	전공 필수	배경과 레이아웃	3	1	2	웹툰과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배경과 레이아웃을 투시와 구도, 컬러, 조명 등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고 전체적인 연출을 학습한다.	
2	2	계열 선택	콘텐츠 기획2	2	1	1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방송, 음악, 캐릭터, UCC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 중에서 본인의 관심분야를 정하고 나중에 본인의 졸업작품이나 취업포트폴리오, 공모전 출품 등을 목표로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기획서를 수립,완성한다.	
2	2	계열 선택	애니메이션 액팅 연출2	2	1	1	애니메이션액팅은 2D작화작업이나,3D컴퓨터작업이나 모든동작들은 계획된 스토리보드에 의해 정지된 그림, 도형,사물,인형등에 조금씩 논리적인 움직임의 변형을 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 장면 한 장면씩 표현되어지는 만큼, 그 것의 부피, 길이, 표정,감정, 동작, 연기 등이 분명히 드러나는 동작포즈의 구성형태로 알기 쉽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3	2	전공 선택	만화애니메 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문)	2	1	1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문화예술교육사로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수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2	2	계열 선택	영상편집 2	2	0	2	영상편집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본인이 제작한 캐릭터 및 배경 이미지들과 사운드를 통해 움직이는 동영상 제작 편집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2	2	계열 선택	3D모델링 2	3	1	2	3D모델링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캐릭터와 배경 사물의 입체적인 표현기법에 대해 학습하고, 3D Computer Graphics Tool 실습을 통해 인간과 사물, 배경오브젝트를 3D로 모델링, 매핑하는 기초 실무과정을 학습한다	
3	1	전공 필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1	3	1	2	팀프로젝트로 단편애니메이션(Shot Film)을 제작목표로 한다. 애니메이션프로젝트1에서는 작품기획 부분에 기획의도, 기획연출 제작에 중점을 두고 제작 시스템을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연출에 실무적인 영상표현기법을 연출 하는데 있다.	
3	1	계열 선택	3D애니메이 션실무1	3	1	2	3D-MAX 등 제작툴 활용 능력과 3D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극대화 시킨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1	계열 선택	영상연출과 이펙트	2	1	1	영상에서의 프레임(Frame)과 쇼트(Shot), 앵글(Angle)의 허용과 통제를 통해 계획된 미장센(Mise en Scene) 실무기법을 습득하여 영상화면을 연출하고 이펙트 효과를 삽입하여 디지털영상콘텐츠작품을 완성시킨다.	
3	1	계열 선택	게임아트	2	1	1	Case Study를 통해 인기 게임의 게임그래픽에 대해 학습하고, 캐릭터와 배경에 대한 외모와 외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컨셉디자인, 원화디자인, 바리에이션, 커스터마이징, 동작일러스트, 장면일러스트 등의 시각적인 표현을 학습한다.	
3	1	계열 선택	웹툰스튜디오 1	2	1	1	작품 세계관, 전체줄거리, 화별 흐름스토리를 창작하고, 등장 캐릭터와 주요 배경 및 장소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다음, 화별 콘티레이아웃 도출을 통해 80컷 기준 3화 분량의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3	1	계열 선택	실험애니메 이션	2	1	1	다양한 오브젝트와 새로운 형태의 애니메이션 제작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형태 즉 실험 애니메이션을 제작, 실습한다.	
3	2	전공 필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2	3	1	2	팀프로젝트로 단편애니메이션(Shot Film)을 작품제작을 완성한다. 애니메이션프로젝트2에서는 제작, 편집을 통해 애니메이션 전반적인 제작흐름을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영상표현 기법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완성한다.	
3	2	계열 선택	3D애니메이 션실무2	3	1	2	3D애니메이션실무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3D-MAX 등 제작툴 활용 능력과 3D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극대화 시킨다.	
3	2	계열 선택	졸업작품위 크샵	2	1	1	학생 본인의 진로 및 취업 희망분야를 결정하고, 산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실무 제작기술이 적용된 졸업작품을 기획하고, 작품의 세계관과 주요 줄거리를 설정하고, 주요 등장 캐릭터와 배경 이미지 컨셉 확정 등을 통해 Pre-Production 과정을 완성한다.	
3	2	전공 선택	만화애니메 이션교수학 습방법(문)	2	1	1	만화애니메이션 교육 방법에 관하여 분석, 연구하여 창의적이고 열린 교육 방법을 도출, 정리한다.	
2	2	전공 선택	만화애니메 이션 교육론(문)	2	1	1	만화 애니메이션교육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 교육 이론 및 학교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만화 애니메이션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에서 만화 애니메이션교육의 목적, 의미,역할,역사, 적용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3	2	계열 선택	웹툰스튜디오 2	2	1	1	웹툰제작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작품 세계관, 전체줄거리, 화별 흐름스토리를 창작하고, 등장 캐릭터와 주요 배경 및 장소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다음, 화별 콘티레이아웃 도출을 통해 80컷 기준 3화 분량의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4	1	전공 심화	졸업작품 제작 1	3	1	2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전공 관련 실무 지식을 종합하여 본인이 기획, 연출한 디지털 영상콘텐츠 및 디자인 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작품 제작 진행과정에서 일대일 개별 상담을 통해 Quality 향상과 산업체 Needs를 반영함으로써 향후 작품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인다.	
4	1	계열 선택	졸업작품 발표 전시1	3	1	2	본인의 졸업작품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고 홍보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영상 프레젠테이션과 작품도록을 디자인 한다.	
4	1	계열 선택	포트폴리오 1	3	1	2	취업 희망분야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본인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초안을 제작한다.	
4	1	계열 선택	캡스톤 디자인1	2	1	1	본인이 제작하는 콘텐츠 작품에 필요한 타이틀 디자인, 포스터, 홍보용 일러스트를 기획·디자인 한다.	
4	1	계열 선택	창업과 취업연구 1	2	1	1	학생들 개인별로 창업과 취업 희망분야에 관한 자료조사와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등 취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4	2	전공필수	졸업작품제작 2	3	1	2	졸업작품 제작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전공 관련 실무 지식을 종합하여 본인이 기획, 연출한 디지털 영상콘텐츠 및 디자인 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작품 제작 진행과정에서 일대일 개별 상담을 통해 Quality 향상과 산업체 Needs를 반영함으로써 향후 작품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인다.	
4	2	계열선택	졸업작품 발표 전시 2	3	1	2	졸업 작품 외부 전시, 발표상영회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본인이 만든 작품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홍보 어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4	2	계열선택	포트폴리오 2	3	1	2	포트폴리오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취업 희망분야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취업 포트폴리오를 제작 완성한다.	
4	2	계열선택	캡스톤 디자인 2	2	1	1	캡스톤 디자인1 과목의 심화과정으로 본인이 제작하는 콘텐츠 작품에 필요한 타이틀 디자인, 포스터, 홍보용 일러스트를 완성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4	2	계열선택	창업과 취업연구 2	2	1	1	학생들 개인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취업 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과 멘토를 토대로 창업과 취업에 도전한다.	

## 6. 연극영화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연극, 영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연극무대, 영화, 영상 및 미디어 분야에 전문 예술가를 배출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각 분야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을 담당하여 졸업 후 가장 많은 연예인을 배출하고 있다.

연극 영화 방송 및 기타 매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예술가들을 배출하기 위해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 중심의! 학생 중심의! 교육실기 시스템으로 수많은 전문가를 배출하여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 - 교육체계도

핵심역량 혹은 주요진로	역량1 혹은 진로1 (연극)	역량2 혹은 진로2 (영화)	역량3 혹은 진로3 (방송콘텐츠)	역량4 혹은 진로4 (문화예술사)	역량5 혹은 진로5 (무대스텝)
--------------------	--------------------------	--------------------------	-----------------------------	-----------------------------	----------------------------

4학년 (실용)	-공연워크숍 -오디션실기	-현대영화분석세미나 -단편영화제작실기, 장편영화제작실기	-미디어제작실기 -매체연기 -영상포트폴리오	-문화예술기획
3학년 (고급)	-유지컬제작실기, 코미디제작실기 -공연안무1,2 -보컬	-작품연출, 공연분석과 평론	-연극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교수학습방법	-촬영 및 편집1,2 -영상 콘텐츠 창작
2학년 (중급)	-발성법1,2 -연극제작1,2 -연극작품연구,영화작품연구 -시나리오극작 -전통예술1,2	-무대디자인1, 무대장치 및 분장 -연극교육론		
1학년 (기초)	-기초연기1,2 -연극개론, 영화개론 -호흡과 발성1,2 -대중예술론, 연출기초 -신체훈련1,2 -공연예술론1,2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계열	연극개론	2	2	0	연극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희곡, 연출, 연기, 미술 및 극장기술 등 연극요소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연극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원리를 학습한다.	
1	1	계열	대중예술론	2	2	0	공연의 여러 종류(무용, 연극, 코미디, 창, 서커스, 무당극 등)를 특징과 시대적 변천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미학적 가치를 살펴본다. 이미지 예술의 기호, 상징, 은유를 통해 각기 가는 공연예술을 비교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운다.	
1	2	계열	영화개론	2	2	0	초기 영화발명과 영화 예술의 기원부터 오늘날의 영화예술에 대한 변천과 발달과정을 연구,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영화예술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1	2	계열	연출기초	2	0	2	한편의 공연을 연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연출요소들의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1	1,2	계열	공연예술론 1,2	3	1	2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다루는 공연예술 이론들을 통해,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공연적 예술의 핵심을 이해하고 공연 중 예술로서 인식되어 온 주요 공연 장르들을 이해하고 감상을 통한 경험을 한다.	
1	1,2	계열	호흡과 발성 1,2	2	0	2	호흡과 발성의 기본을 이해하고 공연에 필요한 원리를 습득하여 배우로서 자유롭게 말하기를 위한 능력을 기르고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1,2	계열	신체훈련 1,2	2	0	2	연극작품에 필요한 역할에 따른 수행 방식을 배우의 표현 매체인 신체를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연습한다	
1	1,2	전기	기초연기 1,2	2	0	2	처음으로 연기에 입문하는 과정이다.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의 재능을 개발, 극대화시키며, 직업적인 배우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소양, 즉 표현의 진실성을 갖추어 감을 목표로 한다. 무대, 방송, 장외행사(이벤트)등에서 요구되는 기초연기를 배움으로써 집중력, 긴장과 이완, 감각성, 순발력 등을 키움.	
1	1, 2	전기	전공실기 1~2	1	0	1	학습자의 전공실기 능력을 극대화 시켜 전문 연기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학습자와 담당교수와 1:1 학습지도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2	1, 2	계열	전공실기 3~4	1	0	1	학습자의 전공실기 능력을 극대화 시켜 전문 연기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학습자와 담당교수와 1:1 학습지도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2	1	계열	시나리오극 작	2	2	0	어떻게 극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시나리오로 변형해낼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과목. 한 가지의 주제가 극적으로 형상화되는 일련의 과정공부를 통해 극작과 연기/연출을 공부하는 원천을 제공한다.	
2	1	계열	연극작품연 구	2	2	0	동, 서양의 대표적 연극을 선별, 읽음으로써 연극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제작에 관하여 연구한다.	
2	1	계열	무대디자인 1	2	1	1	극장구조, 음향, 조명, 무대장치 등 무대의 테크니컬한 측면을 익히고 제작과정이나 리허설, 공연 중 무대감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2	2	전선	연극교육론 (문)	2	2	0	본 교과는 연극의 일반적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면서, 연극 제작을 교육과 연결시키는 교육적 개념과 방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2	계열	영화작품연구	2	2	0	영화 이론과 작품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현대영화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한다	
2	2	계열	무대장치 및 분장	2	1	1	극장 구조에 따른 무대 장치(무대 디자인, 조명, 음향 등)와 분장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과 사용법을 익히고 무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제반 사항을 습득한다.	
2	1,2	계열	발성법 1,2	2	1	1	연극 영화 캐릭터의 유기적인 표현을 위한 호흡, 소리, 언어, 신체 움직임을 훈련한다.	
2	1,2	전필	연극제작 1,2	3	1	2	희곡의 선정으로부터 무대형상화에 이르는 과정의 연극 제 요소들을 연구하고 실제 연극제작의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2	1,2	계열	전통예술 1,2	2	0	2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아름다운 표현을 창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하는 모든 활동. 즉 무용, 연기, 문화, 예술의 공연 등 예술적 활동을 실습한다.	
3	1	전필	뮤지컬제작 실기	3	0	3	연극의 모든 제반 요소들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기초이론을 실습할 기회를 갖는다.	
3	1	계열	보컬	2	0	2	뮤지컬연기를 위해 발성의 기본 구조부터 연습하고 실습하며 레슨을 통해 발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발성에 필요한 호흡법을 익히고 스케일 발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1	계열	작품연출	2	0	2	연극 예술의 총체적 지휘자로서 연극연출의 역할을 이해하고 연출기초 문법의 기술을 습득한다.	
3	1	전선	연극교수학습방법(문)	2	2	0	연극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가 학습자 연령대에 맞게 연극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극 교육 내용을 각 대상별 행동, 인지, 발달 및 동기적 측면에서 교수방법을 구분하여 준비한다.	
3	2	전필	코미디제작 실기	3	0	3	코미디가 기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홍보와 배급에 이르기까지 기획자와 제작자의 업무를 알아보고 산업적, 사회적인 측면의 기여도를 파악한다. 코미디 작가, 작품을 분석하고 개념을 이해한다.	
3	2	계열	공연분석과 평론	2	0	2	공연을 보고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접 공연을 보고 이를 적용하고, 공연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본다.	
3	2	계열	영상 콘텐츠 창작	2	0	2	멀티미디어 영상 분야의 다양화에 따른 콘텐츠의 구성과 작법, 연기, 촬영, 편집을 통해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분야에 적용하고 영상을 창조하는 방법을 익힌다.	
3	2	전선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문)	2	2	0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과로 연극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목표 방행설정하게 한다.	
3	1,2	계열	공연안무 1,2	2	0	2	기본적인 동작을 훈련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움직임 및 자유로운 몸짓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신체 훈련을 이어간다.	
3	1,2	계열	촬영 및 편집 1,2	2	0	2	촬영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촬영기술을 습득하여 카메라의 기술, 편집기술을 총해 영상 예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른다.	
3~4	1,2	계열	전공실기 5~8	1	0	1	학습자의 전공실기 능력을 극대화 시켜 전문 연기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학습자와 담당교수와 1:1 학습지도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4	1	전심	단편영화제작실기	3	0	3	시나리오 선택에서 영화 완성까지 단계적으 영화를 완성해 나아가는 실질적인 제작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4	1	계열	현대영화분 석세미나	3	0	3	현대 영화사에서 주요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적, 스타일적, 장르적 측면에서 비평 분석한다.	
4	1	계열	매체연기	2	0	2	카메라 매체를 통한 연기에 필요한 호흡과 발성 및 발음 훈련, 감각 훈련, 상상력 훈련, 표현력 훈련 등의 훈련과 카메라 매커니즘을 이해하며 연기하여 매체 연기를 배우고 익힌다.	
4	1	계열	미디어제작 실기	3	0	3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선정, 오디션, 연습진행에 이르는 미디어제작의 전 과정을 실제로 실습한다.	
4	1	계열	문화예술기 획	2	2	0	문화예술의 기획을 위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황의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과 이론과 함께 연구, 조사, 토론을 통해 창조적인 기획자의 자질을 연마한다.	
4	2	전심	장편영화제 작실기	3	0	3	연출, 대본, 음악 미술, 카메라, 연기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화예술을 창조하는지 기본체계를 익히고 실제 스마트폰 제작을 통해 실습한다.	
4	2	계열	공연워크샵	3	0	3	공연비평의 역학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연 이론의 다양한 개념을 실제 분석에 적용하여 각 공연의 가치, 미학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4	2	계열	졸업작품발 표	P	0	0	졸업대상 학생이 자신이 제작한 공연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공연제작 전반 포트폴리오 작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4	2	계열	오디션실기	3	0	3	졸업 후 다양한 오디션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개인의 표현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인작품을 준비, 실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2	계열	영상 포트폴리오 제작	2	1	1	학기중에 준비한 모든 영상 작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연구한다	

## 7. 실용음악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 열정에 찬 젊은이여, 세상을 노래하라!

음악을 창작, 분석, 감상 할 수 있는 예술적, 학술적 능력을 배양하고 사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참여도와 탐구력 배양, 전문 음악가이면서 음악교육지도자로서 자질과 지도력을 학습한다. 음악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생활에 일치 시킬 수 있는 능력 함양을 교육목표로 두고, 대중매체의 발달은 실용음악의 자리를 크게 부상시켰으며 사회문화예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실용음악전공에서는 대중음악과 JAZZ를 기본으로 다양한 교과과정과 실습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정신으로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음악인을 양성한다.

#### - 교육체계도

전공역량	1-1	1-2	2-1	2-2	3-1	3-2	4-1	4-2
대중음악의 창의적 표현 역량	전공실기1 음악기초 이론1 실용음악 개론	전공실기2 음악기초 이론2	전공실기3 실용음악 화성학1	전공실기4 실용음악 화성학2	전공실기5 리듬실기1	전공실기6 리듬실기2	전공실기7	전공실기8
	대중음악의 융합 역량	시창청음1 합주실기1	시창청음2 합주실기2	시창청음3 합주실기3	시창청음4 합주실기4		뮤직 비즈니스	실용 음악사
대중음악 밴드마스터 역량	리듬 클래스				양상블1	양상블2	스튜디오 양상블1	스튜디오 양상블2
	퍼포먼스 워크샵1	퍼포먼스 워크샵2	퍼포먼스 워크샵3	퍼포먼스 워크샵4	퍼포먼스 워크샵5	퍼포먼스 워크샵6	퍼포먼스 워크샵7	퍼포먼스 워크샵8
K-Pop의 글로벌 진출 역량	부전공1	부전공2	건반 테크닉1	건반 테크닉2	송라이팅1	송라이팅2		
					보컬 워크샵1	보컬 워크샵2		리듬연구
대중음악 현장 실무 비즈니스 역량					컴퓨터 음악1	컴퓨터 음악2	실용음악 작·편곡법 1	실용음악 작·편곡법 2
							음악기획 제작실습1	음악기획 제작실습2
문화예술 교육사		음악 교육론	음악교수 학습방법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2	1,2	계선	퍼포먼스워크샵1~4	1	0	1	각 전공별로 음악작품을 바르게 해석하고 표현함으로써 연주능력의 향상과 음악인으로 능력을 키운다.	
3,4	1,2	계선	퍼포먼스워크샵5~7	1	0	1	각 전공별로 음악작품을 바르게 해석하고 표현함으로써 연주능력의 향상과 음악인으로 능력을 키운다.	
1,2	1,2	계선	전공실기1~4	1	0	1	각 전공별로 개인지도 교육을 통하여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킨다.	
3,4	1,2	계선	전공실기5~8	2	0	2	각 전공별로 개인지도 교육을 통하여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킨다.	
1	1,2	계선	부전공1,2	1	1	1	전공실기와 관련된 다른 분야를 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키운다.	
2	1,2	전필	건반테크닉 1,2	1	1	1	전공실기와 관련된 다른 분야를 심화된 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키운다.	
1,2	1,2	계선	합주실기1~4	2	1	1	장르별 합주를 특성화시켜 장르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Rock과 Jazz, Pop/R&B, Fusion 장르의 연계성을 두어 학생들의 연주 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1	1	계선	실용음악개론	3	1	2	음악의 기초부터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음악적 교육을 통하여 대중음악 뮤지션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키운다.	
1	2	계선	음악기초이론2	3	3	0	음악이론의 기초적인 단계를 종합 심화적으로 다루어 음악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1,2	계선	실용음악화학1,2	3	3	0	화성의 생성과 구조, 기능을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 나아가 음악의 분석 능력 및 작곡에 이르기까지 확신 있는 음악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3	2	전필	인턴쉽 (대중음악 현장실습)	P	0	0	대중음악 관련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더욱 심도있게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이다.	
3	1,2	계선	리듬실기1,2	2	1	1	재즈, 팝, 라틴 등의 기본 리듬 패턴을 연구하고 실습하여 전공의 연주 능력을 향상시킨다.	
3	1,2	계선	앙상블1,2	3	1	2	각 악기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연주의 조화와 통일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그룹 위주로 함께 연주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또한 '록앙상블'과 '재즈앙상블' 등 성격이 다른 앙상블반을 함께 개설하여 학습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1,2	전필	컴퓨터음악 1,2	2	1	1	MIDI를 이용해 작, 편곡 및 연주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음악적 소프트웨어의 숙달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 및 실기를 훈련한다.	
3	1,2	계선	보컬워크샵 1,2	2	1	1	건강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합창, 보컬테크닉, 퍼포먼스 등 보컬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음악적 영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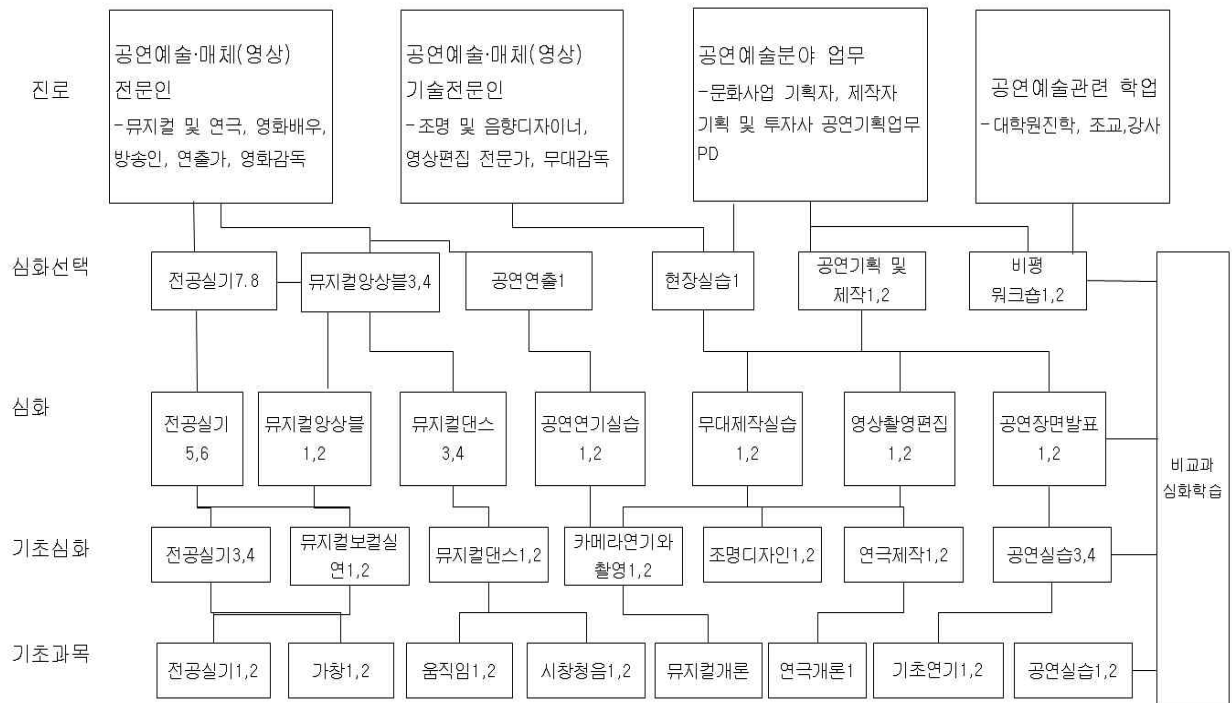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1,2	전필	송라이팅1, 2	2	2	0	광고음악, 방송음악, 각종 배경음악 및 대중음악 등 상업의 목적을 갖고 있는 노래 및 음악 등을 작곡하고 제작하는 수업이다.	
4	1,2	계선	뮤직랩1,2	2	1	1	전반적인 음악적 능력을 향상하고 함께 의논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수업이다.	
4	1,2	계선	실용음악 작편곡법1, 2	2	2	0	작곡을 마친 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곡의 스타일과 뉘앙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데 편곡법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과 사운드에 관하여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아울러 음악의 스타일별 특징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며 이를 통하여 각 스타일에 관한 편곡을 실습한다.	
4	1,2	전필	음악기획제 작 1,2	3	2	1	팀을 이루어 창작 음원을 제작 발표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 수업이다.	
4	1	계선	뮤직비지니스	2	2	0	음반제작 A&R, 음악마케팅, 플랫폼음악서비스, 음악 투자&유통, 음악저작권&뮤직퍼블리싱, 음반발매 쇼케이스 기획, 공연기획, 음반리뷰, 홍보 보도자료 쓰기 등의 과정을 통해 뮤직비즈니스 필수 이론을 학습하고 음악산업 현장실무를 익힐 수 있다.	
4	2	계선	즉흥연주기 법	2	1	1	다양한 음악 양식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 청음, 즉흥연주 등을 실습하고 다각적인 연주 기법을 연구 학습한다.	
4	2	계선	실용음악사	2	2	0	대중음악의 역사를 알아보고 시대별 각각의 스타일에 있어서의 대표곡들을 들어보며 그들의 음악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특징들에 관하여 연구, 토론한다. 전반적인 음악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음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업이다.	
4	2	전심	졸업공연	P	0	0	졸업공연에 대비한 개인의 졸업발표 준비를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토론하고 최종적으로 졸업공연과 이어지도록 한다.	
1,2	1,2	전기	시창청음 1,2	3	2	1	악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독보(獨步)력을 기르고, 선율과 화음을 듣고 바르게 기보(記譜)할 수 있게 하는 음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다.	
1,2	1,2	계선	시창청음 3,4	3	2	1	악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독보(獨步)력을 기르고, 선율과 화음을 듣고 바르게 기보(記譜)할 수 있게 하는 음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다.	
1	1	계선	음악기초이 론	2	1	1	음악이론의 기초적인 단계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음악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	2	전선	음악교육론	2	2	0	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근원, 미학적 관점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음악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고 음악지도의 목적설정과 내용선정, 방법선택에 관련된 폭넓은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2	1	전선	음악교수학 습방법	2	2	0	학습자의 수준 또는 연령대에 맞게 음악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기유발, 실기지도법 교재, 교구 활용 및 평가방법, 실제적 음악교육 지도 등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	2	전선	음악교육프 로그램개발	2	2	0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을 실행할 때 교육대상과 교육영역에 따른 효과적인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계획,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역량을 함양	

## 8. 공연예술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음악적 재능과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공연예술에 적합한 인성과 기능을 훈련시켜 뮤지컬배우를 양성한다. 현 극단에서 활동하는 현장교수진과 공연제작발표 및 현장 인턴쉽 공연교육을 통하여 노래, 춤, 연기에 대한 집중적 교육으로 교육과정부터 전문가를 양성하며, 하나의 뮤지컬을 기획, 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무 맞춤형교육의 일환으로 뮤지컬페스티벌에 참가 하고 기획사와 공동으로 창작뮤지컬을 공연하며, 졸업과 동시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이 가능하고 문화산업 기획자와 프로듀서, 방송배우 및 미국, 영국 등 해외와 국내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

#### - 교육체계도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2	계열	움직임 1,2	2	1	1	신체의 지각능력(움직임의 범위) 및 다양한 연기를 표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 동작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 상황의 연기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능을 향상시킨다	
1	1,2	계열	시창청음 1,2	2	1	1	악보의 독보능력과 아울러 음감, 리듬감의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을 기른다.	
1	1,2	계열	가창 1,2	2	1	1	유지컬을 위한 발성을 익히고 악보 읽는 법과 청음 능력을 키운 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훈련한다.	
1,2	1,2	계열	공연실습1~4	2	1	1	학과공연에 실무자로서 참여하여 공연현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1,2	1,2	계열	전공실기 1~4	1	0	1	유지컬의 중요 요소인 노래와 발성을 교수와 학생이 1대1 개인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실기 교육과정	
1	1	전선	연극개론	2	2	0	연극 전반의 형태 및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고, 연극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1	2	계열	유지컬개론	2	2	0	유지컬 전반의 형태 및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고, 유지컬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1	1,2	전필	기초연기 1,2	3	2	1	자신만의 호흡과 신체 각 부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기의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하면서 연기력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을 추구한다	
2	1,2	계열	유지컬보컬 실연 1,2	2	1	1	유지컬 노래에 맞는 발성 및 창법, 악보 해석력 등의 전문적인 과정의 학습을 통해 유지컬공연에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	
2	1,2	전필	연극제작 1,2	3	2	1	연극 작품을 선택하여 역할을 정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 연극공연예술 작품의 주요 장면을 분석하고, 필요한 무대장치와 세트를 준비하고 실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	
2	1,2	전선	조명디자인 1,2	2	1	1	공연에서 무대조명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이론수업과 극장 실습을 통해 구체화 한다.	
2	1,2	계열	카메라연기와 촬영 1,2	2	1	1	영상 배우로서 필요한 카메라 메카니즘을 습득하며, 앵글과 사이즈, 그리고 폴 샷 연기를 계산하는 법을 이해 및 실습하는 교과목.	
2,3	1,2	계열	유지컬댄스1~4	2	1	1	무용적 신체리듬을 통하여 안무를 이해하고 유지컬 연기에 맞는 동작을 분석하고 신체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무용적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1,2	계열	공연장면발 표 1,2	2	1	1	다양한 공연의 형식과 내용을 습득하게 하는 교과목으로써 직접 공연장면을 올려보는 수업.	
3	1,2	계열	공연연기실 습1,2	2	1	1	다양한 공연의 연기를 습득하게 하는 교과목으로써 직접 장면을 실습하는 수업.	
3	1,2	전선	영상촬영편 집1,2	2	1	1	디지털 방송시대에 영상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여 카메라의 기본원리 및 제작 기술을 이해하고, 실질적 편집 방법을 실습한다.	
3	1,2	전필	무대제작실 습1,2	2	1	1	다양한 공연작품 발표를 위한 무대를 제작실습하는 과목	
3,4	1,2	계열	뮤지컬양상 블1~4	2	1	1	뮤지컬 작품에 나오는 양상블에 대한 이해와 가창테크닉 습득	
3,4	1,2	계열	전공실기 5~8	1	0	1	뮤지컬의 중요 요소인 노래와 발성을 교수와 학생이 1대1 개인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실기 교육과정	
4	1	전심	졸업작품1	3	2	1	졸업작품발표를 위한 분석 및 제작 무대상연을 위한 준비학습	
4	1,2	계열	연출론1,2	2	1	1	공연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공연의 준비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의 연출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고 공연의 전반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기술을 배우는 예비 연출가 및 연기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4	1	계열	현장실습1	2	1	1	예술기관이나 단체, 또는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재단, 제작사나 기획사 등에서 다양한 현장 업무를 실습하는 교과목.	
4	1	계열	비평 워크숍1	2	1	1	다양한 비평방법론을 이해하고 다른 작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고 자기 생각을 생생하게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능력을 배양한다	
4	2	계열	졸업작품2	2	1	1	졸업작품발표를 위한 분석 및 제작 무대상연을 위한 준비학습	

## 9. 음악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음악학과는 피아노, 관현악 전공으로 나뉘며, 각각의 전공특성에 맞추어 최고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있다. 음악학과는 연주능력 향상을 위한 실기, 이론을 겸비한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과 다양한 진로 모색에 집중함으로써 음악을 하면 진로가 막연하다는 편견을 깨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를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교육체계도

주요진로	1-1	1-2	2-1	2-2	3-1	3-2	4-1	4-2
클래식 전문 연주자	전공실기1 음악 기초실습 1	전공실기2 음악 기초실습 2	전공실기3 음악 기초실습 3	전공실기4 음악 기초실습 4	전공실기5 실내악1	전공실기6 실내악2	전공실기7 실내악3	전공실기8 실내악4
	시창청음1 연주1 합창1	시창청음2 연주2 합창2	시창청음3 연주3 합창3	시창청음4 연주4 합창4	연주비평1 합창5	연주비평2 합창6	연주비평3 합창7	연주비평4 합창8
	피아노 합주1	피아노 합주2	피아노 합주3	피아노 합주4	피아노 반주실습1	피아노 반주실습2	음악경영1 피아노 반주실습3	음악경영2 피아노 반주실습4
	관현악 합주1	관현악 합주2	관현악 합주3	관현악 합주4	관현악 합주5	관현악 합주6	관현악 합주7	관현악 합주8
							공연 인턴십1	공연 인턴십2
기획사 및 큐레이터					예술융합1	예술융합2	취창업 이해와 실습	4차산업 혁명과 문화예술 트렌드
음악 평론가	화성학1	화성학2	화성학3	화성학4	서양 음악사1 음악문헌1	서양 음악사2 음악문헌2	음악비평	
문화 예술사		음악 교육론	음악교수 학습방법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2	1,2	전선	전공실기1~4	1	0	1	음악전공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중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과목이다. 1:1 개인지도를 통해 전공악기 연주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을 배운다. 뛰어난 실기능력의 개발을 위해 기초적인 음악해석 방법과 능력을 기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테크닉을 연마하고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을 연구하여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악과목에 우선하는 전공실기 수업을 통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3,4	1,2	전필	전공실기5~8	2	0	2	음악전공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중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과목이다. 1:1 개인지도를 통해 전공악기 연주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을 배운다. 뛰어난 실기능력의 개발을 위해 기초적인 음악해석 방법과 능력을 기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테크닉을 연마하고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을 연구하여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악과목에 우선하는 전공실기 수업을 통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1,2	1,2	전선	합창1~4	2	0	2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성부를 소리를 맞추어 부르는 제창과 다성악곡의 각 성부를 한 사람씩 맡아서 부르는 중창과, 여러성부로 나뉘어 함께부르는 합창을 경험한다. 또한,시대별악곡에따른합창의차이점과다양한문헌을 통한성부의차별성등다양한합창의경험으로전공자들을게진정한예술인으로성장할수있다.	
3,4	1,2	전필	합창5~8	1	0	1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성부를 소리를 맞추어 부르는 제창과 다성악곡의 각 성부를 한 사람씩 맡아서 부르는 중창과, 여러성부로 나뉘어 함께부르는 합창을 경험한다. 또한,시대별악곡에따른합창의차이점과다양한문헌을 통한성부의차별성등다양한합창의경험으로전공자들을게진정한예술인으로성장할수있다.	
1~4	1,2	전선	관현악합주 1~8	2	0	2	연주자로서 앙상블 경험은 독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음악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시도된 다양한 각 악기군 끼리의 합주로 악기별 특성과 아름다운 음색을 경험하고 악기 연주자로서 갖추어야 할 폭넓은 음악적 식견을 쌓는다. 정확한 음정과 음색조정, 음량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통해 다른 연주자를 배려하는 앙상블의 기본자세를 익히고 시대마다 다른 앙상블의 유행을 경험한다. 합주 1은 바로크 시대에 속한 작품을 다룬다.	
1,2	1,2	전선	연주1~4	P	0	0	음악역사 속에 존재한 다양한 작품과 연주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을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주회나 음반감상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다른 이들의 평가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비평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자를 포함한 제3자의 음악이나 연주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전선	화성학1	2	2	0	선율, 리듬과 함께 음악의 3대 요소를 구성하는 화성은 음악행위에 의해 우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학문이 바로 화성학이다. 바로크시대 통주저음의 등장 이후 조성음악 개념이 확립되어 선율을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화성음악이 서양음악의 중심이 된다. 본 교과목은 화성의 운용에 관한 이론을 여러 시기로 나누어 단계별로 학습한다.	
1	2	전선	화성학2	2	2	0	선율, 리듬과 함께 음악의 3대 요소를 구성하는 화성은 음악행위에 의해 우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학문이 바로 화성학이다. 화성학 I 에 이어지는 과목으로 고전과 낭만주의시대에 속하는 대표적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이 시대의 화성을 이해한다. 또한 수평적인 선율과 수직적인 화성의 명료한 진행을 이해하기 위해 부속화음, 부감7화음을 학습한다. 직접 작곡해 봄으로써 화성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응용하여 실제 작곡에 활용할 수 있다.	
2	1	전선	화성학3	2	2	0	선율, 리듬과 함께 음악의 3대 요소를 구성하는 화성은 음악행위에 의해 우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학문이 화성학이다. 중세/르네상스시대의 화성은 여러 성부 진행의 결과로 만들어졌지만 바로크시대 통주저음의 등장 이후 조성음악 개념이 확립되어 선율을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화성음악이 서양음악의 중심이 된다. 화성학 II 에 이어지는 과목으로 변성화음, 나폴리6화음, 중6화음 등을 학습한다. 이 시기에 속하는 대표적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자주 사용된 화성어법들을 이해한다.	
2	2	전선	화성학4	2	2	0	선율, 리듬과 함께 음악의 3대 요소를 구성하는 화성은 음악행위에 의해 우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학문이 화성학이다. 화성학 III 에 이어지는 과목으로 20세기 현대음악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근대화성들을 학습한다. 이 시기에 속하는 대표적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자주 사용된 화성어법들을 이해한다.	
3,4	1,2	전필	연주비평1 ~3	P	0	0	음악역사 속에 존재한 다양한 작품과 연주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을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주회나 음반강상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다른 이들의 평가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비평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자를 포함한 제3자의 음악이나 연주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	
3,4	1,2	전선	실내악1~4	2	0	2	악기연주자를 위한 앙상블 과목이다. 다양한 형태의 악기조합을 통해 독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실내앙상블 문헌 연주와 이를 통한 음악적 경험의 폭을 넓힌다. 지휘자가 없는 실내앙상블인 경우 연주자들이 음악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음악을 창조해 나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2중주, 또는 그 이상의 앙상블을 통해 둘 이상의 음정과 리듬, 음색을 파악하고 주선율과 대선율과 같이 다양한 진행을 파악하여 조화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분절법이나 구절법, 주법 등의 일치를 통해 앙상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는다. 여러 시대에 속한 다양한 실내악 문헌 연주를 통해 시대마다 다른 주법과 음악적 해석을 경험하고 연주 테크닉과 표현력을 연마하여 능력 있는 기악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다. I-IV는 음악적 난이도나 서로 다른 악기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1,2	전선	피아노반주 실습1,2	2	0	2	반주악기로서의 피아노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건반상에서의 자유로운 이조 및 전조, 선율에 다양한 반주음형을 붙일 수 있도록 학습한다.	
3	1	전선	서양음악사 1	3	3	0	음악가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음악의 역사이다. 오늘날의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연적인 영향을 끼친 과거의 음악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양음악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본 교과목은 서로 다른 음악특성으로 구분되는 여러 시대에 속한 작곡가들과 이들이 남긴 작품과 작곡기법, 다양한 음악의 종류와 연주방식, 이들이 탄생하게 된 시대 문화적 특징과 환경 등을 연구한다. 시대적, 음악적 변화와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음악가로 활동하는데 보다 확실한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음악사 1은 고대부터 17세기까지를 다룬다.	
3	2	전선	서양음악사 2	3	3	0	음악가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음악의 역사이다. 오늘날의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연적인 영향을 끼친 과거의 음악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양음악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본 교과목은 서로 다른 음악특성으로 구분되는 여러 시대에 속한 작곡가들과 이들이 남긴 작품과 작곡기법, 다양한 음악의 종류와 연주방식, 이들이 탄생하게 된 시대 문화적 특징과 환경 등을 연구한다. 시대적, 음악적 변화와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음악가로 활동하는데 보다 확실한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음악사2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를 다룬다.	
3	1,2	전선	음악문헌1, 2	2	2	0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음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당대의 어법 및 음악적 진화의 과정 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3	2	전선	악기론	2	2	0	여러 종류의 악기들의 음역, 음색, 구조적 특징 및 연주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여 이를 통해 작곡, 기악연주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1,2	전선	예술융합1, 2	2	0	2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에 관련한 문화, 예술분야의 직업들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음악분야에 융합된 교육을 받아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학습한다.	
4	1	전선	음악비평	3	3	0	음악사적 시대별 음악뿐만 아니라 악기별, 장르별, 같은 곡 다른 연주자의 음악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연주자의 자세와 매너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주를 보며 비평하고 글로 작성하는 법을 배운다.	
4	1,2	전선	음악경영1, 2	2	2	0	21세기는 빠른 정보와 원활한 소통 경영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음악 전공자들의 과다 배출로 취업과 창업의 길은 쉽지 않다. 이 과목은 학원, 기획사, 음악관련 사업 전반을 계획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인간심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음악 교육적 지식과 리더쉽, 마케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적 마인드를 넓힐 수 있다.	
4	1,2	전선	피아노반주 실습3,4	2	0	2	초견훈련과 피아노 파트 분석, 앙상블 실기 지도를 통해 반주를 실습하여 다른 연주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반주자로서의 역량을 갖춘다.	
4	1	전선	공연인턴쉽 1	2	2	0	공연기획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연 연습, 공연 당일, 공연 후의 모든 단계를 직접 실습해본다. 본 과목은 팀프로젝트로 진행하며 인턴십 과목이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4	1	전선	취,창업의 이해와실습	2	0	2	문화예술 취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으로 취업은 직업 리서치 방법, 이력서 •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요령 등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한다. 창업은사업자종류와특성,비즈니스모델기획,마케팅, SEEDMONEY조성을비롯한다양한창업지원사업에대 해연구한다.	
4	2	전선	4차산업 혁명과 문화예술트 렌드	2	0	2	4차 산업혁명에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인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해 살펴보고 실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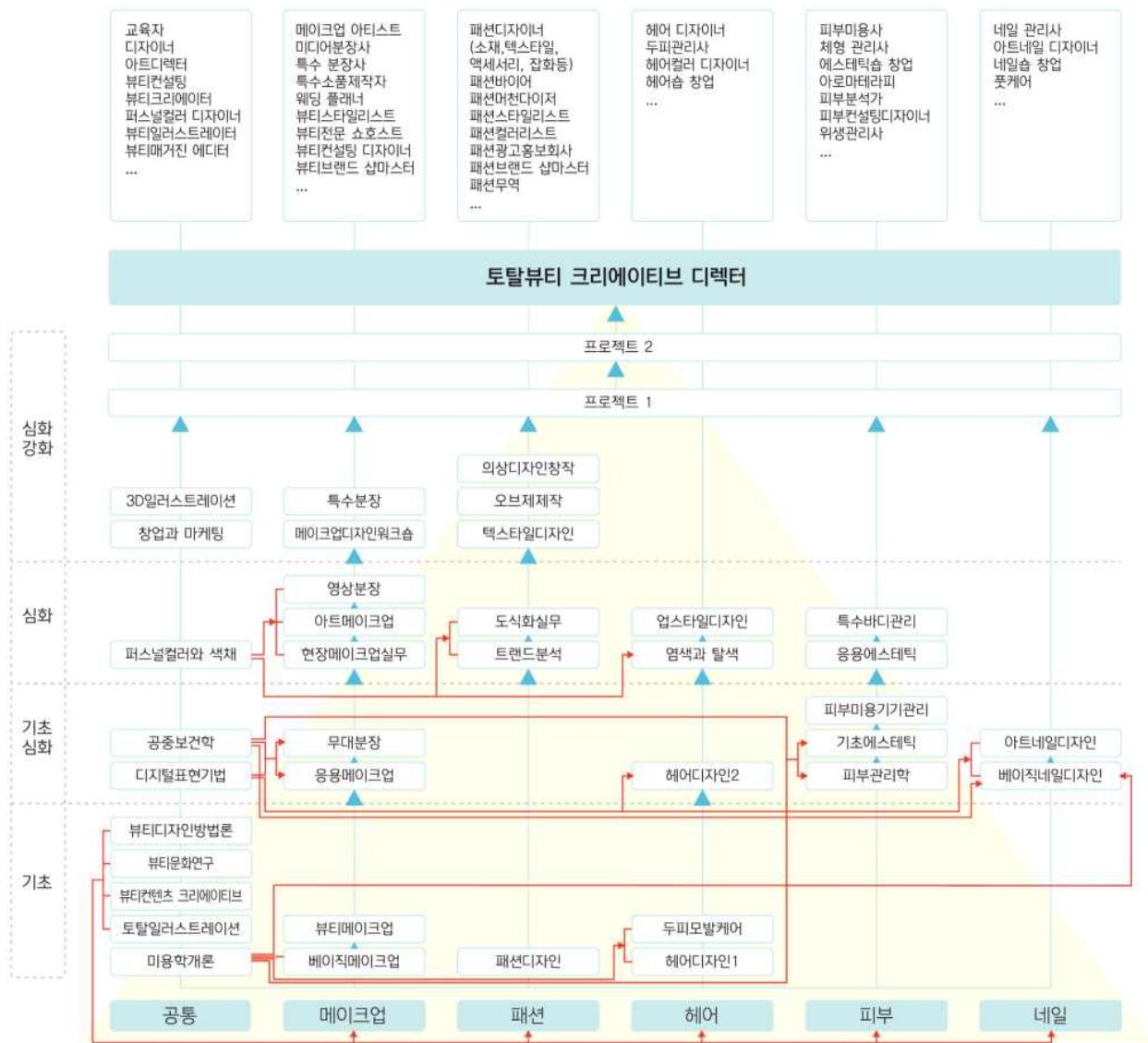
# 10. 뷰티디자인전공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뷰티산업분야의 전문가 양성. 트렌드분석, 디자인발상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실기학습을 통하여 전문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학습!

뷰티디자인전공은 메이크업, 헤어, 네일, 스킨케어, 분장 등 뷰티분야와 패션분야를 융합하는 디자인전공의 실용학문을 바탕으로 토탈뷰티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디자인 산업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예술 응용 능력을 지니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기초 및 심화실습과 이론수업을 바탕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진로탐색의 영역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 교육체계도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전기	미용학개론	3	1	2	디자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물에 대한 자료 수집, 관찰, 분석, 비교를 통하여 시각표현디자인을 종합평가 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증진을 위한 조형감각을 육성하여 표현기법확대를 꾀한다.디자인 제작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2차원적인 조형의 원리를 배우고 실습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1	1	전선	뷰티콘텐츠 크리에이티브	2	1	1	MCN의 등장으로 대형방송사가 아닌 개인을 비롯한 누구나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의 개막으로 미디어 산업에 혁신을 일으킨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교과를통해학생들스스로뷰티영상프로그램을기획하고제작및운영할수있는뷰티크리에이터로성장할수있도록제작과정에서전반적인내용을수업하고실제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도록한다.	
1	1	계선	베이직메이크업	3	1	2	메이크업의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 메이크업 기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고급 메이크업을 위한 기초테크닉에 대한 반복실습과 함께 자세교정, 제품 선택 및 사용법, 도구 활용법 등의 메이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기를 습득한다.	
1	1	계선	토탈일러스트레이션	3	1	2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 표현 기법을 학습하여 전공실기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인체의 표현, 다양한 재료의 사용, 표현기법, 디자인 발상 등의 실습을 통하여 감각적인 아이디어의 발상과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1	1	계선	패션디자인	3	1	2	패션디자인 이론을 통해 학습한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패션디자인 발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발상법을 습득하여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발상을 통한 패션디자인작업을 수행한다.	
1	2	전기	텍스타일디자인	3	1	2	디자인의 요소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인체의 원리를 통하여 제품과 디자인에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섬유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1	2	전선	두피모발케어	2	1	1	두피와 모발의 구조와 생리, 특징을 이해하여 건강한 두피모발케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2	계선	뷰티디자인 방법론	3	1	2	뷰티와 디자인을 융합하여 가장 이상적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 뷰티디자인 방법을 탐구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예술성을 함양한다.	
1	2	계선	뷰티메이크업	3	1	2	토탈코디네이션을 위한 메이크업의 응용실습 및 사례별 연출 실무를 습득하고, 얼굴의 질감과 안면분석을 통한 수정 테크닉, 다양한 패션 테마별 메이크업의 실습으로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 및 응용력을 기른다.	
1	2	계선	헤어디자인 1	3	1	2	다양한 헤어디자인을 위한 헤어 커팅기법과 드라이 방법을 학습하여 현장실무에 적합한 지식 및 테크닉을 습득한다.	
2	1	전필	피부관리학	3	1	2	파부관리학을 통하여 피부의 건강과 관리의 중요성 및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	1	계선	기초에스틱	2	1	1	퍼스널 스킨타입에 따른 재생관리 및 건강한 피부상태 유지를 위한 과정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	1	계선	디지털표현 기법	3	1	2	디지털의 표현기법으로 기본이 되는 공간, 인테리어의 기초(평면도,입면도,투시도)를 습득하고 이를 뷰티에 적용시켜 디자인에 대한 기초 습득하는데 중점을 둔다.	
2	1	계선	베이직네일 디자인	3	1	2	현대인들이 아름다움을 위한 인체예술과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네일에 대한 관심증가로 확대된 네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케어 및 아트에 관한 테크닉을 습득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1	계선	응용메이크업	3	1	2	갈수록 외적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메이크업 테크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 전문가가 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베이직 메이크업을 배운 학생들에게는 응용 메이크업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응용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상호실습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자 한다.	
2	2	전필	공중보건학	3	1	2	다양한 서비스분야와 비즈니스 및 뷰티 테라피스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과 공중보건 및 위생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직장에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높은 안전성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탐구한다.	
2	2	계선	피부미용기기관리	2	1	1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피부미용 기기의 사용법과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피부미용기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	2	계선	무대분장	3	1	2	뷰티메이크업과 분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골상을 기본으로 성격과 캐릭터창출의 창작과 개발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을 학습한다.	
2	2	계선	아트네일디자인	3	1	2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뷰티서비스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좀 더 높은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의 높은 수준에 기술들을 습득한다.	
2	2	계선	헤어디자인 2	3	1	2	다양한 헤어디자인을 위한 펌 기술을 학습하여 현장실무에 적합한 지식 및 테크닉을 습득한다.	
3	1	전필	퍼스널컬러와 색채	3	1	2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통해 실용성과 심미성을 기본으로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아름다운 배색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색채 조절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미적인 동시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예술적 감각을 키워본다.	
3	1	계선	염색과 탈색	2	1	1	다양한 헤어디자인을 위한 염색과 탈색 기법을 학습하여 현장실무에 적합한 지식 및 테크닉을 습득한다.	
3	1	계선	아트메이크업	3	1	1	다양한 소재와 창의적인 메이크업 디자인, 바디아트를 통하여 다양한 그림, 형태, 장식 등을 표현하여 여러가지 이미지를 창조하고, 작품효과를 높이는 기법을 습득한다.	
3	1	계선	응용에스테틱	3	1	2	피부관리의 다양한 테라피를 학습하고 실천 테라피의 테크닉과 지식을 습득한다.	
3	1	계선	현장메이크업실무	3	1	2	현장의 특수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메이크업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상호실습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자 한다.	
3	2	전필	트렌드분석	3	1	2	현대패션에 대한 고찰과 최신 패션경향을 분석하여, 모드와 패션트렌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패션 시장조사와 수집·분석을 통하여 컨셉에 따른 패션 유형을 알아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3	2	전선	도식화실무	2	1	1	패션실무산업용 작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의복 설계도면을 완성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3	2	계선	영상분장	3	1	1	미디어영상 분야에서 미디어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메이크업및 분장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디어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며, 캐릭터를 창의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2	계선	특수바디관리	3	1	2	현대에 와서 제 3의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병 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특수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과 폭넓은 기술을 습득하여 마사지테라피의 전문인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2	계선	업스타일디 자인	3	1	2	다양한 헤어디자인을 위한 세팅과 연출법, 업스타일 등의 기법을 학습하여 현장실무에 적합한 지식 및 테크닉을 습득한다.	
4	1	전심	뷰티문화연 구	3	2	1	서양문화의 메이크업 변천사와 다양한 시대의 뷰티문화를 탐구하고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1	계선	오브제제작	2	1	1	일반화된 예술 수법을 활용하여 자연의 물체나 기성품 또는 그 부분품을 감각적인 아이디어의 팔상과 디자인 학습을 통해 독립된 작품으로 제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메이크업, 헤어, 패션 분야에 활용하여 도탈 코디네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1	계선	프로젝트1	3	1	2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테마 설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료수집, 디자인, 작품제작, 발표단 계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졸업 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4	1	계선	의상디자인 창작	3	2	1	디자인프로세스에 따른 트랜드분석, 디자인발상부터 색상과 소재에 대한 지식 습득, 맵작업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디자인프로세스를 학습한다.	
4	1	계선	메이크업디 자인워크숍	3	1	2	졸업작품을 위한 메이크업 작품제작을 하며, 예술성과 창작성을 함양하여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2	전심	창업과 마케팅	3	1	2	뷰티 패션 분야의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기업가 마인드를 학습함으로써, 수강생이 기업가적 마인드와 자세를 갖추어, 기업가 정신과 마케팅 비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	2	계선	프로젝트 2	3	1	2	포트폴리오 제작과 평가를 통해 예술성과 심미성을 기르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디자인 능력과 프로세스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2	계선	특수분장	3	1	2	무대, 영상에 등장하는 특수한 캐릭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분장에 관한 이론 및 기법을 학습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캐릭터 연출이 가능하도록 아티스트의 예술성과 테크닉을 함양한다.	
4	2	계선	3D일러스트 레이션	3	1	2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메이크업 디자인의 이해와 메이크업 디자인의 실체를 학습함으로써 디지털 메이크업 디자인의 필요성에 따른 뷰티메이크업 및 캐릭터 메이크업 디자인 과정을 이해한다.	

# 11. 스포츠과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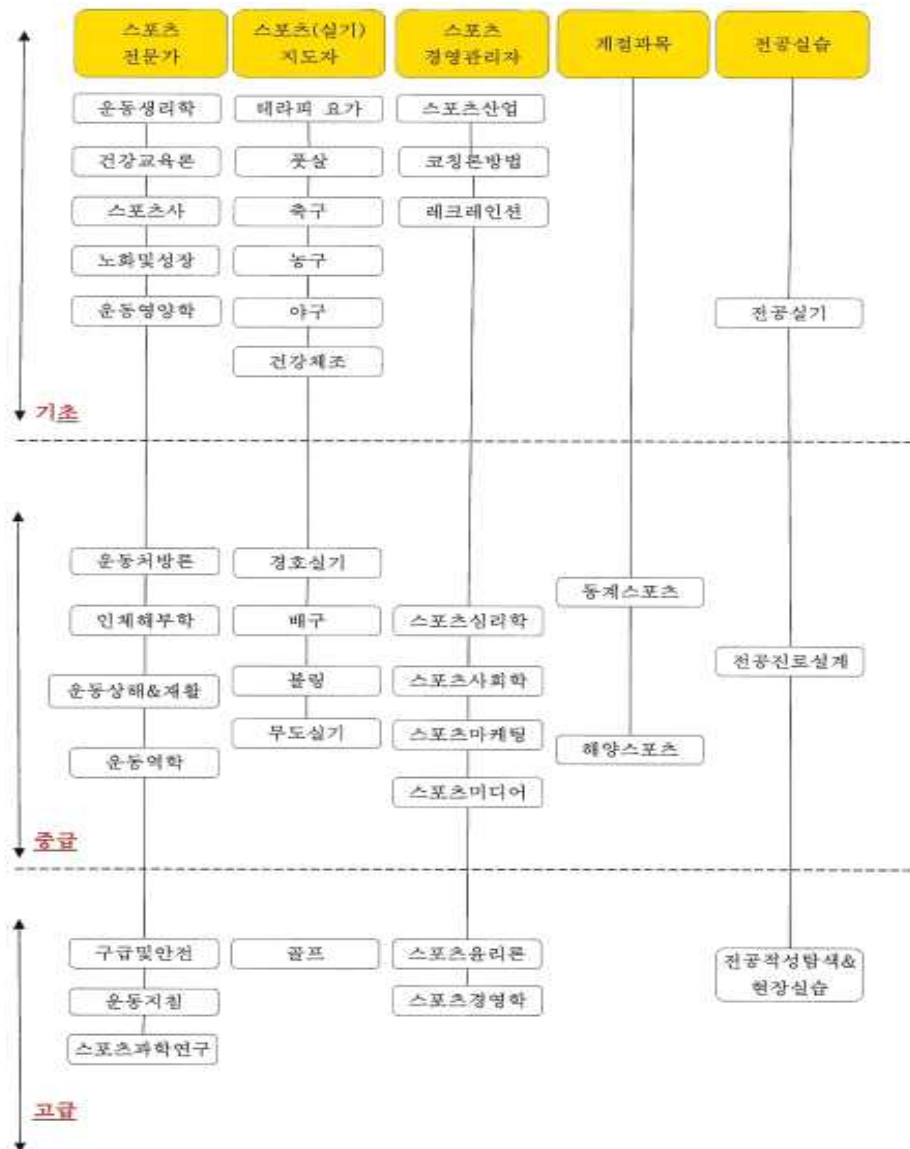
## ▶ 전공 교육목표 및 교육체계도

### 지(智) · 덕(德) · 체(體) 중심의 미래지향형 스포츠인재 양성

여가의 증대와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스포츠산업은 무한한 성장에 발맞춰 생활 스포츠 및 레저스포츠 인구증가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통해 스포츠 건강전문가, 스포츠 복지전문가 및 레저 스포츠지도자를 양성하여 국내 및 국제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인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도 스포츠를 통해 인성교육을 책임질 행동력과 책임감 있는 무도전문인, 경호 경비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 - 교육체계도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1	1	전기	경호실기1	3	0	3	경호를 위한 전문적인 실기 수련과 연습을 통해 무도 및 건강관리 전문인으로서의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신체활동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다.	
1	1	계선	해양스포츠 1	2	0	2	다양한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더불어 집단응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배양한다.	
1	1	계선	인체해부학	2	2	0	운동생리학 등 상위 학문의 학습을 위하여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배운다. 근·골격계통을 중심으로 심장·순환계, 호흡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 전반적인 계통에 대하여 학습한다.	
1	1	계선	전공진로설 계	2	2	0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적성분석을 통해 스포츠 및 무도현장인 도장이나 학교, 관련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정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제적 준비를 통해 스포츠 및 무도지도자로서의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1	1	계선	스포츠산업	2	2	0	스포츠 산업의 이론과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스포츠 산업시장의 현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스포츠 산업시장을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1	1	계선	골프1	2	0	2	생활스포츠로서의 골프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골프 입문자를 지도할 수 있는 레슨 방법을 습득한다.	
1	1	계선	배구	1	0	1	과격하지 않으며 남녀노소에 적합한 운동으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운동인 배구는 단체운동으로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종목이며, 배구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다.	
1	2	전기	경호실기2	3	0	3	경호를 위한 전문적인 실기 수련과 연습을 통해 무도 및 건강관리 전문인으로서의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신체활동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다.	
1	2	계선	동계스포츠 1	2	0	2	다양한 겨울 스포츠종목에 대한 기초 및 전문기술, 경기규칙, 심판법을 익히고 나아가 스포츠의 기초적 이론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도와 프로그램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	2	계선	레크리에이 션	2	2	0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프로그램과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관계형성프로그램 및 게임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습득한다.	
1	2	계선	건강교육론	2	2	0	개인의 건강과 체력의 유지, 증진의 목표에 따라 체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운동실시법, 즉 운동의 종류와 형식을 선택하여 그 질과 양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를 학습한다.	
1	2	계선	한국체육사	2	2	0	우리나라의 체육 및 스포츠 역사를 시대별로 소개하고, 각 시대와 문화에 따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 모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의 체육과 스포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도록 한다.	
1	2	계선	골프2	2	0	2	생활스포츠로서의 골프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골프 입문자를 지도할 수 있는 레슨 방법을 습득한다.	
1	2	계선	풋살	1	0	1	풋살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기는 보편성을 갖춘 스포츠이기에 이에 맞춰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며, 풋살의 전술과 전략 및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2	1	전필	해양스포츠 2	3	0	3	다양한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더불어 집단응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배양한다.	
2	1	계선	무도실기1	2	0	2	경호무도를 위한 기초 과정으로 다양한 무도 활동의 기초를 다지고 무도실기 능력을 심화시킨다.	
2	1	계선	운동역학	3	3	0	인간 움직임의 역학적 기본 원리를 기술, 분석, 예측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1	계선	체육지도자	2	2	0	생활 및 전문 체육까지 유능한 체육지도자를 위한 스포츠 분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격검정 대비 학습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2	1	계선	운동처방론 1	2	2	0	운동처방의 목적은 신체 활동을 습관적으로 하게 하도록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운동 처방은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신체 활동의 형태, 점진적 증진 등의 다섯 가지 필수 구성 요소들로 작성된다.	
2	1	계선	스포츠윤리 론	2	2	0	체육과 스포츠 및 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의 현상을 살펴보고 윤리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가능성을 탐구한다.	
2	2	전필	동계스포츠 2	3	0	3	다양한 겨울 스포츠종목에 대한 기초 및 전문기술, 경기규칙, 심판법을 익히고 나아가 스포츠의 기초적 이론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도와 프로그램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2	계선	무도실기2	2	0	2	경호무도를 위한 기초 과정으로 다양한 무도 활동의 기초를 다지고 무도실기 능력을 심화시킨다.	
2	22	계선	테라피 요가	2	0	2	신체활동시 발생하는 근육, 관절의 이상을 예방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테라피 방법을 다룬다.	
2	2	계선	구급 및 안전	2	2	0	다양한 뉴스포츠 및 야외 스포츠 종목을 경험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 및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2	계선	운동처방론 2	3	3	0	운동처방의 목적은 신체 활동을 습관적으로 하게 하도록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운동 처방은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신체 활동의 형태, 점진적 증진 등의 다섯 가지 필수 구성 요소들로 작성된다.	
2	2	계선	볼링	2	0	2	볼링은 단순하면서도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지적이며 정신적인 스포츠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대중 스포츠다. 따라서 볼링의 이론 및 기본동작과 경기규칙을 익힌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3	1	전필	해양스포츠 3	3	0	3	다양한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더불어 집단응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배양한다.	
3	1	전선	운동생리학 1	3	3	0	운동을 성립시키는 배경, 지배, 발현, 지속시키는 능력 및 운동의 영양 및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운동특성에 따른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하여 건강증진과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3	1	계선	운동상해 및 재활1	2	2	0	스포츠 활동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의 종류, 예방법, 응급처치법을 학습하고 운동을 통한 재활방법을 다룬다.	
3	1	계선	노인체육론	2	2	0	노인체육론을 통해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사회 및 경제 분야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노인 체육 전문가 양성 및 국가자격증 취득.	
3	1	계선	스포츠심리학	2	2	0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하고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으로서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스포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3	1	계선	축구	2	0	2	축구경기에서 기초 및 전문기술, 경기규칙, 심판법을 익히고 나아가 스포츠의 기초적 이론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도와 프로그램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2	전필	동계스포츠 3	3	0	3	다양한 겨울 스포츠종목에 대한 기초 및 전문기술, 경기규칙, 심판법을 익히고 나아가 스포츠의 기초적 이론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도와 프로그램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2	전선	운동생리학 2	3	3	0	운동을 성립시키는 배경, 지배, 발현, 지속시키는 능력 및 운동의 영양 및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운동특성에 따른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하여 건강증진과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3	2	계선	운동상해 및 재활2	2	2	0	스포츠 활동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의 종류, 예방법, 응급처치법을 학습하고 운동을 통한 재활방법을 다룬다.	
3	2	계선	운동지침	2	2	0		
3	2	계선	스포츠사회 학	2	2	0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하고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으로서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스포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3	2	계선	농구	2	0	2	과격하지 않으며 남녀노소에게 적당한 운동으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운동인 농구는 단체운동으로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종목이며, 농구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 수		교 과 목 해 설	비 고
					이론	실습		
4	1	전심	해양스포츠 4	3	0	3	다양한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더불어 집단응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배양한다.	
4	1	계선	스포츠마케 팅	2	2	0	스포츠·레저 사업은 단순한 경제원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다면적인 생활형태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적인 성장을 예측, 전망, 기획,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11	계선	스포츠교육 학	3	3	0	스포츠지도자에게 필요한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지도법, 스포츠 지도의 실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스포츠지도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기른다.	
4	1	계선	건강체조	2	0	2	건강체조는 기계 또는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신체 각 부위를 자유롭게 운동시키는 체조로 운동 전후에 실시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과 운동 특성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1	계선	야구	2	0	2	단체운동으로서의 야구의 기초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야구지식과 관련 기술인 포구, 송구, 타격, 주루, 수비 및 공격 기술 등을 습득한다.	
4	1	계선	스포츠경영 학	2	2	0	스포츠, 체육조직 또는 관련된 조직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교재에서 다루는 이론을 실제 스포츠 및 체육 현장에 접목시킨다.	
4	2	전심	동계스포츠 4	3	0	3	다양한 겨울 스포츠종목에 대한 기초 및 전문기술, 경기규칙, 심판법을 익히고 나아가 스포츠의 기초적 이론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도와 프로그램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4	2	계선	스포츠미디어 &실무	2	2	0	스포츠미디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직, 인사, 마케팅,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스포츠시설에 알맞은 운영기법과 각종 법령의 적용성을 높이고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4	2	계선	운동영양학	2	2	0	영양학에 기초를 두고 이를 스포츠 활동에 적용하도록 연구하며, 영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4	2	계선	스포츠과학 연구법	2	2	0	스포츠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포츠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연구설계 방법과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목적을 다룬다.	
4	2	계선	코칭론방법 및실제	3	2	1	우수 코치들의 리더십 특성과 유형, 코칭에서의 자질과 특성, 코칭 리더십 모델 지도자의 리더십과 심리기술 등을 다룬다.	



## 부속 . 부설기관

- 학생생활관
- 도서관
- 국제교류교육원
- 평생교육원
- 교수학습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사회봉사센터
- 학생상담센터
- 학생종합지원서비스센터
- 취업창업지원센터
- 원격교육지원센터





# 학 생 생 활 관

우리대학의 학생생활관은 양주캠퍼스에 2015년 3월 개관하여 100여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무인경비시스템과 냉난방 시스템, 세미나실, 세탁실, 각 실별 샤워실, 화장실 등이 갖춰진 최신식 생활관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학우들이 함께 생활하며 꿈과 열정을 나누고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키우는 요람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1. 관리체계

- ▶ 관 장 : 학생생활관 운영 총괄
- ▶ 팀 장 : 관생지도 및 운영에 관한사항 총괄
- ▶ 자치학생선발 및 운영 : 4명  
선발방법 :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혜택부여 : 장학금 지급  
주요업무 : 생활관 순찰 및 정리정돈

## 2. 규모 및 시설현황

- 가. 규모 : 연면적 2,014㎡(지하1층, 지상3층)
- 나. 시설 : 수용인원 100명(1실당 17.49㎡)
- 다. 관생실 : 50개실(2인 1실, 장애인 전용 1개실)
  - 샤워부스가 설치된 화장실 각 방에 배치, 개별 침대, 개별 옷장, 개별 책상 등
- 라. 휴게시설 : 휴게실, 세미나실 등
- 마. 편의시설 : 식당, 세탁실, 주차장, 정수기, CCTV, 지문인식 시스템 등

## 3. 주요행사

- 가. 오리엔테이션 : 매학기 초(3월, 9월)
  - 생활관 안내 및 구성원 소개, 생활관 안전 수칙, 화재예방 등
- 나. 생활관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2회 실시
  - 교육내용 : 생활관 시설 사용에 필요한 안전교육, 화재예방 및 대피교육
- 다. 우수호실(학생) 선정
  - 선정시기 : 2회 선정(6월초, 12월초)
  - 우수호실 학생 다음 학기 생활관 신청 시 우선 선발 및 호실 배정
  - 생활관 자치학생 선발 시 고려

## 4. 생활관 주요 일정(2022학년도 기준)

주요 내용	일정		비 고
	1학기	2학기	
접수기간	2021.11.15.~ 11.17.	2022. 06. 06.~ 06. 24.	재학생 기준
합격자 발표	2022. 01. 21.	2022. 08. 05.	
생활관 입사기간	2022. 02. 28.~ 03. 01.	2022. 08. 27.~ 08. 28.	
오리엔테이션	3월 초	9월 초	
생활관 퇴실	~ 06. 27.	~ 12. 27.	

# 도 서 관

## 1. 연혁

- 2000. 예원예술대학교 설립 / 창조관 도서관 발족
- 2001. 03. 예원예술대학교 도서관 개관
- 2012. 03.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 2013. 02. 도서관 전산시스템 도입
- 2013. 12. 지역주민 대상 도서관 개가제 운영
- 2014. 03.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도서관 개관
- 2015. 04. 임실·양주 통합형 전산시스템 도입

## 2. 현황

### 가. 시설

구분	위치	이용문의
전북희망캠퍼스 도서관	본교 디지털 정보관 1F	031-869-0574
전북희망캠퍼스 열람실 I	본교 디지털 정보관 1F	
전북희망캠퍼스 열람실 II	본교 창조관 508호	
경기드림캠퍼스 도서관	경기드림캠퍼스 예원관 204호	031-869-0574
경기드림캠퍼스 열람실	경기드림캠퍼스 예원관 205호	

### 나. 자료

구분		수량
전북희망캠퍼스 도서관	단행본	32,250 여권
	연속간행물	10 여종
	비도서자료	10 여점
경기드림캠퍼스 도서관	단행본	6,280 여권
	연속간행물	12 종
	비도서자료	100 여점
e-Book		1,045 권

## 3. 도서관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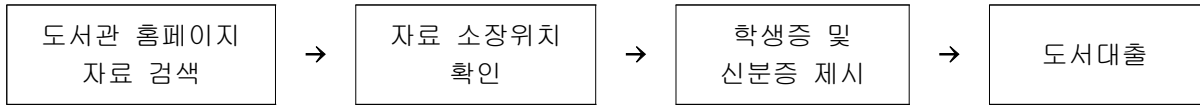
### 가. 이용시간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비고
전북희망캠퍼스 도서관	9:00 - 18:00	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전북희망캠퍼스 열람실 I, II	9:00 - 22:00	9:00 - 18:00	
경기드림캠퍼스 도서관	9:00 - 18:00	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드림캠퍼스 열람실	9:00 - 22:00	9:00 - 18:00	

※ 방학기간 중에는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이용방법

1) 대출방법



※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특수자료 및 비도서자료 대출 불가

2) 대출권수 및 기간

구분	일반도서	e-Book
학부생	3책 14일	3책 14일
대학원생	10책 30일	
전임교원	20책 60일	
강사, 조교	10책 30일	
직원	10책 30일	
지역주민	3책 14일	

3) 반납 및 대출기간 연장

-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된다. (단, 60일 이상 장기연체자 : 6개월 정지)
- 대출자료는 반납예정일 이전에 1회 7일 대출기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예약자가 없을 시)

4) 도서예약

- 대출을 희망하는 자료가 대출중일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 1인당 예약권수 : 2권
  - 1책당 예약인수 : 3명
  - 도착한 예약도서 보유기간 : 3일

5) 분실자료 변상

- 열람 및 대출 중에 훼손·분실도서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일한 자료로 배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사자료 변상 또는 도서정가의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교육원

## 1. 연혁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비고
2002.08	중국 심양대학교	교육교류협약서	
2005.07	중국산동사범대학 외국어학원장	쌍방 학생교류	
2006년	무석강남대학교 외 1개교	교육교류협약	
2007년	중국 면양예술대학교 외 7개교	교육교류협약	
2007년	중국 강소성 교육청 외 2개 교육청	자매결연 및 교육협력 협약	
2008.01	필리핀세부대학교	우호협력, 이해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협정 학생교환	
2008.04	중국 빈주직업대학교외 2개교	우호교류 합작 의향서	
2008.04	청도시 소프트웨어 단지	한중 IT산업 발전과 국제 교류시장 활성화	
2008.04	몽골 국립 다르항 기술전문대학교 외 5개교	우호교류 합작 의향서	
2013.09	미국 SALISBURY 주립대학교	자매결연 및 교육협력 협약	
2014.11	일본 국제언어학원 외국어학교	자매결연 및 교육협력 협약	
2015.01	캄보디아 앙코르대학교	자매결연 및 교육협력 협약	
2015.01	중국 서안 과학기술대학교	자매결연 및 교육협력 협약	
2017.11	베트남 화빈대학교	교육교류협약	
2018.03	중국 남경예술대학교	교육교류협약	
2018.03	베트남 하이증관광예술전문대학	교육교류협약	
2018.04	베트남 국립건설전문대학	교육교류협약	
2018.05	베트남 탕롱전문대학	교육교류협약	
2018.12	몽골 CITI대학교	교육교류협약	
2018.12	몽골 다르항대학교	교육교류협약	
2019.02	베트남 백화전문대학	교육교류협약	

## 2. 목표

- 해외 우수한 대학과 기관 그리고, 예술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상호 호혜 평등 원칙 아래 학술교류, 공연연주 교류, 학생교류, 언어교육, 해외역사 문화체험교류, 해외어학연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술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화를 추구하여 공연, 전시, 기획에 폭넓은 문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예술문화 교육산업에서 최고가 되도록

록 최선을 다해 앞으로 세계 속의 당당한 예원예술대학교가 될 것이다.

### 3. 교육과정

초급반(Level 1)	중급반((Level 2)	고급반((Leve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어휘 수(500~1100개)</li> <li>0 한국어 자음 모음</li> <li>0 기본 한국어 어순</li> <li>0 간단한 일상회화 (예절, 교통, 음식, 물건구매 등)</li> <li>0 일상회화를 통한 어휘량 증가</li> <li>0 발음 교정</li> <li>0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2급 취득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어휘 수(1600~2000개)</li> <li>0 고급 어법 및 어휘를 활용한 작문</li> <li>0 장문 읽기(신문) 및 이해</li> <li>0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li> <li>0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4급 취득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어휘 수(3000~5000개)</li> <li>0 신문, 뉴스, 라디오 청취</li> <li>0 고급 회화능력 갖추기</li> <li>0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이해 및 토론</li> <li>0 본과 수업시 필요한 수업 용어 익히기</li> <li>0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6급 취득가능</li> </ul>

# 평생교육원

## 1. 설립목적

- 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
- 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열린교육 실현
- 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
- 라. 일반 교육수요자 대상 교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 공간 활용도 향상

## 2. 연혁

- 2006. 03.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 2006. 03. 프로그램 개설(창의력논리수학지도사, 골프, 목조건축기사반 등)
- 2007. 08. 학점은행제 학습과목평가 인정(사회복지전공)
- 2007. 08. 웃음치료사 과정 개설
- 2007. 11.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7. 12. 임실군지역혁신협의회 위탁 지역혁신 프로그램 운영
- 2007. 12. 중국어 회화반 신설
- 2007. 12. 평생교육원 웃음치료사반 자원봉사단 운영
- 2008. 03. 제2대 최낙관 원장 취임
- 2008. 03. 사단법인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가입
- 2008.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웃음치료사, 문화재수리기술자, 한자한문 등)
- 2008.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6개 과목 운영
- 2008. 09. 2학기 일반과정 개설(웃음치료사, 목조건축기술, 한자한문 등)
- 2008. 09.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7개 과목 운영
- 2009.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긴장해소 발표력 향상기법, 애니어 그램 등)
- 2008. 09.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7개 과목 운영
- 2009.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긴장해소 발표력 향상기법, 애니어 그램 등)
- 2009.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6개 과목 운영
- 2009.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 판소리, 스피치지도사, 웃음치료사 등)
- 2009. 08.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7개 과목 운영
- 2009. 11. 평가학습과목 사회복지조사론 과목 승인
- 2010.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7개 과목 운영
- 2010.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수채화, 판소리과정 등)
- 2010. 09.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8개 과목 운영
- 2010. 09. 2학기 일반과정 개설(미술심리지도사, 웃음치료사, 스피치지도사 등)
- 2011.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운영
- 2011.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가족상담사, 아동상담사, 응급처치기법 등)
- 2011. 08.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운영
- 2011.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가족상담사., 미술심리지도사. 오행울림 성명학 등)
- 2011. 12. 평가학습과목 가족생활교육 외 15과목 승인
- 2012. 01. 제3대 조인석 원장 취임
- 2012. 03. 1학기 학점은행제 건강가정사 과정 및 사회복지과정 운영
- 2012.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스마트 스피치, 미술심리지도사, 수채화 과정 등)
- 2012.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육임입문과정, 스피치 고급반, 가족상담사 등)
- 2012. 08.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운영
- 2013. 01. 제4대 김성남 원장 취임
- 2013.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운영
- 2013.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힐링매직, 웃음치료사, 스마트 스피치 지도사반 등)
- 2013. 08.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운영

- 2013.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미술심리지도사, 가족상담사, 스피치 지도사반 등)
- 2013. 12. 평가학습과목 체육학개론 외 10과목 승인(체육학전공신설)
- 2014.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체육학 운영
- 2014.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수채화 과정, 긴장해소 스마트 스피치반 등)
- 2014. 08. 2학기 학점은행제 및 사활고지 및 아동학 운영
- 2014.08. 일반과정 개설(유화창작구상, 긴장해소 감성 스피치 등)
- 2014. 11. 제5대 편성진 원장 취임
- 2015.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운영
- 2015.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학교 성폭력 예방 효, 인성지도사, 플루트, 시낭송 등)
- 2015. 08.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운영
- 2015.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 인성지도사, 플루트, 시낭송 등)
- 2016. 01 평가학습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외 9과목 승인
- 2016.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운영
- 2016.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 효, 인성지도사, 힐링포엠 시낭송 등)
- 2016. 08.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운영
- 2016.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 효, 인성지도사, 힐링포엠 시낭송 등)
- 2017.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운영
- 2017. 03. 1학기 일반과정 개설( 국악전문가, 플루트 인명예술 등)
- 2017. 08. 2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및 아동학 운영
- 2017.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 가야금, 서예과정 민요전문가 등)
- 2018. 03.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운영
- 2018. 08. 2학기 일반과정 개설(카페창업, 드론교육과정 등)

### 3. 교육과정

#### 가. 일반과정

구 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수업구분	지원자격
예술교육과정	힐링미술	15주	주	일반성인
	캘리그래피 문인화	15주	주/야	일반성인
	플루트	15주	주/야	일반성인
	카페창업 과정	15주	주	일반성인
자격증전문양성과정	드론교육과정	5주	주/야	일반성인

#### 나. 학위취득과정

구 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수업구분	지원자격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론	15주	주/야	고졸이상 성인
	가족상담 및 치료	15주		
	가족생활교육	15주		
	노인복지론	15주		
	사회복지법제	15주		
	사회복지실천론	15주		
	사회복지현장실습	15주		
	아동복지론	15주		
	장애인복지론	15주		
	청소년복지론	15주		





## 학생자치단체

- 총학생회
- 동아리



## 총학생회

예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는 전체 재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학술 및 예술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운영 규정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총학생회 구성은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율적인 학생활동의 신장과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 운영은 학생회칙에 따른다.

## 학생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예원예술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통해 창조적 비판능력을 함양하고, 진리탐구를 통하여 사회의 총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한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존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본회의 기구)** 본회는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졸업 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장 학생총회

**제7조(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능)** 학생총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학생총회는 회칙개정 및 회원에 관련된 중대 사항을 의결한다.

③ 학생총회는 학생 정·부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9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나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5일이내에 소집하며 학생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 의장이 3일이내에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2007.09.01>

③ 임시총회 소집은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본회 총회의 소집기준은 회원 5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학생회

#### 제1절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11조(지휘)**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집행위원장이 된다.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 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보장)**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와 대의원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는다.

**제13조(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년 학기초부터 다음 년도 차기 학생회 발대식 전까지로 한다.

**제14조(기능)** 학생회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2. 집행부 각 부·차장을 임명하고 대의원회에 통보한다.
3. 본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집행부 각 부·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명할 수 있다.
5.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이유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7. 학생회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8.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9. 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추천한다.

## 제2절 집행부

**제15조(지휘)**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6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각부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선출)** 14조 2호에 의거하여 선출한다.<개정2012.12.21>

**제18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학생회 일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학생회 일체의 사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각 부서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각부산하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5. 집행위원회는 제반사업의 집행을 위해 기획, 총무, 홍보, 문화, 예술, 체육 섭외부 등의 부서를 둔다.

## 제4장 대의원회

**제19조(지휘)**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0조(구성)** 대의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의원회는 각 학과, 학년들이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1인씩이 대의원이 된다.
2. 전년도 구성된 사무국 인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집행위원회의 임원 및 학회장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의장)**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2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개정의 심의 및 의결권
2. 학생회비 심의 확정권
3. 학생회비의 예산안 및 결산서의 심의 및 의결권
4. 운영위원회에 대한 출석 요구권
5. 집행부 임원에 대한 해임 의결권
6.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7. 정·부학생회장의 선출 및 탄핵권
8. 각 자치기구 감사권 및 감사결과 비리 발견시 학교 당국에 그 책임자의 징계 건의권

**제23조(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5·9·11월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의 경우 긴급을 요할 때 의장의 임의로 소집 할 수 있다.

④ 대의원 총회의 소집은 5일전에 공고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의결)** 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제22조 2·6·7·8호는 출석대의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개정2012.12.21>

③ 제21조 1·3·4·5항은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지휘)**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정·부회장, 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교지편집위원장, 졸업준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안을 심의 조정하며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2.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간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제6장 동아리 연합회

**제28조(지휘)**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 동아리의 대표기구이다.

**제29조(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30조(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제31조(기능)** 동아리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 자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등록사무를 담당한다.
2. 각 동아리가 주관하는 행사를 심의 조정 한다.
3. 각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32조(등록)** 신규로 동아리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등록은 신규등록과 재등록으로 구분하며 매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해당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이념에 찬성하는 10명 이상의 재학생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07.09.01>
3. 회원구성은 2개 전공 이상의 재학생을 회원으로 1개 전공 2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07.09.01>
4. 각 동아리는 지도교수(전임이상) 1인이상을 선정하여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여학생회

**제33조(지휘)** 여학생회는 본교 여학생회의 대표기구이다.

**제34조(구성)** 여학생회는 본교 전 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35조(회장)** 여학생 회장은 본교 여학생이 선출하며 회장은 여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가 된다.

**제36조(기능)** 여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학생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각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37조(회칙) 기타 세부사항은 여학생회 회칙에 따로 정한다.

## 제8장 졸업준비위원회

제38조(목적) 졸업준비위원회는 대학생활의 보람과 추억을 보존하고 졸업 예정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9조(구성) 졸업준비 위원회는 각 학과 4학년 대표로 구성한다.

제4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졸업준비 위원장은 졸업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학과 대표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된다.

③ 졸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1조(기능) 졸업준비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② 졸업준비위원회는 각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42조(재정) 졸업준비위원회의 재정은 졸업회비로 하고 졸업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3조(회칙) 기타 세부사항은 졸업준비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제9장 교지편집위원회

제44조(목적)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 발간 및 대학언론 활동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유와 창의적인 문화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5조(구성) 교지편집위원회는 본회 회원 중 응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위원장) ①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교지편집위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된다.

②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없다.

③ 교지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안건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 출석 발언한다.

제47조(기능) ①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 편집 제작 및 이에 관련되는 제반 학생 언론문화 활동을 담당한다.

② 각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48조(회칙) 기타 세부 사항은 교지편집 위원회의 회칙에 따로 정한다.

## 제10장 선거

제49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50조(선거권) 선거권 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51조(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자에 한 한다.

② 각 급 임원으로서 등록일전에 그 직을 사임한자.

### 1. 학생 정·부회장

가.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개정2007.09.01>

나. 형사처벌 및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회원 50명이상 추천을 받은 자<개정2007.09.01>

### 2. 여학생 회장

가.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나. 여학생 20명이상 추천을 받은 자<개정2007.09.01>

### 3. 대의원 의장

가.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나.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4. 동아리연합회장

가.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5이상인 자

나. 동아리연합회에 2회이상 등록 활동하고 징계 사실이 없는 각 동아리 대표자로서 이 대표들이 선출한다.

5. 졸업준비위원장

가. 차기년도 4학년이 될 각 학과 대표들 중에서 각 학과 대표들이 선출한 자

6. 교지편집위원장

가. 4학기 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나. 편집위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단, 위 항 2·3·4·5·6 부회장 및 부의장은 회장과 의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52조(피선거권의 제한)** 모든 선거 관리 위원은 당해 연도 피선거권이 없다.

**제53조(선거방법)** ① 51조 1항은 공동 입후보하며 2·3·4·5·6단일후보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학생정·부회장 5일 이내 다른 자치기구장은 3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모든 자치기구장은 정·부제로 한다.

**제54조(선거시기)** ① 학생정·부회장 및 여학생회 선거는 임기 년도 11월중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임기개시 일 전까지 선임자의 보조 기능을 갖는다.

② 기타 각 자치기구의 선거시기는 각 자치기구 회칙에 따로 정한다.

**제55조(구성)** 선거관리 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임원진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의장이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

**제56조(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학생정·부회장 및 여학생회 각 자치기구장의 모든 선거를 주관하며, 선거 제반의 업무를 관할한다.

**제57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 3분의2이상이 관리하고, 학교 관계자 승인 하에 교내 신문방송국 기자를 입석 시킬 수 있다.

**제58조(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투·개표장에 2인씩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59조(무효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는 사용하지 않은 것
2. 선관위의 직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식외의 표식이 있는 것
4. 기표선상 1/3이상 침해한 것

**제60조(이의신청)**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24시간이내에 당해년도 선관위에 게 재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 의결로 그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61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때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해야 한다.

**제62조(보궐선거)** ① 본 회의 각급 정부회장이 모두가 사임 및 탄핵 등으로 인하여 본 회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50일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대의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이내에 각 학과 학년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잔임 기간이 150일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을 두고 학교측에서 승인한다.

④ 각 자치기구장이 권위 또는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세부사항은 각 자치기구 회칙에 따로 정한다.

## 제11장 회칙개정

**제63조(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본회회원 100명이상 학생회장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개정2007.09.01>

**제64조(의결)** 본회100인이상이 발의할 때는 본회회원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7.09.01>

**제65조(공고)** 의결된 개정안은 7일이내에 대의원 의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학생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 회칙의 규정을 받는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학생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학생 회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학생 회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학생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 아 리

예원예술대학교 동아리는 학술, 문예, 종교, 봉사, 취미, 스포츠 분야 등을 활동 범위로 하여 동아리 본연의 임무에 맞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예원예술대학교 동아리

NO	동아리명	지도교수	활동내용	유형	지역
1	GEM	소현정	창업관련 주얼리 디자인과 상품개발 및 판매 마케팅	창업	경기드림 캠퍼스
2	예원 이팩트	홍혜정	공연활동	전공	
3	YPG	강효순	영상제작, 편집	취미	
4	YUBS	신윤정	음악방송, 학교교내방송	취미	
5	CCC	김재명	종교활동(기독교)	종교	
6	스매싱	오현택	배드민턴	취미	
7	닥터한지	송미령	상품디자인	창업	전북희망 캠퍼스
8	무풍회	정용우	무예연마 및 시범공연	취미/시범공연	
9	커피조리사	최병창	커피 추출과 제조 실습 및 바리스타 자격증 대비 교육	전공	
10	아트예원	최희연	축구	운동	
11	nohsaf	한순영	상품제작/행사참여	취미	
12	뷰티엔젤스	최정순	뷰티/패션봉사	봉사	

## 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아리연합회"라 한다)에 속하는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범위)** 모든 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에 속하고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3조(등록요건)**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은 1학기 초 등록기간 내 2개 전공이상 10인 이상(각 전공 2인 이상)의 서명날인으로 반드시 본회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07.09.01>
2. 대학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해당학기 활동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신규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 유사 동아리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
5. 구비서류를 필히 제출한다.(단체등록서, 대표자 서약서, 사진, 지도교수 동의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단, 회원명단, 회칙, 연혁)

**제4조(등록절차 및 승인)** 동아리 등록(신규, 재등록 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연합회장 명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시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대표학생 서약서(소정양식)
3. 대표학생 카드(소정양식)
4. 지도교수 동의서
5. 연중사업 계획서
6. 연혁 및 소개
7. 회원명단
8. 동아리 회칙

**제6조(임원선출)**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동아리 회칙에 따른다.

②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임원명단을 총학생회를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동아리단체로부터 추대 받아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4>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의 단체 지도교수를 겸 할 수 없다. 다만, 향우회, 동문회 중 1개만 겸직이 가능하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의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지원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10일 이내에 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취임승락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지원처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동아리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지정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의 예산은 학생회비의 예산 편성 내역에 책정되어야 한다.

**제9조(활동범위)**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학술·문예·종교·봉사·취미·스포츠 분야로 한다.

③ 모든 활동은 지도교수가 승인한 활동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④ 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은 최소한 행사집행일 1주일 전에 행사원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행사는 종료 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 보고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모든 동아리는 학생들의 면학과 학교 행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동아리실 관리)** ① 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실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음주, 취침 행위를 금지한다.

③ 동아리실 사용시간은 09:00 ~ 21:00로 한다. 단, 21시 이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동아리실에서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취소한다.

**제11조(간행물 발간허가 신청)** 순수학술 이외의 간행물은 일체 발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위배된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3. 회칙 및 학칙을 위반한 경우
4. 동아실의 관리상대가 불량하고 본 준칙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5. 지도교수 사임 후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6.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제13조(비품관리)** ① 동아리실에 비치된 비품을 손·망실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회장이 변경될 경우는 총학생회장의 입회 하에 업무 및 비품에 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비품은 동아리회장이 관리하며 손망실된 비품은 그 동아리에서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본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1)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록

- 졸업생일람
- 학칙 및 학사규정
- 교조.교화.교목
- 캠퍼스배치도
- 교가





## 졸업생일람

학사학위과정

졸업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학과(전공)																					
한지·조형디자인전공	-	-	-	-	-	-	-	-	18	22	19	21	23	25	15	14	12	8	1		178
회화전공	-	-	-	-	26	26	30	23	1	-	-	-	-	-	-	-	-	-	-	-	106
서양화전공	-	-	8	18	-	-	-	-	-	-	-	-	-	-	-	-	-	-	-	-	26
한국화전공	-	-	6	6	-	-	-	-	-	-	-	-	-	-	-	-	-	-	-	-	12
조형미술학과	9	5	-	-	-	-	-	-	-	-	-	-	-	-	-	-	-	-	-	-	14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	-	-	-	13	20	17	10	24	24	36	24	31	30	25	23	19	6			302
귀금속조형디자인전공	-	-	5	3	-	-	-	-	-	-	-	-	-	-	-	-	-	-	-	-	8
만화게임영상학과	-	-	-	-	-	-	-	-	-	-	-	-	-	52	40	41	33	20	24		210
게임애니메이션전공	-	-	-	2	2	3	9	16	18	22	17	28	28	2	-	-	-	-	-	-	147
만화애니메이션전공	-	-	-	11	17	11	20	15	24	18	24	27	19	-	-	-	-	-	-	-	186
만화영상학과(전공)	6	4	10	-	-	-	-	-	-	-	-	-	-	-	-	-	-	-	-	-	20
연극영화코미디전공	-	-	-	-	-	-	-	-	10	10	5	6	13	22	11	10					87
코미디(연극영화)전공	-	-	-	-	-	-	-	4	1	-	-	-	-	-	-	-	-	-	-	-	5
코미디전공	-	-	4	4	7	3	11	2	-	-	-	-	-	-	-	-	-	-	-	-	31
코미디연기학과	4	2	1	-	-	-	-	-	-	-	-	-	-	-	-	-	-	-	-	-	7
실용음악학과(전공)	-	-	-	-	7	19	22	14	21	34	36	33	32	19	20	21	2	7	20		307
뮤지컬전공	-	-	-	-	-	-	-	-	-	-	5	5	8	13	11	10	17	12			81
음악학과	21	15	1	-	-	10	4	-	1	-	-	9	9	8	15	16	16	12	9		146
관현악과(전공)	-	-	5	4	1	-	-	-	-	-	-	-	-	-	-	-	-	-	-	-	10
관악전공	-	-	-	-	3	-	-	-	-	-	-	-	-	-	-	-	-	-	-	-	3
현악전공	-	-	-	-	1	-	-	-	-	-	-	-	-	-	-	-	-	-	-	-	1
성악전공	-	-	1	1	-	1	1	-	-	-	-	-	-	-	-	-	-	-	-	-	4
피아노전공	-	-	3	11	5	-	-	-	-	-	-	-	-	-	-	-	-	-	-	-	19
무용복지전공	-	-	-	-	-	-	-	-	13	11	9	7	-	-	-	-	-	-	-	-	40
무용학과(전공)	8	10	10	10	7	12	12	11	-	-	1	-	14	7	5	11	5	2			125
생활체육학과	-	-	-	-	-	-	-	-	-	-	-	-	-	14	12	13	10	9	15		73
스포츠레저복지전공	-	-	-	-	-	-	1	17	19	26	15	13	29	1	-	-	-	-	-	-	121
레저스포츠전공	-	-	-	-	-	16	17	-	-	-	-	-	-	-	-	-	-	-	-	-	33
스포츠레저학과(전공)	5	9	12	11	23	-	-	-	-	-	-	-	-	-	-	-	-	-	-	-	60
문화관광경영학과(전공) /글로벌호텔관광경영학과	-	-	-	-	-	-	1	8	9	14	14	19	6	6	8	5	8	3	1		102
예술경영학과(전공)	11	5	11	15	10	17	18	-	-	-	-	-	-	-	-	-	-	-	-	-	87
한국어IT전공	-	-	-	-	-	-	-	-	6	4	-	-	-	-	-	-	-	-	-	-	10
문화재보존학과	-	-	-	-	10	7	2	8	-	1	-	7	4	2	3	-	4	1			49
문화재학과	-	-	-	-	4	-	-	-	4	4	2	2	-	-	-	-	-	-	-	-	16
문화재관리학과	6	3	-	-	-	-	-	-	-	-	-	-	-	-	-	-	-	-	-	-	9
전자상거래전공	-	-	2	4	1	1	-	-	-	-	-	-	-	-	-	-	-	-	-	-	8
멀티미디어전공	-	-	-	-	5	-	-	-	-	-	-	-	-	-	-	-	-	-	-	-	5
세라믹아트전공	-	-	4	-	-	-	-	-	-	-	-	-	-	-	-	-	-	-	-	-	4
시각정보디자인학과(전공)	5	1	2	-	-	-	-	-	-	-	-	-	-	-	-	-	-	-	-	-	8
문화상품디자인전공	-	-	-	6	1	-	1	-	-	-	-	-	-	-	-	-	-	-	-	-	8
산업공예디자인학과	6	5	-	-	-	-	-	-	-	-	-	-	-	-	-	-	-	-	-	-	11
산업예술복지학과	-	-	-	-	-	-	27	26	-	-	-	-	-	-	-	-	-	-	-	-	53
문화산업예술학과	-	-	-	-	-	-	-	20	-	-	-	-	-	-	-	-	-	-	-	-	20
스포츠무도복지학과	-	-	-	-	-	-	-	14	40	14	29	-	-	-	-	-	-	-	-	-	97
스포츠학과	-	-	-	-	-	-	-	-	-	-	-	15	-	-	-	-	-	-	-	-	15
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	-	-	-	-	-	-	-	-	-	-	-	-	-	9	-	-	-	-	-	-	9
예술치료학과	-	-	-	-	-	-	-	50	-	-	-	-	-	-	-	-	-	-	-	-	50
예술평생교육학과	-	-	-	-	-	-	-	22	-	-	-	-	-	-	-	-	-	-	-	-	22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	-	-	-	-	-	-	-	-	15	-	-	-	-	-	-	-	-	-	-	-	15
미술조형학과	-	-	-	-	-	-	-	-	-	-	-	-	-	-	-	5	8	9	7		29
시각디자인학과	-	-	-	-	-	-	-	-	-	-	-	-	-	-	-	9	13	12	15		49
애니메이션학과	-	-	-	-	-	-	-	-	-	-	-	-	-	-	-	3	11	14	26		54
경호무도학과	-	-	-	-	-	-	-	-	-	-	-	-	-	-	-	2	5	11	12		30
뷰티패션디자인학과	-	-	-	-	-	-	-	-	-	-	-	-	-	-	-	-	11	16	19		46
연극영화학과	-	-	-	-	-	-	-	-	-	-	-	-	-	-	-	-	20	10	16		46
공연예술뮤지컬학과	-	-	-	-	-	-	-	-	-	-	-	-	-	-	-	-	-	-	-	11	11
금속조형디자인학과	-	-	-	-	-	-	-	-	-	-	-	-	-	-	-	-	-	-	-	24	24
한지공간조형디자인학과	-	-	-	-	-	-	-	-	-	-	-	-	-	-	-	-	-	-	-	11	11
합계	81	59	85	106	143	146	193	260	224	204	212	216	216	210	165	183	194	152	211		3,280



□ 석사학위과정

졸업연도 대학원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문 화 예 술 대 학 원	11	13	8	15	15	15	23	21	15	13	38	18	61	55	90	188	159	758
문화영상창업대학원	-	8	8	18	19	21	34	22	19	12	1	3	1	1	-	1	-	168
사 회 복 지 대 학 원	-	-	-	-	27	55	24	23	25	17	17	16	12	12	8	7	9	252
<b>합 계</b>	11	21	16	33	61	91	81	66	59	42	56	37	74	68	98	196	168	1,178

# 학칙 및 학사규정

- 학칙 -----
-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 대학원학칙 -----
- 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 사회복지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의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운영규정-----
- 장학금지급규정-----
- 학생준칙-----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학생단체 등록·운영에 관한 규정-----
- 학력증명서 발급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

#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정 2000.03.01

최근개정 2018.04.1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국민정서와 함께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분야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전인적 인간양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14><개정 2004.10.8>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 자질과 품격을 도야하며 특히 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개발 연마하여 우리의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 공헌할 전문 예술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편제)** ① 전북희망캠퍼스에 교양학부, 미술조형디자인학부(융합조형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애니메이션&웹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전공), 스포츠경호무도학과를 두고 경기드림캠퍼스에 미술조형디자인학부(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를 둔다.<개정 2006.6.5><개정 2007.5.16><개정 2008.9.1><개정 2009.6.1><개정 2012.2.1><개정 2012.2.1><개정 2012.7.1><개정 2014.3.1><개정 2014.3.31><개정 2015.5.27><개정 2016.2.25><개정 2016.5.27><개정 2017.5.10><개정 2018.4.18><개정 2019.4.23><개정 2020.4.10><개정 2021.4.23>

② 본교에 특수대학원으로 문화예술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을 둔다.<조신설 2004.10.8><개정 2007.9.17><개정 2017.5.10>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표개정 2004.4.19><표개정 2004.7.16><표개정 2004.10.8><표개정 2005.7.1><표개정 2006.6.5><표개정 2007.5.16><표개정 2008.2.25><표개정 2008.9.1><표개정 2009.6.1><표개정 2010.6.3><표개정 2011.6.1><표개정 2012.2.1><표개정 2012.7.1><표개정 2014.3.1><표개정 2014.3.31><표개정 2015.5.27><표개정 2016.2.25><표개정 2016.5.27><표개정 2018.4.18><표개정 2019.4.23><표개정 2020.4.10><표개정 2021.4.23>

**제3조의3(입학정원의 예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3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조신설 2008.9.1>

## 제2장 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4>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항신설 2013.12.4>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항신설 2013.12.4>

##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 학기)**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로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①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②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5조의2(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조신설 2012.7.1>

**제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감축 할 수 있다.

**제7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9.1>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5월 17일)
3.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② 비상재해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제1항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을 과할 수 있다.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전부(과)

**제8조(입학시기)** 신입학·재입학·편입학 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1 선 이내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10조(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및 수험료는 과오납 수험료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만한 서류
3. 기타 학교가 지정한 서류

**제11조(지원자격 실효)** 지원자가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예정기일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와 지원자격에 결격사항이 발견된 자는 그 지원이 실효 된다.

**제12조(입학전형)** 제1학년 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그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2. 실기고사 성적
3. 면접고사 성적
4.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3조(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지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고, 기타 수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4조(보증인)** <삭제>

**제15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대학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해당학년(2학기 편입학자는 해당학년 직전학기)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이어야 한다.

③ 편입학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사편입은 제3학년 입학정원의 10%이내에 한하여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② 학사 경고 또는 유급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전부(과))** ① 학부(과)를 옮기는 것을 전부(과)라 한다.

② 전부(과)는 2학년 및 3학년, 4학년 학기 초에 한하며, 전부(과)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5.10>

③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 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1.4.20>

- ④ 전부(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⑤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장 휴학·복학·퇴학·제적

**제18조(휴학)** ① 휴학은 학기초로부터 4분의 1선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③ 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2.3.>
- ④ 군입대 및 임신, 출산, 육아 휴학기간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4>
- ⑤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3.1.>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4분의1선 이내로 한다.

**제2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초로부터 4분의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때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때
3. 신고 없이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상 결석한 때
4. 타교에 입학한 때
5.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때
7. 본인 사망<신설 2021.2.3.>

## 제6장 등록·교과·수업·학점 및 졸업

**제21조의2(등록)** ① 본교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서 완료된다.

**제22조(교과과정)** ① 본교의 교과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으로 하며 교양과정은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과정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09.01>  
<개정 2012.02.27.><개정 2014.08.25.><개정 2019.02.28.>

- ② 교과과정의 편성 운영 및 학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복수전공)** ① 복수전공 이수승인을 받은 자로서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하며, 복수전공 이수신청 시기는 2학년으로 한다.<개정 2003.9.30>

-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부전공)** ① 재학 중 전공이외의 특정전공의 교과목을 부전공 필수포함 21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부전공으로 인정한다.<신설 2003.9.30>

-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점)** 교과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기·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시간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학점의 인정)** ① 각 과목별 학업성적이 D급 이상일 때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 ②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 이수한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한다.

③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은 16~17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19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개정 2008.9.1>  
② 승인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9.1>

1. 1학년 수료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6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97학점 이상

**제27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성학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9.1>

②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의 조기졸업은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로 한다.<신설 2003.9.30><개정 2008.9.1>

**제28조(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별도로 심사하여 인정하고, 본교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28조의2(특별학점인정)** ① 제1학년에 한하여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실습수업은 국내현장실습수업과 해외 현장실습수업으로 구분하며, 본 현장실습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총 3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8.9.1>

**제29조(국내·외 대학간 교류학점)** 총장은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교과이수 및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류학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기당 17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교류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제목변경 및 개정 2008.9.1>

**제29조의2(군복무중 학점취득)** ① 병역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학생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정규학기 온라인 수업을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학기당 3학점, 연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군 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8.9.1>

**제29조의3(예비대학생의 학점인정)** 입학 전형에 합격한 예비 신·편입생은 입학 전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 대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예비대학 교육과정의 개설과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8.9.1>

**제30조(수업시간표)**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1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입시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표시하고, D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한다.

등 급	실 점	평 점
A+	95 - 100	4.50
A	90 - 94	4.00
B+	85 - 89	3.50
B	80 - 84	3.00
C+	75 - 79	2.50
C	70 - 74	2.00
D+	65 - 69	1.50
D	60 - 64	1.00
F	0 - 59	0.00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및 협동생활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성적을 평가한다.

③ 낙제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반드시 재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 과목인 때에는 타 교과목으로 재 이수할 수 있다.

**제33조(출석)** 한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다만, 질병, 학기 중 취업학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17>

**제34조(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 학기말의 평균평점이 D(1.0)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 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제35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기간 중복 또는 공적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학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0>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승인 없이 수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개정 2021.4.20>

③ 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16학점이상 취득한자는 최대 신청학점을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자는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에 3학점을 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제37조(졸업)** ① 이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의 규정을 충족한 자로서 각각 전공부문의 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단,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증에 제1전공 및 제2, 3전공을 병기하여 수여한다.<개정 2003.9.30><표개정 2004.7.16><표개정 2004.10.8><표개정 2005.7.1><표개정 2006.6.5><표개정 2008.2.25><표개정 2008.9.1><표개정 2009.6.1.><서식개정 2009.6.1><표개정 2012.2.1><표개정 2015.5.27><표개정 2016.5.27.><표개정 2018.4.18.><표개정 2019.04.23.><표개정 2020.04.10.><개정 2021.2.3.><표개정 2021.4.23.>

② 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③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신설 2003.9.30>

**제37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①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교류협정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국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우리대학교와 해당 외국대학교의 공동명의로 학사학위를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조신설 2008.9.1>

**제37조의3(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총장은 2년 범위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04.23.>

② <삭제 2019.04.23.>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4.3.1.><개정 2019.04.23.>

- 제38조(졸업연주·졸업작품·졸업논문)** ① 졸업연주·졸업작품·졸업논문의 발표시기는 졸업 예정학기로 한다.  
② 졸업연주 또는 졸업작품, 졸업논문은 당해 학부(과)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 후 2회에 한하여 다시 발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9조(졸업의 취소)** 제24조 제2항, 제3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7장 포상 및 징계

- 40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 제41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4. 성폭력(폭행, 추행, 희롱 등)을 행한 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제42조(학사징계)** ①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D(1.0)에 미달한 자 또는 3과목이상 F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 자는 학사 제적된다.

## 제8장 학생활동

- 제43조(총학생회)** ① 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4조(학생단체 등의 지도)** 학생단체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45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표가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 제46조(학생집회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4.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 제47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48조(학생생활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9장 납입금

- 제49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은 매 학년도말 이전에 연액으로 정하여 1, 2학기 등록기간 전에 나누어 고지한다.



**제50조(휴학 및 복학자의 납입금)** 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납입금을 면제하되, 복학 시에는 복학 당해 학기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당시의 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8.9.1>

**제51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와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반환한다.

②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표개정 2004.10.8.><표개정 2011.02.11.><표개정 2021.2.3.>

사 유 발 생 시 기	반 환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까지	납입금 전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10장 장학금

**제52조(장학금)** ① 학업성적, 품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장 외국인학생,시간제등록생,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은행제)등록생

<개정 2016.5.27>

**제53조(위탁생)** <삭제>

**제54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할 지원자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을 거쳐 입학정원외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으로서 각 학부(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55조(외국인 특별생의 편입)**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학력을 검정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제목변경 및 개정 2008.9.1>

**제56조(외교관 자녀)** <삭제>

**제56조의2(시간제등록생, 평가인정학습과정등록생)** 일반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5.27>

**제56조의3(선발시기)** 선발시기는 매학기 초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로 한다.

**제56조의4(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대학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의5(선발인원 및 방법)** ①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정규학생의 입학정원 내로 한다.<개정 2009.1.6><개정 2009.12.01><개정 2011.02.11><개정 2011.08.05>

②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졸업증명서,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9.1.6><개정 2009.12.1>

**제56조의6(등록 및 수강신청)** ① 시간제등록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신청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 이내로 하며, 신청교과목은 당해 학기 전일제 학생 개설 교과목 중에서 한다. 단, 여러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한 경우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6>

**제56조의7(학점인정)** 본교 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인정된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단, 본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학점인정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8(학점취득)** ① 학위수여를 위하여 필요한 취득학점은 총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최저 8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는 본교 전일제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부(과)별 최저 이수 요구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의9(학위수여)** ① 본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초 4주 이내에 학사학위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신청서를 제출한 시간제등록생에게는 졸업사정을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6조의10(수업)** ①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운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온라인 수업비율은 평생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며 교육과정은 각 학부의 교과과정을 따른다.<조신설 2009.1.6><개정 2009.12.01.><개정 2016.5.27>

③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 과정 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5.27.>

④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5.27.>

**제56조의11(출석 및 수업관리)**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출석 및 수업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조신설 2016.5.27.>

1.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평생교육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의12(성적평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성적평가는 학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세부 운영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3(학적관리 등)** ①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관리 자료를 영구 보존한다.

②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 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4(상담창구의 운영)**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한다.<조신설 2016.5.27.>

## 제12장 공개강좌

**제57조(공개강좌)** ① 본교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기능을 연마케 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기,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장 직제 및 재임용<재임용추가 2005.7.1>

**제58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의2(재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7.1>

## 제14장 교수회 및 각종위원회

**제59조(교수회)** ① 본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배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3.12.4>

③ 교수회의는 통상으로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직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0조(교수회의 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사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0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 법인정관 제19조의3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교무위원회)** ① 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 실장, 원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제반규정의 제정과 폐기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졸업 등 학사운영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의 부의 안건 중 중요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3.1>

**제62조(각종위원회)** ① 본교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의2(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9.6.1>

## 제15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63조(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의 직제는 제58조에 따른다.<개정 2003.9.30.><개정 2006.6.5.><개정 2007.3.1.><개정 2011.02.11.><개정 2012.06.11.><개정 2014.12.01>

② 전항 부속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의2(학교기업)** ① 본교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원예술대학교 학교기업(이하“학교기업”이라 한다)을 두며,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는 [별표 3]과 같다.<표개정 2009.1.6><표개정 2009.6.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학기당 인정 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이 외의 사항은 본교 학생현장실습 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해서는 예원예술대학

교 장학금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기준은 학교기업 세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04.7.2>

- 제64조(부설기관)** ① 부설기관의 직제는 제58조에 따른다.<신설 2011.2.11.><개정 2014.12.01>  
②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6장 계약학과<제정 2008.2.25>

**제64조의2(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4조의3(정원)** ①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1]과 같다.<표개정 2008.9.01.><표개정 2009.1.6.><표개정 2009.12.1.><표개정 2011.2.11.><표개정 2012.12.21.><표개정 2014.3.1>

② 제64조의4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 당해 학년 총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의4(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4조의5(교과목 이수 인정)**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의6(납입금)** 제64조의4 제1항 1호 및 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5.27.>

**제64조의7(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다.

**제64조의8(운영기간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17장 장애학생의 지원 등<제정 2011.04.01>

**제64조의9(장애학생의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7장 장애학생의 지원 등<제정 2011.04.01>

**제64조의9(장애학생의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은 따로 정한다.

**제18장 학칙개정<장 변경 2008.2.25, 2011.4.01>**

**제65조(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입안하여 기획조정팀에 제출하고 기획조정팀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정리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본 대학교의 규정심의 위원회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0 7.3.1> <개정 2014.3.31><개정 2014.12.1>

**제66조(개정 학칙의 보고)** <조 폐지 2014.3.31>

부 칙(2000. 3. 1 설립학칙)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6 교학11502-288)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① 2000학년도 및 2001학년도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00학년 및 2001학년도)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통합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전공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종 전 재 적 학 과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 공
조 형 미 술 학 과	미 술 학 부	하 서 아 동 공 양 미 화 활
산 업 공 예 디 자 인 학 과	디 자 인 학 부	시 각 정 보 디 자 인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구 문 속 조 하 트 디 자 인
만 화 예 술 학 과	만 화 영 상 학 부	만 화 영 상
음 악 학 과	음 악 학 부	피 성 작 곡 아 현 노 악 관 (클래식기타, 색소폰, 타악포함)
스 포 츠 레 저 학 과	스 포 츠 레 저 학 부	스 포 츠 레 저
한 국 무 용 학 과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미 디 연 기 학 과		극 미 용
예 술 경 영 학 과	정 보 · 경 영 학 부	예 전 자 술 상 경 거 영 래
문 화 재 관 리 학 과	문 화 재 학 부	문 화 재 보 존

부 칙(2002. 9. 16 교무11502-621)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①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부(과)를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부(과)에서 변경된 통합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전공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 부	전 공	학 부(과)	전 공
미 술 학 부	한 국 화 서 양 미 술 아 동 미 술	미 술· 디 자 인 학 부	한 국 화 서 양 미 술 시 각 정 보 디 자 인 인 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인 문 화 상 품 디 자 인
디 자 인 학 부	시 각 정 보 디 자 인 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세 라 믹 아 트 디 자 인		
만 화 영 상 학 부	만 화 영 상	만 화·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음 악 학 부	피 성 아 노 악 작 관 현 곡 악 (클래식기타, 색소폰, 타악포함)	음 악 학 부	피 성 아 노 악 관 현 곡 악 (클래식기타, 색소폰, 타악포함)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미 용 디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미 용 디
정 보· 경 영 학 부	예 술 경 영 전 자 상 거 영 래	정 보· 경 영 학 부	예 술 경 영 전 자 상 거 영 래
스 포 츠 레 저 학 부	스 포 츠 레 저	스 포 츠 레 저 학 과	
문 화 재 학 부	문 화 재 보 존	문 화 재 학 과	

부 칙(2002. 10. 19 교무11502-703)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25 교무11502-309)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① 2003학년도 입학자는 종전의 재적학부(과) 및 전공을 적용받는다.  
 ② 2000학년도, 2001학년도 입학자 중 한국무용학과 재적자는 무용학과 재적자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적자는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재적자로, 만화예술학과 재적자는 만화영상학과 재적자로 본다.  
 ③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과)통합, 전공명칭 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 통합된 학부(과) 또는 변경된 전공으로 복학한다.  
 ④ 시각정보디자인, 전자상거래전공의 휴학생 중 해당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전공인 멀티미디어 디자인전공에 복학할 수 있으며, 전공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 부	전 공	학 부(과)	전 공
미 술· 디 자 인 학 부	한 국 화 서 양 미 술 시 각 정 보 디 자 인 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문 화 상 품 디 자 인	미 술· 디 자 인 학 부	회 화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문 화 상 품 디 자 인
만 화·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만 화·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멀 티 미 디 어 디 자 인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 부	전 공	학 부(과)	전 공
음 악 학 부	피 아 노 악 성 관 현 악 (클래식기타, 색소폰, 타악포함)	음 악 학 부	피 아 노 악 성 관 현 악 (색소폰, 유포늄, 타악포함) 클 래 식 기 타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미 용 디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실 용 미 음 용 디 악
정 보 · 경 영 학 부	예 술 경 영	예 술 경 영 · 문 화 재 학 부	예 술 경 영
문 화 재 학 과	자 상 거 래		문 화 재 보 존
스 포 츠 레 저 학 과		스 포 츠 레 저 학 과	

부 칙(2003. 9. 30 교무11502- 491)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03년 7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7. 2 교무353)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9 교무245, 2004. 7. 16 교무38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통합, 변경 및 신설)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를 통합, 변경 및 신설한다.

1. 미술·디자인학부와 음악학부를 통합한 예술·디자인학부를 신설한다.
2. 공연예술학부를 방송공연학부로 변경한다.
3. 스포츠레저학과를 스포츠레저학부로 한다.

제3조(전공 폐지, 신설,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폐지, 신설, 소속변경 및 학부에 전공을 두고 시행한다.

1. 예술·디자인학부에 회화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무용전공, 음악전공을 둔다.
2. 만화·게임영상학부에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을 둔다.
3. 방송공연학부에 코미디전공, 실용음악전공, 방송디지털콘텐츠전공을 둔다.
4. 스포츠레저학부에 레저스포츠전공, 전통무예전공을 둔다.
5.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성악유지컬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 클래식기타전공은 예술·디자인학부 음악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6.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을 예술·디자인학부 무용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7. 미술·디자인학부 문화상품디자인전공을 폐지한다.
8. 만화·게임영상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을 폐지한다.

제4조(학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미술·디자인학부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미술·디자인학부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디자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미술·디자인학부 문화상품디자인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미술·디자인학부 문화상품디자인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음악학부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음악학부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

디자인학부 음악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 만화·게임영상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만화·게임영상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화·게임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게임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⑤ 공연예술학부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공연예술학부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공연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⑥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디자인학부 무용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⑦ 스포츠레저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레저학과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0. 8 교무542)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당시 2004학년도 예술경영·문화재학부 모집단위가 예술경영학과, 문화재보존학과로 분리·신설됨에 따라 예술경영·문화재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예술경영학과, 문화재보존학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학과배정을 받지 않은 복학 또는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예술경영학과와 문화재보존학과 중에서 학생의 선택에 의해 학과를 배정한다.

부 칙(2005. 7. 1 교무35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학부변경) 내지 4조(학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영상그래픽 전공신설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 변경)예술·디자인학부를 미술·디자인학부로, 방송공연학부를 공연·음악학부로 변경한다.

제3조(전공 폐지,신설,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폐지, 신설, 소속변경 및 학부에 전공을 두고 시행한다.

- 1.미술·디자인학부에 회화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을 둔다.
- 2.만화·게임영상학부에 영상그래픽전공을 신설한다.
- 3.공연·음악학부에 코미디전공, 실용음악전공, 음악전공을 둔다.
- 4.예술·디자인학부 무용전공을 스포츠레저학부 무용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 5.예술·디자인학부 음악전공을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 6.방송공연학부 방송디지털콘텐츠전공을 폐지한다.
- 7.스포츠레저학부 전통무예전공을 폐지한다.

제4조(학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예술·디자인학부 재적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예술·디자인학부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술·디자인학부, 공연·음악학부 또는 스포츠레저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방송공연학부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방송공연학부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연·음악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③ 방송공연학부 재적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방송공연학부 방송디지털콘텐츠전공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화·게임영상학부 영상그래픽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 스포츠레저학부 재적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스포츠레저학부 전통무예전공에 재적(복학,재입학,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 5 교무29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변경 및 폐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를 변경 및 폐지한다.

1. 스포츠레저학부를 스포츠레저복지학부로 변경한다.
2. 예술경영학과를 문화관광경영학과로 변경한다.
3. 문화재보존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전공 폐지, 신설,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폐지, 신설, 소속변경 및 학부에 전공을 두고 시행한다.

1. 공연·음악학부 코미디전공을 코미디(연극영화)전공으로 변경한다.
2.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을 폐지한다.
3. 공연·음악학부에 피아노전공을 신설한다.
4.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을 스포츠레저복지학부 스포츠레저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제4조(학부(과) 변경·폐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보존학과 재적생이 휴학 또는 제적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과를 배정한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3. 1 교무1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6 교무28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변경 및 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를 변경 및 폐지한다.

1. 스포츠레저학부를 스포츠복지학부로 변경한다.
2. 문화·관광학부를 신설한다.

제3조(전공 변경 및 신설)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시행한다.

1. 미술·디자인학부 회화전공을 한지조형미술전공으로 변경한다.
2. 공연·음악학부 피아노전공을 음악·음향전공으로 변경한다.
3. 스포츠레저복지학부 무용전공을 스포츠복지학부 무용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4. 문화관광경영학과를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경영전공으로 변경한다.
5. 스포츠복지학부에 사회복지전공을 신설한다.
6. 문화·관광학부에 문화재전공과 한국어·IT전공을 신설한다.

제4조(학부(과)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보존학과 재적생이 휴학 또는 제적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문화·관광학부 문화재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0. 2 교학7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5 교학18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2조(전공폐지·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인정)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폐지·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폐지,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술·디자인학부 한지조형미술전공을 한지·조형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한다.
2. 만화·게임영상학부 영상그래픽전공을 폐지한다.
3. 공연·음악학부 코미디(연극영화)전공을 연극영화·코미디전공으로 변경하고 음악·음향전공을 음악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4. 문화·관광학부의 문화재전공을 학부에서 분리하여 문화재학과를 신설한다.

제4조(전공 폐지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만화·게임영상학부 재적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만화게임영상학부 영상그래픽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화게임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 및 전공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재전공 학위종별 [별표1] 변경에 따른 학위수여 종별은 2008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9. 1 교학69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와 제22조(교과과정)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졸업학점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27조의 졸업이수학점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1. 2008학년도까지의 학기당 졸업이수학점 기준 : 이수학기 \* 18학점
2. 2008학년도 이후 학기당 졸업이수학점 기준 : 이수학기 \* 16학점

부 칙(2009. 1. 6 교학9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 교학34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통합 및 신설)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문화·관광학부와 문화재학과를 통합하여 문화재·관광학부를 신설한다.

제3조(전공 폐지·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폐지,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을 폐지하고 뮤지컬전공을 신설한다.
2. 한국어·IT전공을 한국어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문화재·관광학부에 문화관광경영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어전공을 둔다.

제4조(전공 폐지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공연·음악학부 재적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연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 및 전공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2. 1 교학8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3(정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6. 3 교학37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신설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한다.

1. 공연·음악학부에 음악전공을 신설한다.
2. 문화재·관광학부의 문화재전공을 문화재보존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2011. 2. 11 교학8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신설 및 폐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학과를 신설, 폐지한다.

1. 스포츠무도복지학과를 폐지한다.
2. 스포츠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무도복지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무도복지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스포츠복지학부 스포츠레저복지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스포츠무도복지학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4. 1 교학 27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학생 지원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2.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6. 1 교학 37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폐지, 전공·학과 명칭 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폐지, 전공·학과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문화재·관광학부 한국어전공을 폐지한다.
2. 한지조형·디자인전공을 한지조형디자인전공으로, 스포츠레저복지전공을 스포츠복지전공으로, 무용복지전공을 무용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문화재·관광학부의 문화재전공을 문화재·보존학과로, 문화관광경영전공을 글로벌호텔관광경영학과로 각각 변경한다.

제3조(전공 폐지, 전공·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학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 및 전공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변경) 전(2011학년도)			개정(변경) 후(2012학년도)		
학 부	전 공	정원	학 부 (과)	전 공	정원
미 술 · 디 자 인	한 지 · 조 형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52	미 술 · 디 자 인	한 지 조 형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49
만 화 · 게 임 영 상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53	만 화 · 게 임 영 상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50
공 연 · 음 악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실 류 음 지 악 음 지 악	82	공 연 · 음 악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실 류 음 지 악 음 지 악	84
스 포 츠 복 지	스 포 츠 레 저 복 지 무 용 복 지	34	스 포 츠 복 지	스 포 츠 복 지 무 용 복 지	31
문 화 재 · 관 광	문 화 관 광 경 영 재 문 화 국 재 어	28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5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20
5개 학부	13개 전공	249	4개 학부 10개 전공 2개학과		249

부 칙(2011. 8. 5 교학 5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인원 및 방법) 시간제 등록생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정규학생의 입학정원 내로 한다.

부 칙(2012. 2. 27 교학 17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64조의3(정원)은 2012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스포츠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스포츠복지학부 스포츠레저복지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스포츠학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6. 25 교학 5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은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부(과) 전공을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부(과) 전공에서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중전 재적 학부(과)		변경된 재적학과
학 부 (과)	전 공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공 연 · 음 악 학 부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실 용 음 악	실 용 음 악 학 과
	뮤 지 켈	뮤 지 켈 학 과
	음 악	음 악 학 과
스 포 츠 복 지 학 부	스 포 츠 복 지	생 활 체 육 학 과
	무 용	무 용 학 과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부 칙(2012. 12. 21. 교학 96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64조의3(정원)은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만화·게임영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2. 4. 교학 95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12월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18조 4항은 2013년8월26일부터, 학칙 제59조 2항은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3. 1 교학 14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주캠퍼스 개교에 따른 경과조치) 양주캠퍼스 이전학과의 개교 이전 미술·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 공연·음악학부 연극영화·코미디전공, 음악전공의 재적학생은 양주캠퍼스 소속 재적학생으로 본다.

제3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를 폐지한다.

제4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생활체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3. 31 교학 26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5년 3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8. 25 교학 6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8 기획 30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7 교학 58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신설) 뷰티패션디자인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 폐지·학과계열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폐지, 학과계열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디어예술학과를 폐지한다.
2. 인문사회계열인 문화재보존학과를 예체능계열인 문화재보존예술학과로 계열 및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3. 인문사회계열인 호텔관광경영학과를 예체능계열인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로 계열 및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4. 연극영화·코미디학과를 연극영화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4조(학과 계열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계열 및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미디어예술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미디어예술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연극영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6조(학위명)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2. 25 교무 1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변경) 문화재보존예술학과와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는 인문사회계열로 계열을 변경한다.

부 칙(2016. 5. 27 교무 35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문화재보존예술학과,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부 칙(2016. 11. 17 교무 66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10 교학 2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무용학과는 폐지한다.

제3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부 칙(2018. 4. 18 교학 23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과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한지공간조형디자인학과	미술조형디자인학부	한지공간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학과		미술조형전공
뷰티패션디자인학과		뷰티패션디자인전공
금속조형디자인학과		금속조형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학과		만화게임영상전공
실용음악학과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학과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전공
음악학과		음악전공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경호무도학과	경호무도학과	

부 칙(2019. 2. 28 교학 4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3 교무 28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3 교무 3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술조형디자인학부의 뷰티패션디자인전공을 뷰티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미술조형디자인학부의 한지공간조형디자인전공과 미술조형전공을 통합하여 융합조형디자인전공을 신설한다.
3. 생활체육학과와 경호무도학과를 통합하여 스포츠경호무도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한지공간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뷰티패션디자인전공		금속조형디자인전공
	금속조형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		음악전공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경호무도학과			

부 칙(2020. 04. 10. 교학 19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술조형디자인학부의 금속조형디자인전공을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한지공간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뷰티패션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금속조형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		음악전공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경호무도학과			

부 칙(2021. 2.3. 교무 125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7조(졸업) (별지 제1호 서식)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4. 20. 교무 37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4. 23. 학생 25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디지털콘텐츠학부의 애니메이션전공을 애니메이션&웹툰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공연예술학부의 공연예술뮤지컬전공을 공연예술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전공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		음악전공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부 칙(2022.04.20. 입학 18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디지털콘텐츠학부의 시각디자인전공을 시각·영상 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스포츠경호무도학과명을 스포츠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영상 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전공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		음악전공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스포츠과학과	

2023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0	
	뷰 티 디 자 인 전 공	19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 웹 툴 전 공	33	
	시 각 · 영 상 디 자 인 전 공	20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15	
	공 연 예 술 전 공	15	
스 포 츠 과 학 과		20	
교 양 학 부		-	
<b>합</b>	<b>계</b>	<b>142</b>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27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30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4	
	음 악 전 공	8	
<b>합</b>	<b>계</b>	<b>89</b>	

2022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5	
	뷰 티 디 자 인 전 공	20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 웹 툴 전 공	34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7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전 공	27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29	
교 양 학 부		-	
<b>합</b>	<b>계</b>	<b>186</b>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26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29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4	
	음 악 전 공	10	
<b>합</b>	<b>계</b>	<b>89</b>	

## 2021학년도 입학정원

###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응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5	
	뷰 티 디 자 인 전 공	20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34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7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27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29	
교 양 학 부		-	
<b>합</b>	<b>계</b>	<b>186</b>	

###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26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29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4	
	음 악 전 공	10	
<b>합</b>	<b>계</b>	<b>89</b>	

## 2020학년도 입학정원

###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응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30	
	뷰 티 디 자 인 전 공	29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34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9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29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32	
교 양 학 부		-	
<b>합</b>	<b>계</b>	<b>207</b>	

###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8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30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6	
	음 악 전 공	15	
<b>합</b>	<b>계</b>	<b>99</b>	

## 2019학년도 입학정원

###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0	
	미 술 조 형 전 공	15	
	뷰 티 패 션 디 자 인 전 공	25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28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6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25	
생 활 체 육 학 과		19	
경 호 무 도 학 과		25	
교 양 학 부		-	
<b>합</b>	<b>계</b>	<b>207</b>	

###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8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27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4	
	음 악 전 공	20	
<b>합</b>	<b>계</b>	<b>99</b>	

## 2018학년도 입학정원

### 전북희망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4	
공 연 예 술 유 지 쉐 학 과	25	
생 활 체 육 학 과	21	
미 술 조 형 학 과	15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5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7	
경 호 무 도 학 과	25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25	
교 양 학 부	-	
<b>합 계</b>	<b>207</b>	

### 경기드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금 속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5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25	
연 극 영 화 과	24	
음 악 학 과	25	
<b>합 계</b>	<b>99</b>	

## 2017학년도 입학정원

### 전북희망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2	
유 지 컬 학 과	25	
생 활 체 육 학 과	23	
무 용 학 과	15	
미 술 조 형 학 과	17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6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7	
경 호 무 도 학 과	25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25	
교 양 학 부	-	
<b>합 계</b>	<b>225</b>	

### 경기드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5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25	
연 극 영 화 과	24	
음 악 학 과	25	
<b>합 계</b>	<b>99</b>	

## 2016학년도 입학정원

### 전북희망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0	
유 지 컬 학 과	22	
생 활 체 육 학 과	20	
무 용 학 과	15	
문 화 재 보 존 예 술 학 과	15	
문 화 예 술 관 광 콘 텐 츠 학 과	15	
미 술 조 형 학 과	15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2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0	
경 호 무 도 학 과	21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20	
교 양 학 부	-	
<b>합 계</b>	<b>225</b>	

### 경기드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5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25	
연 극 영 화 학 과	24	
음 악 학 과	25	
<b>합 계</b>	<b>99</b>	

## 2015학년도 입학정원

### 임실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0	
유 지 컬 학 과	22	
생 활 체 육 학 과	23	
무 용 학 과	15	
문 화 재 보 존 학 과	15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15	
미 술 조 형 학 과	15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0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0	
경 호 무 도 학 과	20	
미 디 어 예 술 학 과	20	
교 양 학 부	-	
<b>합 계</b>	<b>225</b>	

### 양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6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33	
연 극 영 화 코 미 디 학 과	15	
음 악 학 과	25	
<b>합 계</b>	<b>99</b>	

## 2014학년도 입학정원

### 임실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7	
실 용 음 악 학 과	20	
뮤 지 컬 학 과	25	
생 활 체 육 학 과	26	
무 용 학 과	16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6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20	
교 양 학 부	-	
<b>합 계</b>	<b>150</b>	

### 양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6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41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15	
음 악 학 과	17	
<b>합 계</b>	<b>99</b>	

단, 양주캠퍼스 2014년 편제정원은 436명으로 한다.

## 2013학년도 입학정원

### 임실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7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6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41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15	
실 용 음 악 학 과	20	
뮤 지 컬 학 과	25	
음 악 학 과	17	
생 활 체 육 학 과	26	
무 용 학 과	16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6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20	
교 양 학 부	-	
<b>합 계</b>	<b>249</b>	

## 2012학년도 입학정원

### 임실캠퍼스

학 부 (과)	전 공	정 원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지 조 형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49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50
공 연 · 음 악 학 부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실 용 음 악 / 뮤 지 컬 / 음 악	84
스 포 츠 복 지 학 부	스 포 츠 복 지 무 용	31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5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20
<b>합 계</b>		<b>249</b>



[별표 1-1]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

2014학년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정 원	학 위 종 별	설 치 유 형	입 학 학 년
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	24	체 육 학 사	채 용 조 건 형	학과폐지

2013학년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정 원	학 위 종 별	설 치 유 형	입 학 학 년
스포츠격기에이전시학과	24	체 육 학 사	채 용 조 건 형	1학년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	15	미 술 학 사	채 용 조 건 형	학과폐지
	15	미 술 학 사	재 교 육 형	

2012학년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정 원	학 위 종 별	설 치 유 형	입 학 학 년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	15	미 술 학 사	채 용 조 건 형	3학년
	15	미 술 학 사	재 교 육 형	1,3학년

[별표 2]]

학사학위 종별표

[ 2023학년도 ]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학사	
	뷰티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음악학사	
	공연예술전공	공연예술학사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미술학사	
	시각·영상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미술조형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미술학사	
디지털콘텐츠학부	만화게임영상전공	디자인학사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학사	
	음악전공	음악학사	
스포츠과학과		체육학사	

[ 2022학년도 ]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학사	
	뷰티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음악학사	
	공연예술전공	공연예술학사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미술학사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미술조형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미술학사	
디지털콘텐츠학부	만화게임영상전공	디자인학사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학사	
	음악전공	음악학사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체육학사	

[ 2021학년도 ]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 2020학년도 ]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 2019학년도 ]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미 술 조 형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패 션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미 술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 2018학년도 ]

학 과	학위수여	비 고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유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디 자 인 학 사	
금 속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학 과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 2017학년도 ]

학 과	학위수여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유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디 자 인 학 사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학 과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 2016학년도 ]

학 과	수 여 학 위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학 과	연 극 영 화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뮤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문 화 재 보 존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사	
문 화 예 술 관 광 콘 텐 츠 학 과	문 화 예 술 경 영 학 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디 자 인 학 사	

[ 2013~2015학년도 입학자 ]

학 과	수 여 학 위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문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뮤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문 화 재 학 사	
( 글 로 벌 )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육 학 사	
미 디 어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사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 부 (과)	전 공	수 여 학 위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귀 · 조 형 디 자 인 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미 술 학 사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미 술 학 사
공 연 · 음 악 학 부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문 학 사
	실 뮤 음 지 음 악 뮤 음 지 음 악	음 악 학 사
스 포 츠 복 지 학 부	스 포 츠 레 저 복 지	체 육 학 사
	무 용 복 지	무 용 학 사
문 화 재 · 문 화 재 보 존 학 과		문 화 재 학 사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사

[ 별표 3 ]

학교기업별 명칭,소재지,사업종목,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번호	명 칭	사 업 종 목	관 련 학 부 (과)	주 소

<개정 2013.12.4>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학과(전공) : ○○○○ 학과(전공)  
○○○○ 학사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위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 ○ ○

학위번호 : 예원예술대 ○○○○ - 학 - ○○○○



학 사 학 위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 공				
	주 소	(전화)			
학 점 취 득 사	총 학 점	교 양 과 목 학 점	전 공 과 목 학 점		일반선택 과목학점
			전 공 필 수	전 공 선 택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사학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 ○ 박사 ○ ○ ○

학위번호 : 학점○○○○

#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학업이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등록·수업

**제2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②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기종료일까지 납입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학기 등록이 불가하다.<신설 2012.12.21>

**제3조(학점단위등록)** ① 9학기 이상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최저학점에 9학점 이하 미달한 자와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단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학기 및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학점단위등록금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6,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해당액으로 한다. 재입학하는 학생 중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학점단위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류기간에는 학점단위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은 교양, 전공으로 구분하며 학칙36조에 의한 매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2014.8.25>

1.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2. 미 취득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타 학부(과, 전공)의 실험·실습·실기과목 및 타과 이수불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4. 교과목의 배정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5. 분반이 지정되어 있는 과목은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자는 소정기일 내에 확정된 수강신청 내역을 우리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기당 16~17학점으로 한다.

⑤ 매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9학점으로 하며, 9학점 미만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단, 최종 졸업학기 이후에는 수강신청 최저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16학점 이상 취득한자는 최대 신청학점을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수 이하로 제한한다.<신설 2012.12.21>

⑦ 캠퍼스 간에는 교양 및 전공의 계열선택 교과목에 대하여 교차하여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4.3.1.><개정2014.8.25>

**제5조(수강취소)** ① 학생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6학점이내로 소정의 기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Drop)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는 지정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우리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제6조(재이수)** ① 학생은 기 이수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로 재이수를 신청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② 학생이 기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재이수 신청교과의 성적은 당초의 취득성적과 재이수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수강정정)**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강승인 불허)** ① 수강신청 또는 정정 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승인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학기 취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폐강된 교과목
2. 이 규정 제4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르지 않은 교과목
3. 학칙 제25조에 의한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
4. <삭제2014.8.25>

② 전항 제3호의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선정은 총장이 학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전 과목이수의 포기)** 등록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아니하거나 수강신청 후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등록회수에 포함시키고 학사경고의 대상이 된다.

**제10조(폐강)** 수강신청자가 일정 인원 이하인 과목은 폐강하고 타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과목분반 및 수강제한)** ① 적정 수강인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한 과목은 강의실을 변경하거나 분반할 수 있다.

② 과목의 특성 및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수강대상 학과 및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분반 및 수강대상 학과와 인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담당교수는 학부장과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반 및 수강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장 성적처리

**제12조(성적평균)** ① 학업성적의 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평점(실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균성적은 소수점 둘째자리(실점인 경우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미만은 반올림한다.

③ 성적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신청학점수
2. 평점합계
3. 평균(백분위)성적
4. <삭제2018.11.5.>

**제13조(시험 및 평가)** 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④ 학업성적의 등급별 비율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다만,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A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A학점이 30% 미만일 경우 누적비율에 의하여 B학점 이상을 80%까지로 적용하며, B학점 이상이 80% 미만일 경우 누적비율에 의하여 C학점 이상을 100%로 적용한다.

등급	A	B	C	D	F
비율(%)	10~30%	20~50%	0~40%	0~50%	0~50%

※ 수강인원이 20명 이하 및 팀티칭 교과목인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 전공실기과목은 A등급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평가의 기준은 담당 교·강사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의 성적평가 반영 비율에 따른다.

⑥ 학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할 경우는 7일 이내에 추가시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공주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 그리고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입대휴학자의 성적평가)** 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 학기말 시험 전에 입대 휴학한 자는 조기 시험을 신청해야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입대휴학 해당자는 휴학원과 함께 조기시험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 교·강사로 한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교·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 처벌)** 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대리시험의 경우는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시험장외 답안지 작성의 경우도 동일하다.

2. 기타 부정행위는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4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 다만, 해당과목 이후 분이 4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독교수의 증언, 증거물에 의하여 소속 학부(과)장이 처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총장은 처벌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출석성적 및 출석인정)** ① 출석성적은 당해학기 성적종합평가에 20%를 반영한다.

② 한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하되 학기 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로 하여 기산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학지원처장, 학부(과)장이 발급하는 공결 및 유계결석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학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자(홍보, 공연, 대회참가, 대회참가를 위한 합숙훈련 등)
3.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자.
4. 병사관계(신체검사)
5. 직계가족의 사망.
6. 직계존속 중 부모의 대소기일.
7. 본인의 결혼, 신병
8. 기타 학기 중 취업학생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한 자.<개정 2016.11.17.>

⑤ 공결 및 유계결석 대상자일지라도 학기중 공결일수(시간수) 및 유계결석 일수(시간수) 총일수(시간수)가 1/4이상 넘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결 및 유계결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⑦ 조기취업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교무지원과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17.>

**제18조(체육특기자 특별조치)** ① 매학기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성적을 특별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 내용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체육특기자가 훈련에 소홀하거나 교내외의 생활이 불량하여 특기자로서 본분에 어긋날 때에는 전항의 특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
2. 이규정 제16조에 의한 성적 취소
3.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 신청한 과목 이외의 과목의 성적

**제19조의2(등록금 일부 미납자의 성적 처리)** 등록금 일부미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1. 당해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학기 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보되고 등록금 전액 납부시에는 즉시 성적이 인정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당해학기 성적이 취소된다.
2. 인정받지 못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아니하며, 수학기간으로만 표기한다.<조신설 2012.12.21>

**제20조(성적공시 및 이의신청)**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한 성적은 소정기일 내에 우리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을 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별도의 성적 공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공시 기간 내에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성적정정)** 학기말 성적을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담당교수는 답안지(과제물 또는 기타 평가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신청서 및 사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2조(성적통고)** 매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교학지원처는 학생이 이수한 성적을 학부형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학사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 하고,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고한다.

1. 재학 중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자
2. 이 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

② 전항의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③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 횟수가 통산 4회에 해당 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졸업 또는 수료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점단위등록자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기도중 학적변동자의 성적)** ①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기말시험 전에 입영휴학 자는 입영일전까지 과목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받은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되 편입한 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이하“이수지정과목”이라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평점 평균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업 성적만으로 산정한다.

③ 학적부 정리는 인정학점의 계만을 등재한다.

④ 편입생에 대한 학력조회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행하고 학력조회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편입학을 취소한다.

⑤ 편입학의 시행과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시행규정에 의한다.

**제25조의2(특별학점인정)** ①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분야에 대한 창업을 창업인턴십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른 대학과 창업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류학점은 소정의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조신설2014.3.1>

**제26조(성적불량과목의 포기)** <조삭제2014.8.25>

**제27조(졸업 이수학점)** 졸업 이수학점은 [별표1] 과 같다. 단, 전공학점은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제4장 휴학·복학·재입학

**제28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휴학 회수 초과는 예외로 한다.

1.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

2.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 휴학

3.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4. 휴학기간 초과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

5. 유급에 따른 휴학

6.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개정2013.12.4>

7. 창업휴학<신설2014.3.1>

**제29조(일반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당해연도 군입영, 임신·출산·육아휴학이나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개정2013.12.4>

③ 등록한 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시기에 따라 학칙 제51조와 같이 보전된다.

④ 삭제, 조이동 제29조의 1<개정2014.3.3>

**제29조의1(육아휴학)**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학생은 최장 1년(2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여학생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최장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3.12.4><조신설2014.3.1>

**제29조의2(창업휴학)** ①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③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초 1개월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4.3.1>

**제30조(입대휴학)** ① 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하기 10일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휴학을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등록한 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이내에 입영 휴학한 경우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은 전역 후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3이후에 입영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목변경 2014.3.1>

**제31조(휴학취소)** ① 일반휴학을 신청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영휴학을 신청한 자가 귀향 또는 입영연기 되었을 때는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일반휴학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공공기관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영휴학한 자는 전역 후 학기 개시일이 2회 지나기 전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아니할 때는 제적된다. 다만, 휴학연장에 의한 초과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재입학)** ① 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입학홍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하는 학년은 제적 당시의 재학 학년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로 인하여 지정된 학부(과)에 재입학하는 학생은 취득학점 등에 따라 학년을 재 사정 할 수 있다.

## 제5장 교내 전부(과)

**제35조(자격)** 교내 전부(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 학업성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7.05.10>

**제36조(허용범위 및 절차)** ① 교내 전부(과)는 제2학년과 3학년, 4학년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05.10>

② 교내 전부(과) 희망자로서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는 소정기간 내에 진출 및 전입학부(과)의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과)원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부(과)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일캠퍼스가 아닌 경우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3.1><개정 2018.11.5>

**제37조(이수과목)** 전부(과)한 자는 전부(과)가 허용된 학부(과),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 취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학부(과)장이 인정할 수 있다.

## 제6장 능력별 조기졸업

**제38조(자격)** ① 능력별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5 이상으로서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최저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 자로 한다. 다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의 조기졸업 평점평균은 4.0이상인 자로 한다.

②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능력별 조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을 경유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장 계절학기

**제39조(수강대상)** 계절학기는 재학생으로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40조(이수학점)**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학칙 제25조에도 불구하고 6학점 범위내로 한다.

**제41조(개설과목)**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취득학점은 이수 구분대로 인정한다.

**제42조(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졸업유예

**제43조(졸업유예제도)** ① 졸업유예제도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3조의 2(신청자격)**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조신설2014.3.1>

**제43조의 3(유예기간)** 1회에 1개 학기씩 최대 4개 학기 동안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조신설2014.3.3>

**제43조의 4(신청절차)** ①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졸업유예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조신설2014.3.1>

② 졸업유예는 매 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신청한다.<조신설2014.3.1>

**제43조의 5(유예조건)** ①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② 졸업유예자는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③ 졸업유예자의 성적평가는 재학생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한다.<조신설2014.3.1>

**제43조의 6(졸업유예의 취소)** ①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②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취소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조신설 2014.3.1>

부 칙(2008.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학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7항의 조기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졸업이수학점]

### 졸업학점구성표

학번	교 양			전 공				일반 (자유)	졸업 학점	비 고
	필수	선택	계	전필	전선	계기	소계			
2001	16	12	28	16-58	0-22	8	56	56	140	학과제
2002	12	8	20	12-30	22-40	4	56	64		학부제
2003	12	12	24	14-24	28-38	4	56	60		
2004	0	16	16	18-22	34	0-4	56	68		
2005	0	16	16	18-22	32-44	0-4	56	68		
2006	0	16	16	18-22	32-44	0-4	56	68		
2007	0	16	16	18-22	32-44	0-6	56	68		
2008	0	16	16	18-20	32-40	0-4	50	64		130

학번	교 양			전 공				일반 (자유)	졸업 학점	비 고
	필수	선택	계	전인/ 전필	전심/ 전선	계기/ 전기	소계			
2009~	4-6	14-16	20	0-42	0-42	6	48	62	130	
2013~	6	14	20	18	24	6	48	62	130	
2015~	6-7	13-14	20	18	24	6	48	62	130	
2019~	15-18	22-25	40	12	36	-	48	42	130	

학번	교 양			전 공				일반 (자유)	졸업 학점	비 고
	필수	선택	계	전필(전기, 전필, 전심)		전선	소계			
2023	5-9	11-15	20	24		6	30	80	130	

[별표 1-1 복학생(재입학포함)에 관한 최저졸업 학점수표]

### 복학생(재입학 포함)에 관한 최저졸업 학점수표

기등록 및 이수학기 수	잔여학기	최저졸업학점 (졸업학점 : 130)	비고
1	7	130	
2	6	132	
3	5	134	
4	4	136	
5	3	138	
6	2	140	
7	1	140	

[별표 1-2 순수외국인 졸업 이수 TOPIK 인증 기준] <신설 2022.04.05>

### 순수외국인 졸업 이수 TOPIK 인증 기준표

계 열	TOPIK 급수
인문사회	TOPIK 4급 이상 또는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어 자체능력시험(Y-TOPIK) 4급 이상
예·체능	TOPIK 3급 이상 또는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어 자체능력시험(Y-TOPIK) 3급 이상

[별표 2 평점평균의 실점환산 기준표] <개정2013.12.4>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4.50	100	4.00	94.3	3.50	88.6	3.00	82.9	2.50	77.1	2.00	71.4	1.50	65.7
4.49	99.9	3.99	94.2	3.49	88.5	2.99	82.7	2.49	77.0	1.99	71.3	1.49	65.6
4.48	99.8	3.98	94.1	3.48	88.3	2.98	82.6	2.48	76.9	1.98	71.2	1.48	65.5
4.47	99.7	3.97	93.9	3.47	88.2	2.97	82.5	2.47	76.8	1.97	71.1	1.47	65.4
4.46	99.5	3.96	93.8	3.46	88.1	2.96	82.4	2.46	76.7	1.96	71.0	1.46	65.3
4.45	99.4	3.95	93.7	3.45	88.0	2.95	82.3	2.45	76.6	1.95	70.9	1.45	65.1
4.44	99.3	3.94	93.6	3.44	87.9	2.94	82.2	2.44	76.5	1.94	70.7	1.44	65.0
4.43	99.2	3.93	93.5	3.43	87.8	2.93	82.1	2.43	76.3	1.93	70.6	1.43	64.9
4.42	99.1	3.92	93.4	3.42	87.7	2.92	81.9	2.42	76.2	1.92	70.5	1.42	64.8
4.41	99.0	3.91	93.3	3.41	87.5	2.91	81.8	2.41	76.1	1.91	70.4	1.41	64.7
4.40	98.9	3.90	93.1	3.40	87.4	2.90	81.7	2.40	76.0	1.90	70.3	1.40	64.6
4.39	98.7	3.89	93.0	3.39	87.3	2.89	81.6	2.39	75.9	1.89	70.2	1.39	64.5
4.38	98.6	3.88	92.9	3.38	87.2	2.88	81.5	2.38	75.8	1.88	70.1	1.38	64.3
4.37	98.5	3.87	92.8	3.37	87.1	2.87	81.4	2.37	75.7	1.87	69.9	1.37	64.2
4.36	98.4	3.86	92.7	3.36	87.0	2.86	81.3	2.36	75.5	1.86	69.8	1.36	64.1
4.35	98.3	3.85	92.6	3.35	86.9	2.85	81.1	2.35	75.4	1.85	69.7	1.35	64.0
4.34	98.2	3.84	92.5	3.34	86.7	2.84	81.0	2.34	75.3	1.84	69.6	1.34	63.9
4.33	98.1	3.83	92.3	3.33	86.6	2.83	80.9	2.33	75.2	1.83	69.5	1.33	63.8
4.32	97.9	3.82	92.2	3.32	86.5	2.82	80.8	2.32	75.1	1.82	69.4	1.32	63.7
4.31	97.8	3.81	92.1	3.31	86.4	2.81	80.7	2.31	75.0	1.81	69.3	1.31	63.5
4.30	97.7	3.80	92.0	3.30	86.3	2.80	80.6	2.30	74.9	1.80	69.1	1.30	63.4
4.29	97.6	3.79	91.9	3.29	86.2	2.79	80.5	2.29	74.7	1.79	69.0	1.29	63.3
4.28	97.5	3.78	91.8	3.28	86.1	2.78	80.3	2.28	74.6	1.78	68.9	1.28	63.2
4.27	97.4	3.77	91.7	3.27	85.9	2.77	80.2	2.27	74.5	1.77	68.8	1.27	63.1
4.26	97.3	3.76	91.5	3.26	85.8	2.76	80.1	2.26	74.4	1.76	68.7	1.26	63.0
4.25	97.1	3.75	91.4	3.25	85.7	2.75	80.0	2.25	74.3	1.75	68.6	1.25	62.9
4.24	97.0	3.74	91.3	3.24	85.6	2.74	79.9	2.24	74.2	1.74	68.5	1.24	62.7
4.23	96.9	3.73	91.2	3.23	85.5	2.73	79.8	2.23	74.1	1.73	68.3	1.23	62.6
4.22	96.8	3.72	91.1	3.22	85.4	2.72	79.7	2.22	73.9	1.72	68.2	1.22	62.5
4.21	96.7	3.71	91.0	3.21	85.3	2.71	79.5	2.21	73.8	1.71	68.1	1.21	62.4
4.20	96.6	3.70	90.9	3.20	85.1	2.70	79.4	2.20	73.7	1.70	68.0	1.20	62.3
4.19	96.5	3.69	90.7	3.19	85.0	2.69	79.3	2.19	73.6	1.69	67.9	1.19	62.2
4.18	96.3	3.68	90.6	3.18	84.9	2.68	79.2	2.18	73.5	1.68	67.8	1.18	62.1
4.17	96.2	3.67	90.5	3.17	84.8	2.67	79.1	2.17	73.4	1.67	67.7	1.17	61.9
4.16	96.1	3.66	90.4	3.16	84.7	2.66	79.0	2.16	73.3	1.66	67.5	1.16	61.8
4.15	96.0	3.65	90.3	3.15	84.6	2.65	78.9	2.15	73.1	1.65	67.4	1.15	61.7
4.14	95.9	3.64	90.2	3.14	84.5	2.64	78.7	2.14	73.0	1.64	67.3	1.14	61.6
4.13	95.8	3.63	90.1	3.13	84.3	2.63	78.6	2.13	72.9	1.63	67.2	1.13	61.5
4.12	95.7	3.62	89.9	3.12	84.2	2.62	78.5	2.12	72.8	1.62	67.1	1.12	61.4
4.11	95.5	3.61	89.8	3.11	84.1	2.61	78.4	2.11	72.7	1.61	67.0	1.11	61.3
4.10	95.4	3.60	89.7	3.10	84.0	2.60	78.3	2.10	72.6	1.60	66.9	1.10	61.1
4.09	95.3	3.59	89.6	3.09	83.9	2.59	78.2	2.09	72.5	1.59	66.7	1.09	61.0
4.08	95.2	3.58	89.5	3.08	83.8	2.58	78.1	2.08	72.3	1.58	66.6	1.08	60.9
4.07	95.1	3.57	89.4	3.07	83.7	2.57	77.9	2.07	72.2	1.57	66.5	1.07	60.8
4.06	95.0	3.56	89.3	3.06	83.5	2.56	77.8	2.06	72.1	1.56	66.4	1.06	60.7
4.05	94.9	3.55	89.1	3.05	83.4	2.55	77.7	2.05	72.0	1.55	66.3	1.05	60.6
4.04	94.7	3.54	89.0	3.04	83.3	2.54	77.6	2.04	71.9	1.54	66.2	1.04	60.5
4.03	94.6	3.53	88.9	3.03	83.2	2.53	77.5	2.03	71.8	1.53	66.1	1.03	60.3
4.02	94.5	3.52	88.8	3.02	83.1	2.52	77.4	2.02	71.7	1.52	65.9	1.02	60.2
4.01	94.4	3.51	88.7	3.01	83.0	2.51	77.3	2.01	71.5	1.51	65.8	1.01	60.1
												1.00	60.0

# 대학원 학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인 문화예술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두며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개정 2014.12.01.><개정 2016.12.06>

1. 문화예술대학원 :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창작이론과 실기를 교수하여 고급 문화예술체육인력을 양성한다.
2. <삭제 2016.12.06>
3.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기를 교수하여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를 양성한다.<신설 2007.09.17>

**제3조(학위과정)** ① 특수대학원인 문화예술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에 전공을 둘 수 있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개정 2016.12.06>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 및 전문가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계약학과 등)** ① 각 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산업교육 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전공과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등 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신설 2009.01.06.>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01.06.>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두는 입학정원(계약학과포함)은 [별표 1] 과 같다.<신설 2009.01.06.><개정 2012.09.01><개정 2014.12.01><개정 2016.2.25.><개정 2016.12.06.><개정 2018.11.13.>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16.12.06>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입학 총 정원내에서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장 수업연한·재학연한·수업방법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제6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제7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야간, 주말주간, 계절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간에 수업을 할 수 있다.

## 제3장 학년도·수업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도)** 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수업주수)** 각 대학원의 수업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5월 17일)

3.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 ② 비상재해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제1항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을 과할 수 있다.

## 제4장 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 제1절 입학

**제11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각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 자
-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13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전형, 면접고사,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고사 또는 실기고사(예능계에 한함)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③ 편입학자격, 재입학자격 및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외국인학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2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16조(등록)** ①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학생은 4학기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제5조의 수업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③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교육과학기술부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7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18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자녀양육(임신, 출산 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06>

② 전항에 의한 휴학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며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휴학은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방학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유학·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정하여진 기일 내에 복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자
5. 학력 및 경력이 허위로 판명된 자
6.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한 자

## 제6장 교과와 학점·전공변경

**제22조(교과과정 및 교과목)** ① 학생은 교과과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과정 및 교과목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교과과정 외의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청강할 수 있다.<개정 2005.03.02>

**제23조(수료요건)** ①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 교과의 이수는 학점단위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등급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수업시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A	B+	B	C+	C	F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이하
평점	4.5	4.0	3.5	3.0	2.5	2.0	0

**제25조(편입생 및 재입학생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한 학생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수강 및 학점인정)** ① 본교 대학교 각 대학원 및 타 대학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동일 강좌의 수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대학원별로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전공의 변경 및 전과)** 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의 변경 및 동일계열 내에서의 전과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학사과정과의 연계)** <삭제 2009.06.01.>

##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29조(논문의 지도)** ① 학생은 선정된 지도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제출 등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 및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를 받는 자는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논문지도교수)** 논문 또는 작품발표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개정 2007.09.17>

2. 학문영역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타 대학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 할 수 있다.

**제31조(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논문의 제출 및 대체)**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외에 유형의 결과물로 된 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대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논문의 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 관련한 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위원 수의 수는 3인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장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 ① 대학원별 각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별지서식 제1호, 제1-1호]의 학위기를 수여한다.<개정 2016.12.0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석사학위 청구 작품발표회 또는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대학원별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개정 2009.01.06.><개정 2012.09.01><개정 2014.12.01.><개정 2016.12.06.><개정 2018.11.13.>

**제35조(학위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과 징계

**제36조(학생활동 및 학칙준수)** ①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학원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대학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장학금 등)** ①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8조(포상 및 징계)** ① 학업성적이 뛰어나거나 품행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 제10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위탁생, 전문가과정

**제39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혹은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깊이 있게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9.06.01>

**제40조(연구과정)** ① 제12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학위와 관계없이 특정한 교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의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학기단위로 한다.

③ 연구과정의 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정은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수료생 중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본 대학원의 연구생의 이수한 동일과목에 대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인정을 할 수 있다.

**제41조(위탁생)**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41조의2(전문가과정)** ① 각 대학원은 학위와 관계없이 전문가과정을 개설하며,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전문가과정의 재학연한은 1년 단위로 한다.

③ 전문가과정 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장 대학원 조직 및 대학원 위원회

**제42조(조직)** ① 각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운영책임교수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03.02.><개정 2009.01.06.><개정 2016.12.06>

② 각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③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 또는 전공의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3조(위원회)** ① 전체 대학원의 학사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3.02>

②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3.02>

**제4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교학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과 교학지원처장 중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9.25>

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조신설 2012.03.02>

**제44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03.02>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연구과정·위탁생·전문가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칙 및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7.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8. 학생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9.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각 대학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할 수 있다.<항 신설 2012.03.02>

**제44조의2(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조신설 2012.03.02>

- 1. 제44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기타 각 대학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장 학칙개정

**제46조(학칙심의위원회 구성)** <삭제 2016.12.06>

**제47조(학칙의 개정)** 학칙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07.09.17><개정 2012.03.02><개정 2016.12.06>

## 제13장 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대학원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대학교학칙과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4. 9.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학칙의 폐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대학원학칙의 학위과정별 학과(전공)은 이 학칙에 의한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대학원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문화예술대학원 스포츠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전공명칭변경에 따라 체육전공 재적학생으로 본다.

부 칙(2005. 3.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모집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3조(문화예술대학원 전공분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음악전공 재적생은 제27조의 전공변경 회수제하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 및 신설된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음악전공 재적생 중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재적생은 음악전공으로 재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예술경영전공 재적생은 졸업 때까지 예술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영상창업대학원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조 수업연한과 제23조 수료학점은 변경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문화예술대학원 무대예술전공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무대예술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12.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신설, 명칭변경, 통합) 문화예술대학원 전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설, 명칭변경, 통합한다.

1.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재보존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아동음악전공, 뮤지컬전공을 신설한다.
2.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제작전공을 방송영화전공으로 변경한다.
3. 문화예술대학원 영상디자인전공을 영상콘텐츠전공으로 변경한다.
4. 문화예술대학원 미술전공과 조형미술전공을 통합하여 미술전공을 둔다.

제3조(대학원 통합) 문화예술대학원과 문화영상창업대학원을 통합하여 문화예술대학원으로 한다.

제4조(학과신설) 문화예술대학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를 신설하고 전공을 둔다.

1. 미술·문화재보존학과 :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2. 체육학과
3. 문화영상창업학과
4.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 :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5. 공연음악학과 :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아동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뮤지컬전공

제5조(대학원 및 전공 통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문화영상창업대학원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영상창업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② 문화예술대학원 조형미술전공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조형미술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술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③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제작전공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방송제작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영화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④ 문화예술대학원 영상디자인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영상디자인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콘텐츠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신설, 명칭변경) 문화예술대학원 전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설, 명칭 변경한다.

1.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예술공연전공을 신설한다.
2. 문화예술대학원 아동음악전공을 뮤직테크놀로지전공으로 변경한다.

제3조(학과제 폐지 및 캠퍼스별 전공) 대학원의 학과제를 폐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캠퍼스별 전공을 둔다.

1. 문화예술대학원(경기드림캠퍼스) :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뮤지컬전공, 뮤직테크놀로지전공,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예술공연전공
2. 문화예술대학원(전북희망캠퍼스) :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3. 사회복지대학원(전북희망캠퍼스) : 사회복지전공

제4조(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예술대학원 아동음악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아동음악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뮤직테크놀로지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7. 5.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신설) 문화예술대학원 뷰티패션디자인전공, 문화예술관광전공을 신설한다.

제3조(전공폐지)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전공, 뮤지컬전공을 폐지한다.

제4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음악전공, 뮤지컬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음악전공, 뮤지컬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수료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음악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전공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별표 1]

### 대학원 입학정원표

○ 대학원 입학정원(2022학년도)

캠퍼스	대학원	석사과정		
		계 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경기 드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멀티미디어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융합조형전공, 뮤직테크놀로지전공, 통합예술치료전공, 뷰티융합디자인전공,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예술공연전공	50
		인문사회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문화예술관광전공	
전북 희망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20
	사회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15

<개정 2014.12.01><개정 2016.2.25><개정 2016.12.06.><개정 2018.11.13.><개정 2020.2.20.><개정 2020.11.26.><개정 2021.11.17>

○ 대학원 입학정원(2021학년도)

캠퍼스	대학원	석사과정		
		계 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경기 드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멀티미디어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실용음악전공, 뮤직테크놀로지전공, 통합예술치료전공, 뷰티융합디자인전공,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예술공연전공	50
		인문사회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문화예술관광전공	
전북 희망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20
	사회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15

<개정 2014.12.01><개정 2016.2.25><개정 2016.12.06.><개정 2018.11.13.><개정 2020.2.20.><개정 2020.11.26.>

○ 대학원 입학정원(2020학년도)

캠퍼스	대학원	석사과정		
		계 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경기 드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실용음악전공, 뮤직테크놀로지전공, 음악치료전공, 뷰티패션디자인전공,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예술공연전공	50
		인문사회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문화예술관광전공,	
전북 희망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20
	사회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15

<개정 2014.12.01><개정 2016.2.25><개정 2016.12.06.><개정 2018.11.13.><개정 2020.2.20.>

○ 대학원 입학정원(2019학년도)

캠퍼스	대학원	석사과정		
		계 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경기 드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실용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뷰티패션디자인전공, 문화예술관광전공, 유직테크놀로지전공,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예술공연전공	50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전북 희망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20
	사회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15

<개정 2014.12.01><개정 2016.2.25><개정 2016.12.06.><개정 2018.11.13>

○ 대학원 입학정원(2017학년도)

캠퍼스	대학원	석사과정		
		계 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경기 드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실용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음악전공, 뮤지컬전공, 유직테크놀로지전공,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예술공연전공	50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전북 희망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체육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20
	사회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15

<개정 2014.12.01><개정 2016.2.25><개정 2016.12.06>

○ 대학원 입학정원(2015학년도)

캠퍼스	대학원	석사과정		
		계 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경기 드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 공연음악학과,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아동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뮤지컬전공	40
			▶ 미술·문화재보존학과,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 체육학과 ▶ 문화영상창업학과	
전북 희망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 미술·문화재보존학과,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 체육학과 ▶ 문화영상창업학과	25
	사회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20

<개정 2014.12.01><캠퍼스명칭변경 2016.2.25>

[별표 2]

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 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대학원	석사과정	
	전공	학위
문화예술대학원	멀티미디어전공	영상학석사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학석사
	융합조형전공	조형학석사
	뮤직테크놀로지전공	음악학석사
	통합예술치료전공	통합예술치료학석사
	미술전공	미술학석사
	문화예술관광전공	문화예술관광학석사
	뷰티융합디자인전공	디자인학석사
	문화예술공연전공	예술학석사
	문화재보존전공	문화재보존학석사
	체육전공	체육학석사
	문화스포츠복지전공	
	문화영상창업전공	창업학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개정 2009.01.06.><개정 2012.09.01.><개정 2014.12.01.><개정 2016.12.06.><개정 2018.11.13>

석 제 호

##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전공)석사과정을 이수  
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작품)심사에 합격하여 ○ ○학 석  
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작품)제목 :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전공명칭)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석 제 호

#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전공)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와 시험에 합격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  
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전공명칭)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제 호

## 수료증서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       )년  
(       )월간 (                                   )을 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 (인)

## 공개강좌 이수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원 공개강좌과정에서 ○○○○년 ○월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제 호

##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에 (                    )을  
연구하고 그 실력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 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문화예술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3조(지원자격 및 지원서류)** ① 학칙 제12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4조(입학전형)** 학칙 제13조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전형은 서류전형,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예능계에 한함)로 전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추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점수의 가산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위 석사학위과정의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포함)의 교원(겸임교원포함), 연구소, 관공서,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특정직위,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입학전형 방법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문화예술대학원장 (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면접고사위원)** 대학원장은 각 전공별로 전공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배점 및 과락기준)** 입학전형의 과목별 배점과 과락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서류전형 : 학사성적 100점 만점으로 한다.

2.면접고사 : 100점 만점으로 하되 영어 및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시험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3.실기고사 : 예능계열의 실기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4.과락기준 : 면접고사는 만점의 50%미만, 실기고사는 만점의 60%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제7조(합격자 확정)** 본 대학원의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이 확정된다.

**제8조(합격자 등록)**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만 입학이 허가된다.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 이하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 제10조(편입학)** ① 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가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로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이 확정된다.
- ③ 편입학 대상자는 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 ④ 편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 ⑤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3. 타 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11조(등록의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 수업연한 경과후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2조(등록)**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 : 등록금의 1/3
2. 6학점까지 : 등록금의 2/3
3. 7학점이상 : 등록금전액
4. 논문 지도 : 등록금의 1/6

**제13조(휴학)** ① 일반 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군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유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수업일수는 3/4선으로 한다.

1. 휴학원(소정양식) 1부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병원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3. 군입대 휴학일 때에는 입영통지서 1통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4. 서약서 (소정양식) 1부

②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입대휴학 기간을 만료한 자가 계속해서 일반휴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제14조(복학)** ①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매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예정자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소정양식) 1부
2. 학적부 1부
3. 군전역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제15조(자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장 수학연한, 수업, 전공의변경, 교과운영

**제16조(수학연한)** ① 수학연한은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으로 구분한다.

② 수업연한은 4학기 2년으로 한다.

③ 재학연한은 재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수업)** ① 수업은 상시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야간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수업은 각 전공별로 행한다.

**제18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① 전과 및 동일계열 내에서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전과 및 전공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2학기 초 1회에 한한다.

② 이 경우 이수과목의 학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동일교과목 학점만을 인정한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변경원(소정양식)
2. 신·구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4. 전공학점 인정서

**제19조(교과목편성의 원칙)** ① 모든 교과목은 대학원 학문수준과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학문적 체계에 맞도록 편성한다.

②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교과목의 학점수는 한 과목당 1~3학점 및 pass로 구성한다.

③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20조(교과목의 변경)** 기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과목 개설 및 취소)** ①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선정하여 매 학기시작 1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설교과목 중 수강신청 학생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된다. 다만, 학과별 학생수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 개설된 교과목 중 타 학과(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만을 개설한다.

④ 동일 교과목은 연2회 계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제22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개정 2013.12.4>
2. 각종 학술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대학원 학과(전공)교수회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한자

② 교과운영상 강사위촉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학과(전공)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매 학기시작 30일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담당 교과목의 제한)** 본 대학원의 담당 교과목수는 매학기 각 교수 당 1과목(연구과제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담당 교과목을 초과할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는 그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일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 과목변경)** ① 수강신청 후 교과목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② 폐강 등으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수정 입력하여야 하며 정정기간 만료로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학수제한)** <삭제>(2008.07.15)

**제28조(출석일)**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교과목은 F학점 처리된다.

② 출결사항에 대한 점검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제29조(학업성적평가)**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 당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대학원학칙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공동강의 및 재수강)** 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교 각 대학원 석사과정 간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② 성적 등급 C+(79점)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 과목이 2개 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3학기 이상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는 경우에 6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교과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 및 이에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2.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학위과정의 연계)** <삭제>(2008.07.15)

**제32조(보충과목의 이수)** 타 전공출신자는 학부(대학)에서 2과목 이상(6학점)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학점교류)** ① 학점교류를 원하는 자는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는 수업연한 기간 중 9학점, 학기당 3학점(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점교류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점교류 허가원을 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해당학과(전공)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각 대학원의 학점인정)** 대학원 재학생은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2학점 이내에서 소속대학원의 타 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5조(학기당 학점)** ① 매 학기당 9학점(3과목)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따로 6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② 대학원학칙 제23조 제1항의 24학점 중 공통과목 6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2.1.>

③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대상 학생은 교과목학점 이외에 연구과제(논문)를 이수하여야 하며 합격인 경우 Pass로 하고 'P' 평가한다.

④ 예능계를 전공하는 경우 연구과제(논문)를 대체하여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선택할 수 있다.

⑤ 매 학기당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학이나,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표개정 2012.12.1>

학 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계
전공과목(공통과목)	8(2)	8(2)	8(2)	6	30
연구과제(논문)	0	0	0	P	

⑥ 학위논문 면제과정을 선택한 경우 4학기차에 2과목(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⑦ 학위논문 과정 입학자가 학위논문 면제과정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취득성적의 포기)** ① 취득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 9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별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취득학점 포기신청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제37조(외국어시험)** <삭제 2009.02.01>



**제38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응시 자격은 3학기 총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B(3.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면제과정의 경우, 4학기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B(3.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12.21>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1회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은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시험까지 그 과목을 합격으로 한다.

⑥ 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에서 출강한 교원 중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각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수료)** ①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학업성적은 전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장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제40조(논문계획서 제출)** ① 논문계획서는 논문제출 1학기(6개월)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계획서 변경)** ① 학위신청논문은 논문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2개월 이전에 학위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학위신청 논문제출)** 학위신청을 위한 심사용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심사용 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논문제출자격)** 학위신청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석사학위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3.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6개월)이상 논문지도교수를 받은 자.

**제44조(논문제출시기)** 학위신청논문 제출시기는 년2회로 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

**제45조(제출서류)** 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각1부씩을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신청논문 제출원

2. 학위신청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제46조(논문의 반환)** 학위신청논문 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 지도교수는 교원 중에서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과(전공)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④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8조(심사위원장)** ①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가 완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석사학위 신청논문 심사요지서(소정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49조(심사정족수)** 석사학위신청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

**제50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일 때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51조(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과 논문주제의 학술적 가치 및 타당성, 내용구성의 체계성 등의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실시한다.

1. 학위논문심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심사는 심사위원장 주관 하에 3회 행하되, 그 중 1회는 논문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회 혹은 전시회의 경우, 공개발표(전시)후 1회 심사로써 마감한다.
3. 심사시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번역본, 모형 또는 기타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4. 심사용 논문이 이미 제출된 논문작성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논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내용이면서 논제가 수정된 것은 무관하나, 논문의 연구분야가 논문작성계획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심사에 합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학위신청논문 작성계획변경원을 제출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5.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구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6. 최종심사에서는 지적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학위논문으로서의 내용과 체재를 갖추었는지 판별하여 논문심사 합격을 결정한다.
7. 학위논문심사에 불합격한자는 재학 연한 내에 재 제출할 수 있다.
8. 기타 학위논문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2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본 심사와 병행 또는 논문심사 종료 후에 행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과 연관된 광범하고 심오한 전문적 지식 및 학위를 받는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행한다.

③ 논문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1학기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다시 구술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격하면 학위논문의 합격판정이 취소된다.

**제53조(합격판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성적은 대학원 학칙 제24조에 정한 등급으로 표시하되, 각각 C 등급 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위원 3분의2 이상의 통과로서 합격을 결정한다.

**제54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 요지서
2. 구술시험 결과보고서

② 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석사 학위과정의 수료자로서 확정한다.

**제55조(학위논문의 제출)** ① 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위 논문(작품도록집 포함)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이 날인한 2부를 포함하여 9부(하드2, 소프트7)를 디스켓 혹은 CD(지도교수가 제출된 논문과 동일함을 확인)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 맨 끝 장에 저작물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56조(논문의 구성)** 학위신청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표지(별지 제1호 서식)
2. 백지
3. 속표지(별지 제2호 서식)
4.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
5. 감사의 글(별지 제4호 서식)-필요한 경우
6. 목차(별지 제5호 서식), 내용목차, 표목차, 도(사진)목차
7. 초록(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
8. 본문(별지 제8호 서식)
9. 참고자료 및 문헌

10. 부록

11. 저작물 이용 허락서(별지 제9호 서식)

**제57조(논문작성용어 및 초록)** ① 논문작성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② 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 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때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 요약 2페이지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논문의 규격 등)** 학위논문의 규격, 지질, 인쇄, 제본 등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한국산업규격 5판(182cm x 257cm)
2. 지질 : 백색 모조지 70파운드 이상
3. 인쇄 : 전산사식(공판 또는 활판 가능)황서 인쇄
4. 제본 : 병제(하드 및 소프트 카바)

**제59조(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수여)** ① 4학기를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이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논문 면제과정에서 4학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기 수여는 대학원학칙 제34조 제1항에 의한다.

## 제6장 학과(전공) 주임교수·논문지도 교수

**제60조(주임교수임명)**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61조(주임교수의 직무)**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교과목 설정, 논문지도교수 제청, 본 대학원에 관련된 학과(전공)교수회의 주관 및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62조(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당해 학과(전공)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타 대학원의 전임교원 또는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6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공동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가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파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지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및 일정기간 동안 타 전공분야의 연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우리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서 우리 대학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논문에는 공동 지도교수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에서 공동지도교수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65조(논문지도학생의 제한)** 교수 1인당 1학기에 논문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위신청 심사논문 제출시를 기준하여 3명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6조(논문지도교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 개강직후에 당해 학생의 의견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67조(지도교수의 직무)** 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당해 학생의 학사지도
3. 논문심사위원 제청

**제68조(논문지도)** 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되 15주간으로 한다.

**제69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비는 대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장 장학금

**제70조(장학금의 지급)**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장학금<개정 2012.12.21>
2. 특별장학금
3. 창업장학금
4. 공로장학금
5. 재직장학금
6. 교직원 가족장학금

**제71조(성적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입학성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제72조(특별 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에게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3조(창업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 중 전공분야의 벤처기업 아이템을 사업화하여 창업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공로장학금)** 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는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재직장학금)** 예원예술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6조(교직원 가족장학금)** 예원예술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7조(지급의 기준)**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정상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인 1종의 장학금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지급의 시기)** 각종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9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2.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3. 대학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4. 기타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제8장 보칙

**제80조(준용)** 이 학사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4. 3.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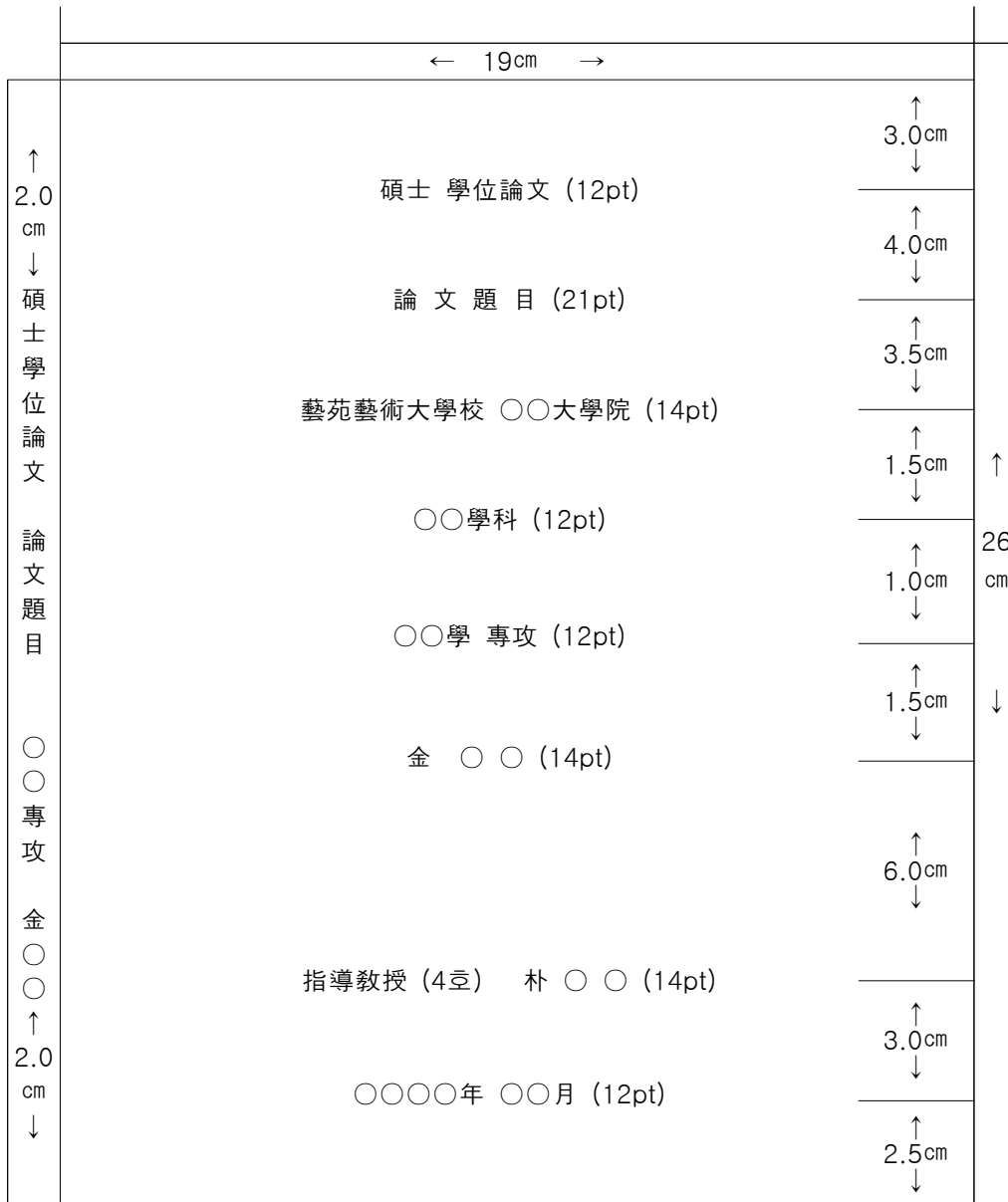
부 칙(2013. 12. 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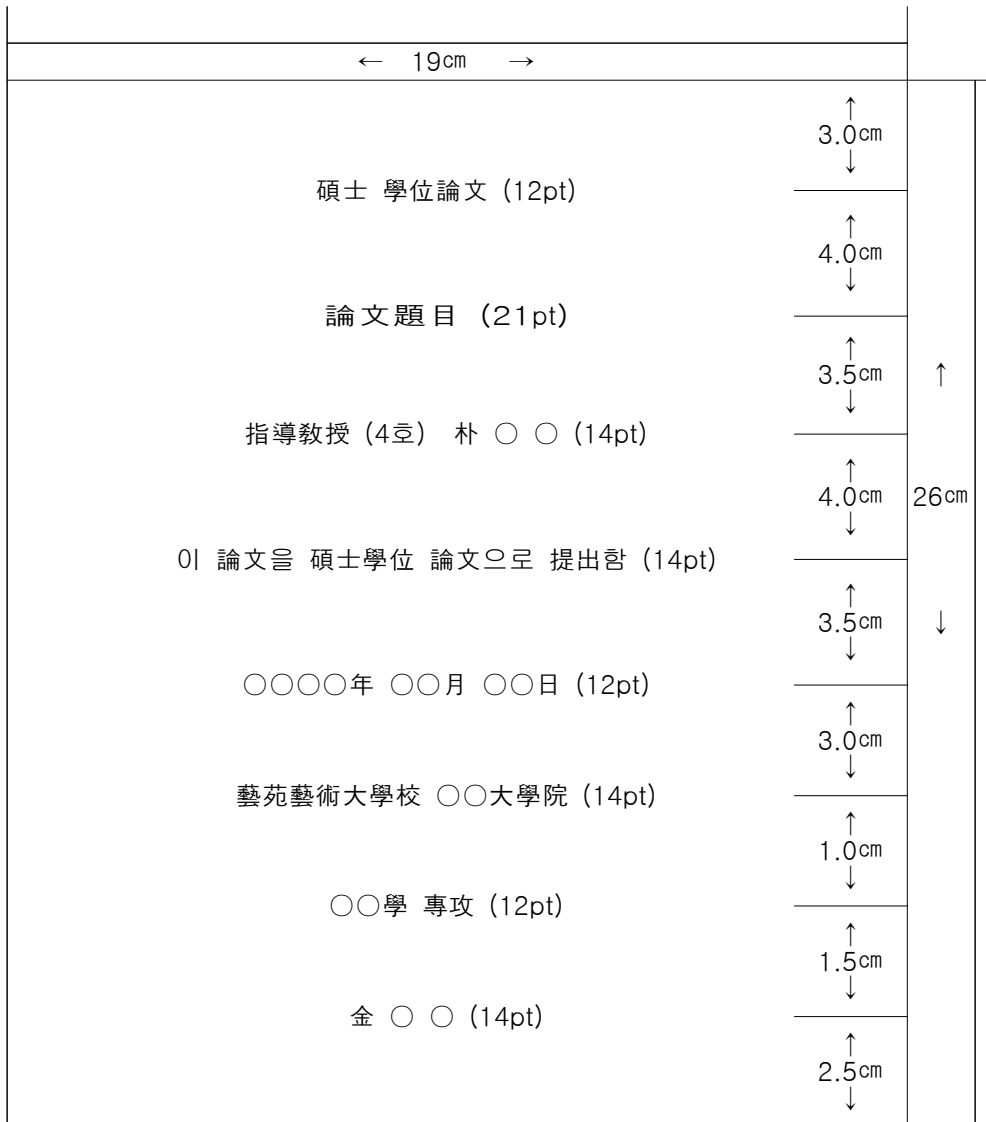
부 칙(2014. 12.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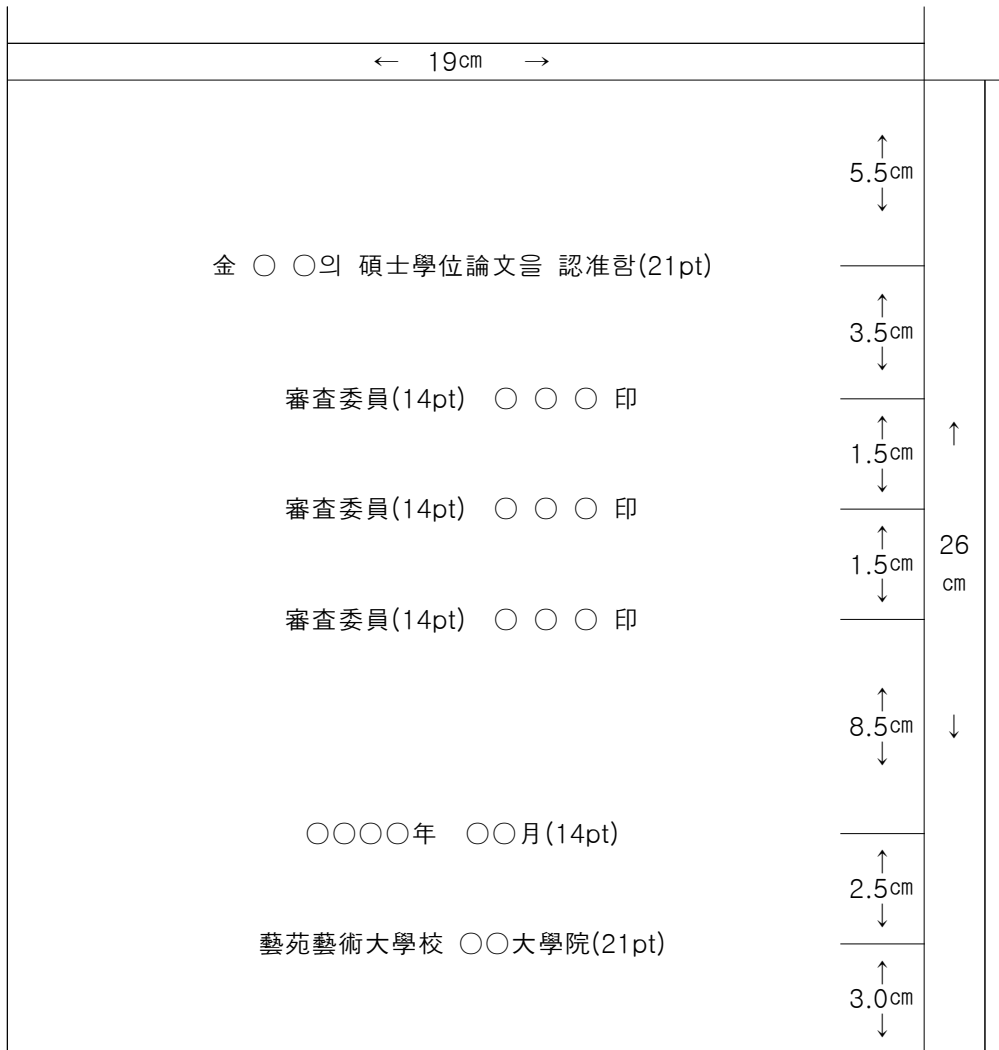
표지



속표지



인준서





### 감사의 글

← 19cm →		
↑ 3.5cm ↓	감사의 글(또는 謝辭) {14pt}	
↑ 2.0cm ↓	例示 {10pt} 本 論文을 提出하기까지 始終	
↑ 1.0cm ↓	아낌없이 보살펴 주신 指導教授 朴○○ 博士님께	
↑ 1.0cm ↓	衷心으로 感謝 드리며 .....	↑
↑ 1.0cm ↓	.....	26cm
↑ 1.0cm ↓	.....	↓
↑ 1.0cm ↓	.....	
↑ 1.5cm ↓	○○○○年 ○○月 {10pt}	
↑ 1.5cm ↓	金 ○ ○ {10pt}	
↑ 2.5cm ↓		

목차

예1	예2
ABSTRACT	ABSTRACT
제1장 _____	I. _____
제1절 _____	A. _____
1. _____	1. _____
가. _____	a. _____
(1) _____	(1) _____
(가) _____	(a) _____
① _____	① _____
참고문헌	참고문헌
부록	부록
색인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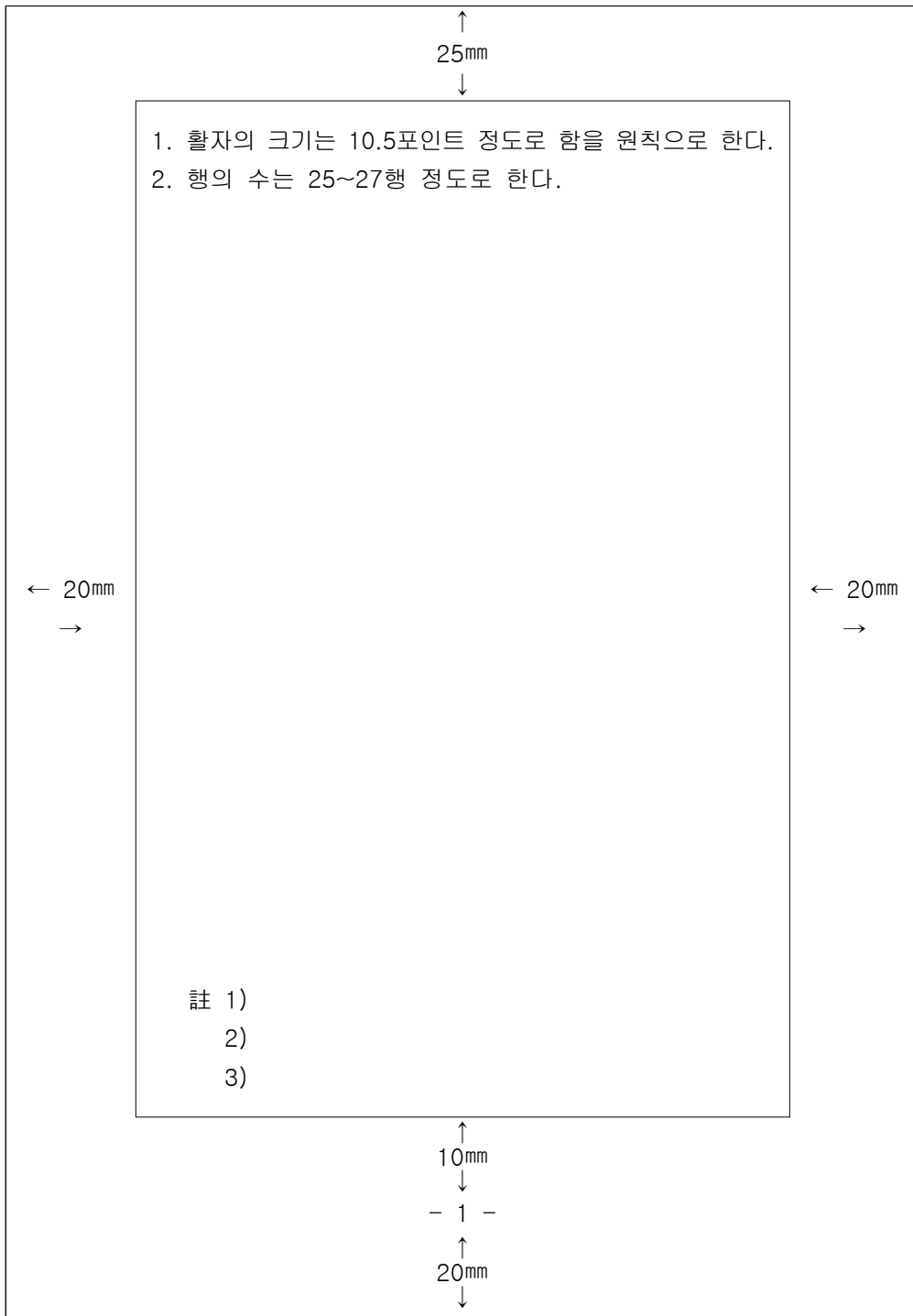
국문초록

← 19cm →		
論文題目(14pt)	↑ 3.5cm ↓	
金 ○ ○(10pt)	↑ 1.5cm ↓	
藝苑藝術大學校 ○○大學院(9pt)	↑ 1.5cm ↓	
○○學 專攻(9pt)	↑ 1.0cm ↓	↑ 26cm ↓
指導教授 朴 ○ ○(9pt)	↑ 1.5cm ↓	
요 약	↑ 1.5cm ↓	
본문 .....	↑ 1.0cm ↓	
.....	↑ 1.0cm ↓	
.....	↑ 1.0cm ↓	

영문초록

← 19cm →			
10pt	M.A.(M.S., ph.D) Thesis	↑ 2.0cm ↓	
14pt	study on the Estimation of Selection	↑ 2.0cm ↓	
14pt	Index in Broiler Breeder	double space	
10pt	Ye-Won Kim	↑ 2.0cm ↓	
10p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2 double space	↑
10pt	International Commerce	double space	26cm
10p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uble space	
10pt	Yewon arts University	double space	↓
10pt	(Advised by professor ○ ○ ○)	2 double space	
10pt	Abstact	2 double space	
10pt	The object of this study .....	double space	
10pt	.....	double space	

본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대 학 원		과 정		전 공	
성 명	한글:	한문 :	영문 :		
주 소					
연 락 처	E-MAIL :				
논 문 제	한글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예원예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예원예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 문화·영상창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문화·영상창업(이하 “대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3조(지원자격 및 지원서류)** ① 학칙 제12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4>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4조(입학전형)** 학칙 제13조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사업계획서 및 논술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은 모집인원의 50%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선발하고, 전형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4>

1. 창업보육센터매니저, 창업교육경험자 등 벤처 및 창업관련 업무종사(관련) 자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
3.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수상자(국가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경진대회 수상자)
4. 경영학 또는 문화영상 관련 석사학위 이상인 자
5. 100대 대기업 5년이상 근무 경력자 및 법인 기업체 부장급 이상 인사
6. 기타 대학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경력을 인정받은자

③ 입학전형 방법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12.4>

**제5조(면접고사위원)** 대학원장은 전공교수를 포함한 2명이상 5명 이내로 임명한다.

**제6조(배점 및 과락기준)** 입학전형의 과목별 배점과 과락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4>

- 1.서류전형 : 학사성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2.면접고사 : 100점 만점으로 하되 영어 및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시험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3.과락기준 : 학사성적 및 면접고사는 만점의 50%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제7조(합격자 확정)** 본 대학원의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이 확정된다.<개정 2013.12.4>

**제8조(합격자 등록)**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만 입학이 허가된다.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 이하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제10조(편입학)** ① 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로 하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이 확정된다.<개정 2013.12.4>

③ 편입학 대상자는 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편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소속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⑤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3. 타 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11조(등록의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 수업연한 경과후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2조(등록)**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내에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 : 등록금의 1/3
2. 6학점까지 : 등록금의 2/3
3. 7학점이상 : 등록금전액
4. 논문 지도 : 등록금의 1/6

**제13조(휴학)** ① 일반 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군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유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수업일수는 3/4선으로 한다.

1. 휴학원(소정양식) 1부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병원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3. 군입대 휴학일 때에는 입영통지서 1통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4. 서약서 (소정양식) 1부

②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입대휴학 기간을 만료한 자가 계속해서 일반휴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제14조(복학)** ①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매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예정자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소정양식) 1부
2. 학적부 1부



3. 군전역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제15조(자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장 수학년한, 수업, 전공의변경, 교과운영

**제16조(수학년한)** ① 수학년한은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으로 구분한다.

② 수업연한은 4학기(2년)로 한다.

③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하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업)** ① 수업은 매주 토요일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중수업 또는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수업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18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① 전과 및 동일계열 내에서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전과 및 전공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2학기초 1회에 한한다.

② 이 경우 이수과목의 학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동일교과목 학점만을 인정한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변경원(소정양식)
2. 신·구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4. 전공학점 인정서

**제19조(교과목편성의 원칙)** ① 모든 교과목은 대학원 학문수준과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학문적 체계에 맞도록 편성한다.

②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교과목의 학점수는 한 과목당 1~3학점 및 PASS제 편성 원칙으로 한다.

③ 창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은 국비지원 기관인 중소기업청의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④ 교과과정은 대학원 소속 교수가 협의하여 편성하고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20조(교과목의 변경)** 기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교수는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과목 개설)** ① 지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선정하여 매학기시작 1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교과목은 연2회 계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제22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개정 2013.12.4>
2. 각종 학술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대학원 학과(전공)교수회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한자

② 교과운영상 강사위족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매 학기시작 30일 전에 제출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업평가)**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강생들에게 수업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학기 수업설계에 참조하여 반영한다.

**제25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일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 과목변경)** ① 수강신청 후 교과목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② 폐강 등으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수정 입력하여야 하며 정정기간 만료로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청강)** 각 대학원생은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청강할 수 있다. 청강과목은 수강신청 시에 기재하고 성적평가는 “이수필”과 “이수미필”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28조(출석일)**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교과목은 F학점 처리된다.

② 출결사항에 대한 점검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③ 출석·공결운영지침에 의해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학업성적평가)**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 당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대학원학칙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학생은 부여받은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 시 성적정정신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0조(공동강의 및 재수강)** 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교 각 대학원 석사과정 간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② 성적 등급 C+(79점)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 과목이 2개 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3학기 이상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는 경우에 6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교과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 및 이에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2.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학위과정의 연계)** <삭제 2008.7.15.>

**제32조(보충과목의 이수)** <삭제 2008.7.15.>

**제33조(학점교류)** ① 학점교류를 원하는 자는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는 수업연한 기간 중 9학점, 학기당 3학점(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점교류는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점교류 허가원을 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해당학과(전공)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각 대학원의 학점인정)** 대학원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2학점 이내에서 소속대학원의 타 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5조(학기당 학점)** ① 매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따로 6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7.15.>

③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사업계획서(텍1)는 합격인 경우 Pass로 하고 'P' 평가한다.

④ 매 학기당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학이나,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4.><2014.12.1.>

학 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계
전공과목	9	9	6	6	30
연구과제(논문)	0	0	0	P	
계	9	9	6	6	30

⑤ 학위논문 면제과정을 선택한 경우 4학기차에 2과목(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⑥ 학위논문 과정 입학자가 학위논문 면제과정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취득성적의 포기)** ① 취득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9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별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취득학점 포기신청서를 대학원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제37조(외국어시험) <삭제 2008.7.15>**

**제38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응시 자격은 3학기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B(3.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면제과정의 경우, 4학기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B(3.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2.1>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1회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은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시험까지 그 과목을 합격으로 한다.

⑥ 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에서 출강한 교원 중 각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수료) ①** 수업년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학업성적은 전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장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제40조(논문(사업)계획서 제출)** 논문(사업)계획서는 논문제출 1학기(6개월)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사업)계획서 변경)** 학위신청논문은 논문(사업)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2개월 이전에 학위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위논문작성계획서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학위신청 논문(사업계획서)제출)** 학위신청을 위한 심사용 논문(사업계획서)은 소정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심사용 논문(사업계획서)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논문(사업계획서)제출자격) ①** 학위신청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연구과제포함)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석사학위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3. 논문(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6개월)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재학년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석사학위청구는 논문 또는 사업계획서 중 택 1하여 제출한다.

**제43조의2(논문(사업계획서)제출시기)** 학위신청논문 제출 시기는 년 2회로 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조선설 2013.12.4>

**제44조(제출서류)** 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각1부씩을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신청논문 제출원
2. 학위신청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제45조(논문의 반환)** 학위신청논문 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 지도교수는 교원 중에서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④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3.12.4>

**제47조(심사위원장)** ①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가 완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석사학위 신청논문 심사요지서(소정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48조(심사정족수)** 석사학위신청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

**제49조(심사위원교체금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일 때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50조(논문심사 구분)**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 대상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개요서 4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논문(사업계획서)발표회를 가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판정은 “가”, “부”로 한다.)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본 심사 및 구술시험)** ① 본 심사 대상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심사위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로 한다)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평가는 심사위원별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통과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병행하며, 평가는 심사위원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3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 요지서
2. 구술시험 결과보고서

② 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석사 학위과정의 수료자로서 확정한다.

**제54조(학위논문의 제출)** ① 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위논문(작품도록집 포함)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이 날인한 2부를 포함하여 9부(하드2, 소프트7)를 디스켓 혹은 CD(지도교수가 제출된 논문과 동일함을 확인)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 맨 끝 장에 저작물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55조(논문의 구성)** 학위신청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표지(별지 제1호 서식)
2. 백지
3. 속표지(별지 제2호 서식)
4.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
5. 감사의 글(별지 제4호 서식)-필요한 경우
6. 목차(별지 제5호 서식), 내용목차, 표목차, 도(사진)목차
7. 초록(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
8. 본문(별지 제8호 서식)
9. 참고자료 및 문헌
10. 부록

11. 저작물 이용 허락서(별지 제9호 서식)

**제56조(논문작성용어 및 초록)** ① 논문작성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② 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 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때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 요약 2페이지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논문의 규격 등)** 학위논문의 규격, 지질, 인쇄, 제본 등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한국산업규격 5판(182cm x 257cm)
2. 지질 : 백색 모조지 70파운드 이상
3. 인쇄 : 전산사식(공판 또는 활판 가능)횡서 인쇄
4. 제본 : 병제(하-드 및 소프트 카바)

**제58조(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수여)** ① 4학기를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이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논문 면제과정에서 4학기 등록 및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3.12.4><개정 2014.11.18>

② 학위기 수여는 대학원학칙 제34조 제1항에 의한다.

## 제 6 장 학년별 지도교수·논문지도 교수

**제59조(지도교수임명)** ① 본 대학원의 학년별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60조(지도교수의 직무)** 학년별 지도교수는 당해 학년의 교과목 설정, 논문지도교수와 개인별 지도위원 제청, 본 대학원에 관련된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61조(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당해 학과(전공)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타 대학원의 전임교원 또는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4>

**제62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공동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가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파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지도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및 일정기간 동안 타 전공분야의 연구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우리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서 우리대학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논문에는 공동 지도교수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에서 공동지도교수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64조(논문지도학생의 제한)** 교수 1인당 1학기에 논문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위신청 심사논문 제출시를 기준하여 3명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5조(논문지도교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 개강직후에 당해 학생의 의견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대학원 소속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66조(지도교수의 직무)** 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당해 학생의 학사지도
3. 논문심사위원 제청

**제67조(논문지도)** 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되 15주간으로 한다.

**제68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비는 대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7 장 학생활동, 장학금

**제69조(학생활동)** ① 대학원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는 학생자치기구로 대학원생을 대표한다.

③ 원우회 또는 학생이 대학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장학금의 지급)**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4>

1. 성적장학금
2. 특별장학금
3. 공로장학금
4. 창업·벤처장학금
5. 산학장학금
6. 재직장학금
7. 교직원 가족장학금

**제71조(성적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성적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4>

**제72조(특별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에게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3조(공로장학금)** 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는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창업·벤처장학금)** ① 본 대학원 재학 중 전공분야의 벤처기업 아이템을 사업화하여 창업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국규모 문화예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와 교내 각종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창업·벤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산학장학금)** 학생활동에 타의 모범이 되고 인턴쉽, 현장연구 활동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산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재직장학금)** 예원예술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7조(교직원 가족장학금)** 예원예술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8조(지급의 기준)**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정상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인 1종의 장학금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9조(지급의 시기)** 각종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0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2.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3. 대학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4. 기타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제 8 장 창업전문가과정, 위탁생 <장이동 2013.12.4>

**제81조(창업전문가과정)** 본 대학원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전문가 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

**제82조(창업전문가과정 지원)** 창업전문가과정 지원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석사학위전형과정에 탈락한 자는 별도의 원서와 전형료를 내지 않고 의사표시로 지원할 수 있다.

**제83조(창업전문가과정 인원)** 창업전문가과정 인원은 석사학위과정 총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제84조(창업전문가합격자 확정)** 대학원의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이 확정된다.

**제85조(창업전문가합격자 등록)**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입학이 허가된다.

- 제86조(창업전문가과정생)** ① 창업전문가과정은 산학연계를 통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창업전문가과정생의 수강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창업전문가과정생의 수강과목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창업전문가과정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7조(위탁생)**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다.

## 제 9 장 보 칙

**제88조(준 용)** 이 학사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7.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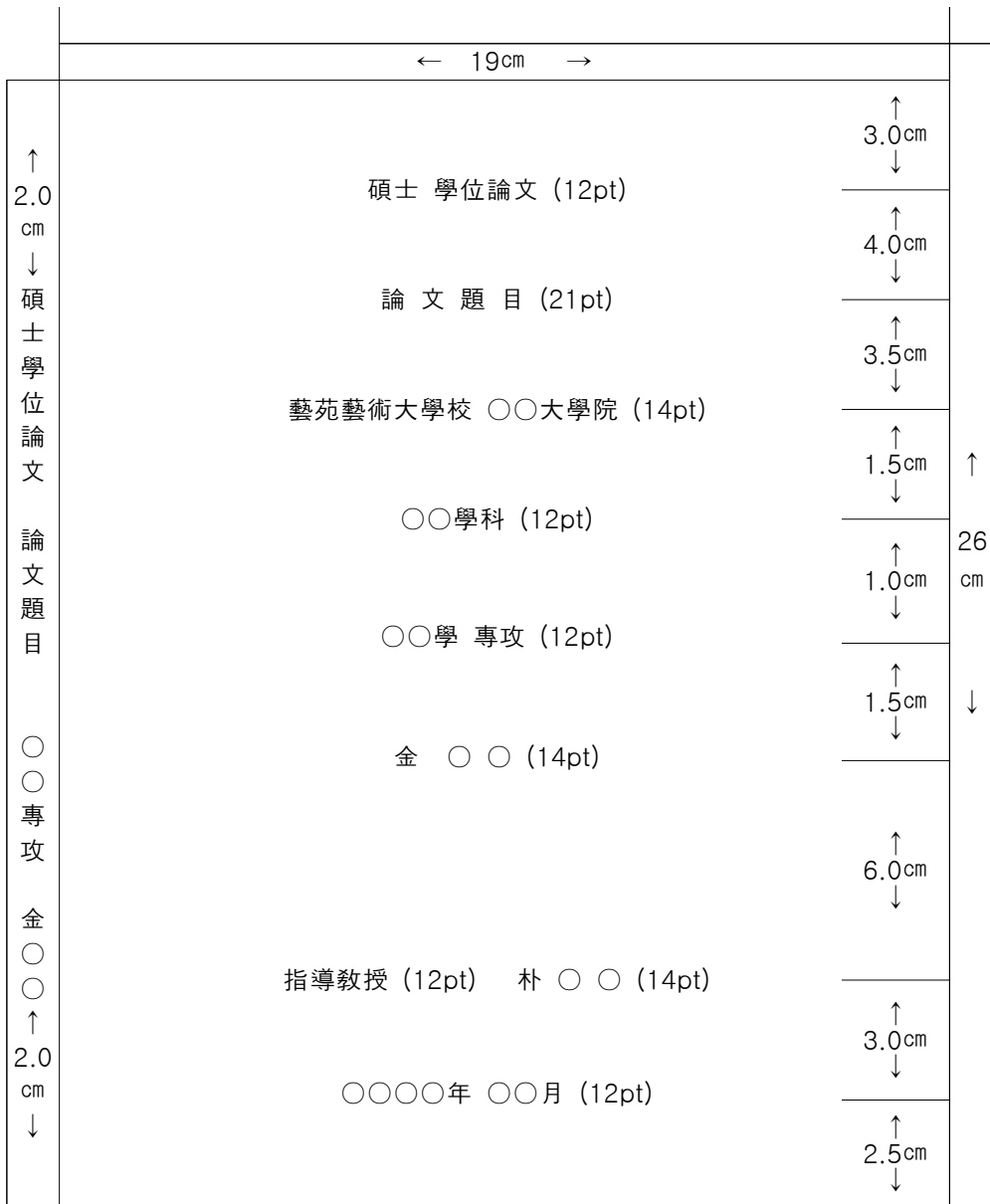
부 칙(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지





속표지

← 19cm →		
碩士學位論文 (12pt)	↑ 3.0cm ↓	
論文題目 (21pt)	↑ 4.0cm ↓	
指導教授 (12pt) 朴 ○ ○ (14pt)	↑ 3.5cm ↓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4pt)	↑ 4.0cm ↓	26cm
○○○○年 ○○月 ○○日 (12pt)	↑ 3.5cm ↓	↓
藝苑藝術大學校 ○○大學院 (14pt)	↑ 3.0cm ↓	
○○學 專攻 (12pt)	↑ 1.0cm ↓	
金 ○ ○ (14pt)	↑ 1.5cm ↓	
	↑ 2.5cm ↓	

# 인준서



## 감사의 글

← 19cm →		
↑ 3.5cm	↓	
감사의 글(또는 謝辭) (14pt)		
↑ 2.0cm	↓	
例示 (10pt) 本 論文을 提出하기까지 始終		
↑ 1.0cm	↓	
아낌없이 보살펴 주신 指導教授 朴○○ 博士님께		
↑ 1.0cm	↓	↑
衷心으로 感謝 드리며 .....		
↑ 1.0cm	↓	26cm
.....		
↑ 1.0cm	↓	↓
.....		
.....		
↑ 1.5cm	↓	
○○○○年 ○○月 (10pt)		
↑ 1.5cm	↓	
金 ○ ○ (10pt)		
↑ 2.5cm	↓	

## 목차

예1	예2
ABSTRACT	ABSTRACT
제1장 _____	I. _____
제1절 _____	A. _____
1. _____	1. _____
가. _____	a. _____
(1) _____	(1) _____
(가) _____	(a) _____
① _____	① _____
참고문헌	참고문헌
부록	부록
색인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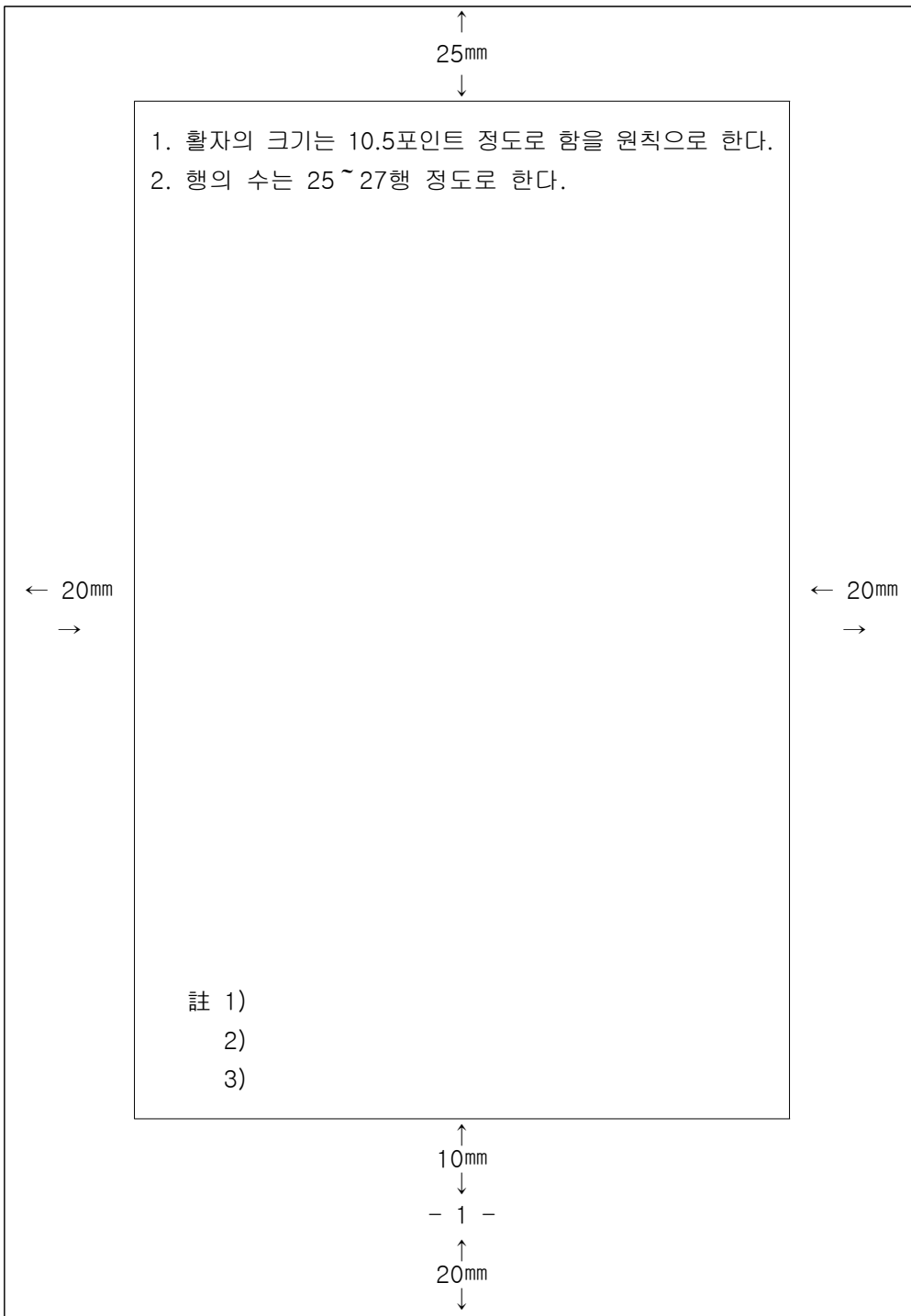
# 국문초록

← 19cm →	
論文題目(14pt)	↑ 3.5cm ↓
金○○(10pt)	↑ 1.5cm ↓
藝苑藝術大學校 ○○大學院(9pt)	↑ 1.5cm ↓
○○學 專攻(9pt)	↑ 1.0cm ↓
指導教授 朴○○(9pt)	↑ 1.5cm ↓
요 약	↑ 1.5cm ↓
본문 .....	↑ 1.0cm ↓
.....	↑ 1.0cm ↓
.....	↑ 1.0cm ↓
↑ 26 cm ↓	

영문초록

← 19cm →			
10pt	M.A.(M.S., ph.D) Thesis	↑ 2.0cm ↓	
12pt	study on the Estimation of Selection	↑ 2.0cm ↓	
12pt	Index in Broiler Breeder	double space	
10pt	Ye-Won Kim	↑ 2.0cm ↓	
10p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2 double space	↑
10pt	International Commerce	double space	26cm ↓
10p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uble space	
10pt	Yewon arts University	double space	
10pt	(Advised by professor ○ ○ ○)	2 double space	
10pt	Abstact	2 double space	
10pt	The object of this study .....	double space	
10pt	.....	double space	

## 본문



[별지 제9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서]

## 저작물 이용 허락서

대 학 원		과 정		전 공	
성 명	한글:	한문 :	영문 :		
주 소					
연 락 처	E-MAIL :				
논 문 제	한글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예원예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예원예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 사회복지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사회복지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3조(지원자격 및 지원서류)** ① 학칙 제12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4조(입학전형)** 학칙 제13조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전형은 서류전형, 면접고사로 전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점수의 가산점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위 석사학위과정의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포함)의 교원(겸임교원포함), 연구소, 관공서,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특정직위,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입학전형 방법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면접고사위원)** 대학원장은 전공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배점 및 과락기준)** 입학전형의 과목별 배점과 과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전형 : 학사성적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면접고사 : 100점 만점으로 하되 영어 및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 시험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락기준 : 학사성적 및 면접고사는 만점의 50%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제7조(합격자 확정)** 본 대학원의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이 확정된다.

**제8조(합격자 등록)**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만 입학이 허가된다.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 이하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제10조(편입학)** ① 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로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이 확정된다.
- ③ 편입학 대상자는 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 ④ 편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 ⑤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3. 타 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11조(등록의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 수업년간 경과후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2조(등록)**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내에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3학점까지 : 등록금의 1/3
2. 6학점까지 : 등록금의 2/3
3. 7학점이상 : 등록금전액
4. 논문 지도 : 등록금의 1/6

**제13조(휴학)** ① 일반 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군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유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수업일수는 3/4선으로 한다.

1. 휴학원(소정양식) 1부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병원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3. 군입대 휴학일 때에는 입영통지서 1통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4. 서약서 (소정양식) 1부

②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입대휴학 기간을 만료한 자가 계속해서 일반휴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제14조(복학)** ①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매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예정자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소정양식) 1부
2. 학적부 1부
3. 군전역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제15조(자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장 수학년한, 수업, 전공의변경, 교과운영

**제16조(수학년한)** ① 수학년한은 수업년한과 재학연한으로 구분한다.

② 수업연한은 4학기(2년)로 한다.

③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8.9.10.>

**제17조(수업)** ① 수업은 상시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주·야간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제18조(학과 및 전공의 변경)** ① 전과 및 동일계열 내에서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전과 및 전공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2학기 초 1회에 한한다.

② 이 경우 이수과목의 학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동일교과목 학점만을 인정한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변경원(소정양식)
2. 신·구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4. 전공학점 인정서

**제19조(교과목편성의 원칙)** ① 모든 교과목은 대학원 학문수준과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학문적 체계에 맞도록 편성한다.

②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20조(교과목의 변경)** 기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과목 개설 및 취소)** ①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선정하여 매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설교과목 중 수강신청 학생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된다. 다만, 학과별 학생수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 개설된 교과목 중 타 학과(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만을 개설한다.

④ 동일 교과목은 연2회 계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제22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개정 2013.12.4>
2. 각종 학술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대학원 학과(전공)교수회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한자

② 교과운영상 강사위촉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학과(전공)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매 학기 시작 30일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담당 교과목의 제한)** 본 대학원의 담당 교과목수는 매학기 각 교수 당 1과목(연구과제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담당 교과목을 초과할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는 그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일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 과목변경)** ① 수강신청 후 교과목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② 폐강 등으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수정 입력하여야 하며 정정기간 만료로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학수제한) (삭제)**

**제28조(출석일)**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교과목은 F학점 처리된다.

② 출결사항에 대한 점검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제29조(학업성적평가)**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 당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대학원학칙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공동강의 및 재수강)** 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교 각 대학원 석사과정 간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② 성적 등급 C+(79점)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 과목이 2개 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3학기 이상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는 경우에 6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교과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 및 이에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2.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부 4학년 학생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의 학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2조(보충과목의 이수)** 타 전공출신자는 학부(대학)에서 2과목 이상(6학점)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학점교류)** ① 학점교류를 원하는 자는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는 수업연한 기간 중 9학점, 학기당 3학점(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점교류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점교류 허가원을 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해당학과(전공)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각 대학원의 학점인정)** 대학원 재학생은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2학점 이내에서 소속대학원의 타 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35조(학기당 학점)** ① 매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따로 6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② 대학원학칙 제23조 제1항의 24학점 중 공통과목 6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2.4.><2014.12.1>

③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대상 학생은 교과목학점 이외에 연구과제(논문)를 이수하여야 하며 합격인 경우 Pass로 하고 'P' 평가한다.

④ 매 학기당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학이나,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1>

학 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계
전공과목(공통과목)	9	9	6	6(면제과정)	30
연구과제(논문)	0	0	0	P	(면제과정 포함)
계	9	9	6	6	

⑤ 학위논문 면제과정을 선택한 경우 4학기차에 2과목(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⑥ 학위논문 과정 입학자가 학위논문 면제과정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취득성적의 포기)** ① 취득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9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별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취득학점 포기신청서를 대학원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제37조(외국어시험) (삭제)**

**제38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응시 자격은 3학기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B(3.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면제과정의 경우, 4학기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B(3.0)이상이어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1회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된 과목은 재 응시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출제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주관한다.

**제39조(수료)** ① 수업년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학업성적은 전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장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제40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계획서는 논문제출 1학기(6개월)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계획서 변경)** 학위신청논문은 논문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2개월 이전에 학위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학위신청 논문제출)** 학위신청을 위한 심사용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심사용 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논문제출자격)** 학위신청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연구과제포함)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석사학위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3.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6개월)이상 논문지도교수를 받은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재학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4조(논문제출시기)** 학위신청논문 제출시기는 년2회로 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

**제45조(제출서류)** 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각1부씩을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신청논문 제출원
2. 학위신청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제46조(논문의 반환)** 학위신청논문 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 지도교수는 교원 중에서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과(전공)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④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8조(심사위원장)** ①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가 완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석사학위 신청논문 심사요지서(소정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49조(심사정족수)** 석사학위신청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

**제50조(심사위원교체금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일 때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51조(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과 논문주제의 학술적 가치 및 타당성, 내용구성의 체계성 등의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실시한다.

1. 학위논문심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심사는 심사위원장 주관하에 3회 행하되, 그 중 1회는 논문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회 혹은 전시회의 경우, 공개발표(전시)후 1회 심사로써 마감한다.
3. 심사시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번역본, 모형 또는 기타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4. 심사용 논문이 이미 제출된 논문작성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논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내용이면서 논제가 수정된 것은 무관하나, 논문의 연구분야가 논문작성계획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심사에 합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학위신청논문 작성계획변경원을 제출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5.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구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6. 최종심사에서는 지적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학위논문으로서의 내용과 체재를 갖추었는지 판별하여 논문심사 합격을 결정한다.
7. 학위논문심사에 불합격한자는 재학 연한 내에 재 제출할 수 있다.
8. 기타 학위논문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2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본 심사와 병행 또는 논문심사 종료 후에 행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과 연관된 광범하고 심오한 전문적 지식 및 학위를 받는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행한다.

③ 논문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1학기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다시 구술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격하면 학위논문의 합격판정이 취소된다.

**제53조(합격판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성적은 대학원 학칙 제24조에 정한 등급으로 표시하되, 각각 C 등급 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위원 3분의2 이상의 통과로서 합격을 결정한다.

**제54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 요지서
2. 구술시험 결과보고서

② 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석사 학위과정의 수료자로서 확정한다.

**제55조(학위논문의 제출)** ① 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위 논문(작품도록집 포함)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이 날인한 2부를 포함하여 9부(하드2, 소프트7)를 디스켓 혹은 CD(지도교수가 제출된 논문과 동일함을 확인)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 맨 끝 장에 저작물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56조(논문의 구성)** 학위신청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표지(별지 제1호 서식)
2. 백지
3. 속표지(별지 제2호 서식)
4.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
5. 감사의 글(별지 제4호 서식)-필요한 경우
6. 목차(별지 제5호 서식), 내용목차, 표목차, 도(사진)목차
7. 초록(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
8. 본문(별지 제8호 서식)
9. 참고자료 및 문헌
10. 부록
11. 저작물 이용 허락서(별지 제9호 서식)

**제57조(논문작성용어 및 초록)** ① 논문작성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② 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 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때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 요약 2페이지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논문의 규격 등)** 학위논문의 규격, 지질, 인쇄, 제본 등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한국산업규격 5판(182cm x 257cm)
2. 지질 : 백색 모조지 70파운드 이상
3. 인쇄 : 전산사식(공판 또는 활판 가능)황서 인쇄
4. 제본 : 병제(하-드 및 소프트 카바)

**제59조(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수여)** ① 4학기를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이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논문 면제과정에서 4학기 등록 및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기 수여는 대학원학칙 제34조 제1항에 의한다.

## 제6장 학과(전공) 주임교수·논문지도 교수

**제60조(주임교수임명)**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61조(주임교수의 직무)**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교과목 설정, 논문지도교수와 개인별 지도위원 제청, 본 대학원에 관련된 학과(전공)교수회의 주관 및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62조(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당해 학과(전공)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타 대학원의 전임교원 또는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63조(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 구성)** 학위논문제출과정의 경우, 대학원장은 학생이 교과학점을 9학점 이상 이수하면 본교의 교원 중 2인 이상을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된다.

**제64조(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직무)**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담당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담당학생의 학사지도
3. 담당학생의 학위신청논문 심사

**제65조(논문지도학생의 제한)** 교수 1인당 1학기에 논문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위신청 심사논문 제출시를 기준하여 3명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6조(논문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2학기 개강 직후에 당해 학생의 의견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에게 위임하고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67조(지도교수의 직무)** 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당해 학생의 학사지도
3. 논문심사위원 제청

**제68조(논문지도)** 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되 15주간으로 한다.

**제69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비는 3명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지도 교수는 1/2씩 지급한다.

## 제7장 장학금

**제70조(장학금의 지급)**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장학금<개정 2012.2.1.>
2. 특별장학금
3. 공로장학금
4. 재직장학금
5. 교직원 가족장학금

**제71조(입학성적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입학성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특별 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에게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3조 (공로장학금)** 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는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재직장학금)** 예원예술대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 교직원에게는 개인별 등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재직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5조(교직원 가족장학금)**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지급의 기준)**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정상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인 1종의 장학금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7조(지급의 시기)** 각종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2.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3. 대학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4. 기타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제8장 보칙

**제79조(준 용)** 이 학사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0.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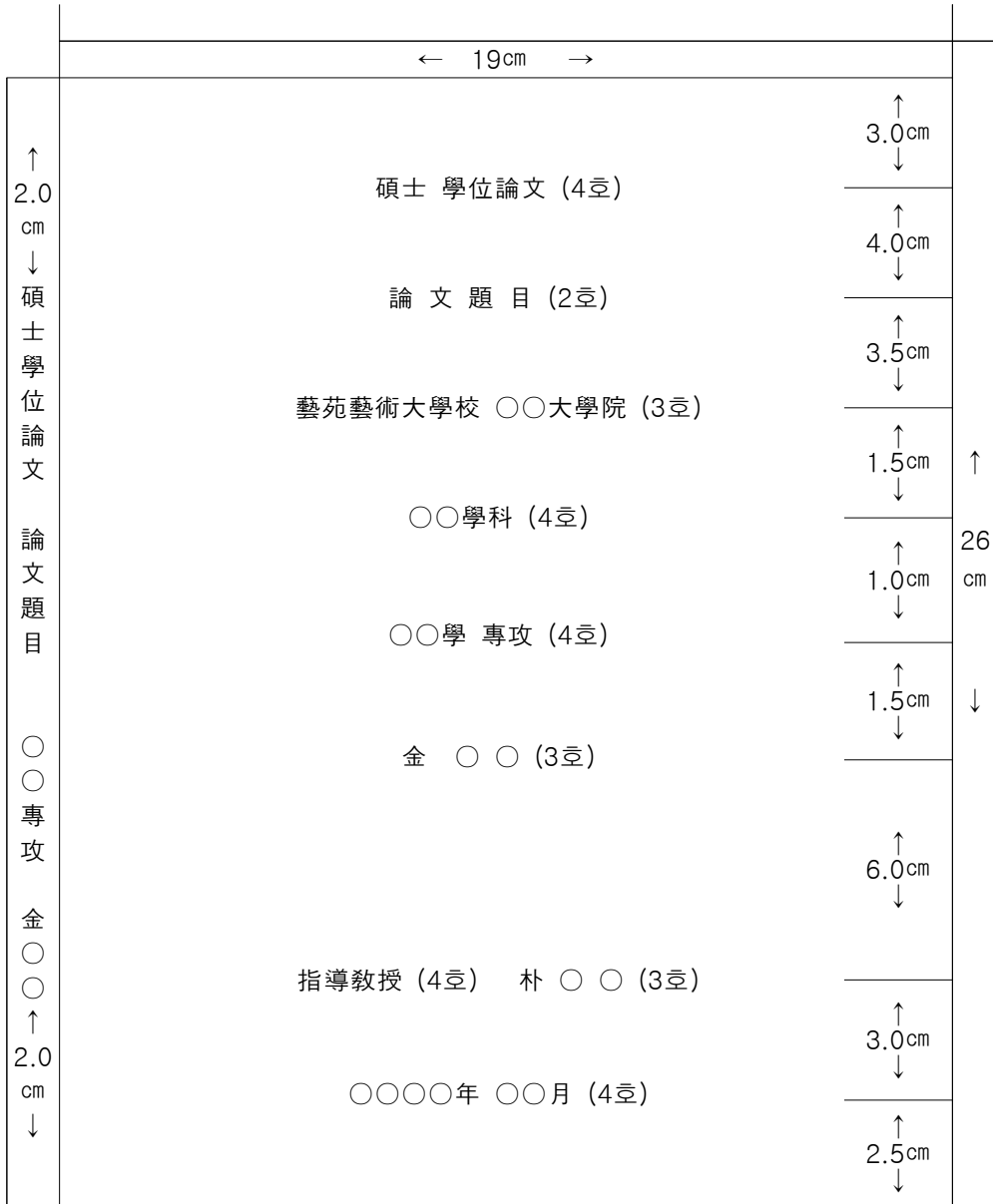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표지



속표지

← 19cm →		
碩士學位論文 (4호)	↑ 3.0cm ↓	
論文題目 (2호)	↑ 4.0cm ↓	
指導教授 (4호) 朴 ○ ○ (3호)	↑ 3.5cm ↓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3호)	↑ 4.0cm ↓	26cm
○○○○年 ○○月 ○○日 (4호)	↑ 3.5cm ↓	↓
藝苑藝術大學校 ○○大學院 (3호)	↑ 3.0cm ↓	
○○學 專攻 (4호)	↑ 1.0cm ↓	
金 ○ ○ (3호)	↑ 1.5cm ↓	
	↑ 2.5cm ↓	

인준서

← 19cm →		
金 ○ ○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2호)	↑ 5.5cm ↓	
審査委員(3호) ○ ○ ○ 印	↑ 3.5cm ↓	
審査委員(3호) ○ ○ ○ 印	↑ 1.5cm ↓	↑
審査委員(3호) ○ ○ ○ 印	↑ 1.5cm ↓	26 cm
○○○○年 ○○月(3호)	↑ 8.5cm ↓	↓
藝苑藝術大學校 ○○大學院(2호)	↑ 2.5cm ↓	
	↑ 3.0cm ↓	

### 감사의 글

← 19cm →		
↑ 3.5cm ↓	감사의 글(또는 謝辭) {14pt(공판 4호)}	
↑ 2.0cm ↓	例示 {10pt(공판 5호)} 本 論文을 提出하기까지 始終	
↑ 1.0cm ↓	아낌없이 보살펴 주신 指導教授 朴○○ 博士님께	
↑ 1.0cm ↓	衷心으로 感謝 드리며 .....	↑
↑ 1.0cm ↓	.....	26cm
↑ 1.0cm ↓	.....	↓
↑ 1.0cm ↓	.....	
↑ 1.5cm ↓	○○○○年 ○○月 {10pt(공판 5호)}	
↑ 1.5cm ↓	金 ○ ○ {10pt(공판 5호)}	
↑ 2.5cm ↓		

목차

예1	예2
ABSTRACT	ABSTRACT
제1장 _____	I. _____
제1절 _____	A. _____
1. _____	1. _____
가. _____	a. _____
(1) _____	(1) _____
(가) _____	(a) _____
① _____	① _____
참고문헌	참고문헌
부록	부록
색인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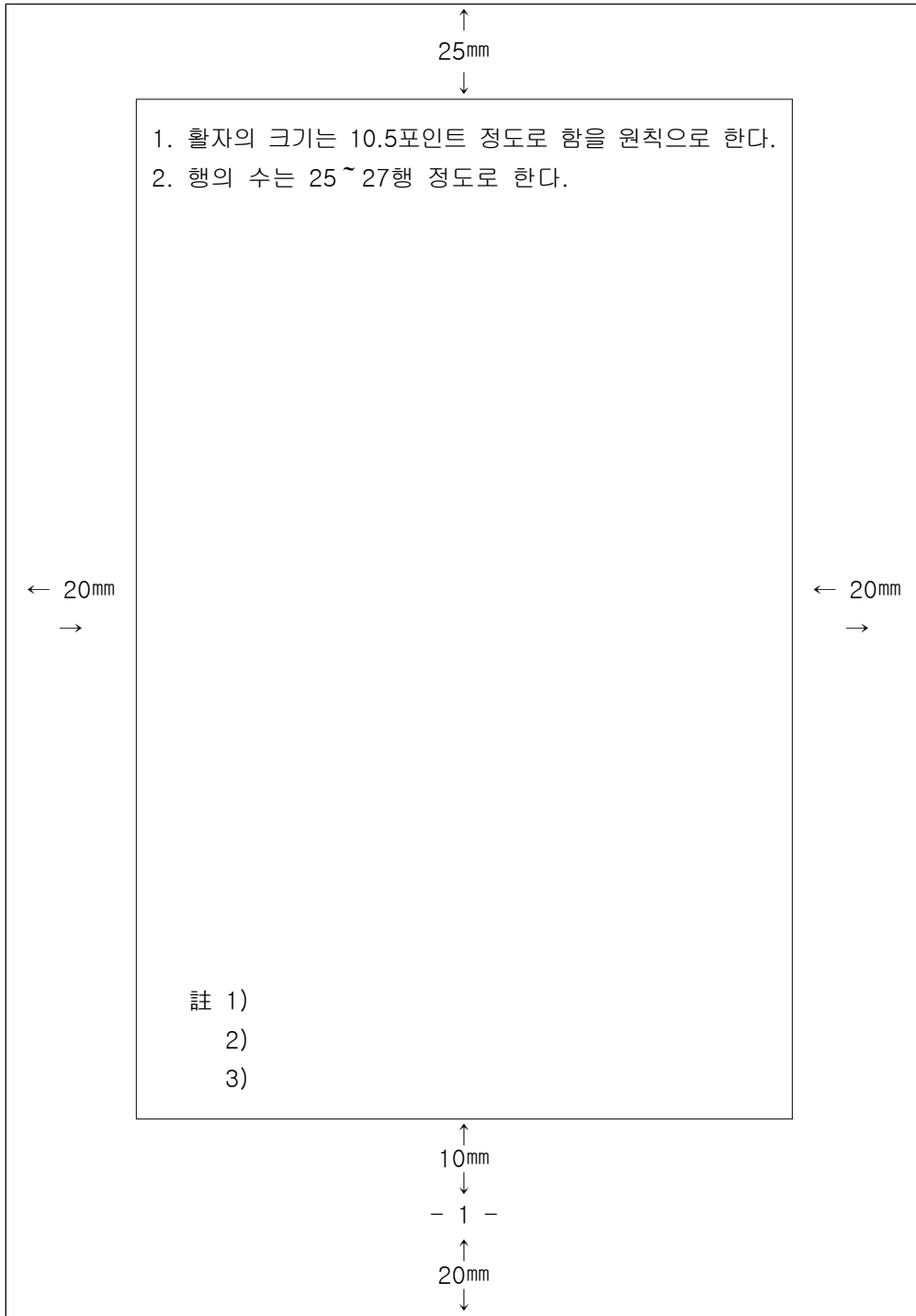
국문초록

← 19cm →		
論文題目(14pt)	↑ 3.5cm ↓	
金 ○ ○(10pt)	↑ 1.5cm ↓	
藝苑藝術大學校 ○○大學院(9pt)	↑ 1.5cm ↓	
○○學 專攻(9pt)	↑ 1.0cm ↓	↑ 26 cm ↓
指導教授 朴 ○ ○(9pt)	↑ 1.5cm ↓	
요 약	↑ 1.0cm ↓	
본문 .....	↑ 1.0cm ↓	
.....	↑ 1.0cm ↓	
.....	↑ 1.0cm ↓	

영문초록

← 19cm →			
10pt(공판 5호)	M.A.(M.S., ph.D) Thesis	↑ 2.0cm ↓	26cm ↑ ↓
14pt(공판 4호)	study on the Estimation of Selection	↑ 2.0cm ↓	
14pt(공판 4호)	Index in Broiler Breeder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Ye-Won Kim	↑ 2.0cm ↓	
10pt(공판 5호)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2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International Commerce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Yewon arts University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Advised by professor ○ ○ ○)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Abstact	2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The object of this study .....	2 double space	
10pt(공판 5호)	.....	double space	

본문





### 저작물 이용 허락서

대 학 원		과 정		전 공	
성 명	한글:	한문 :	영문 :		
주 소					
연 락 처	E-MAIL :				
논 문 제 목	한글 :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예원예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예원예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 국내·외 대학(원)에서의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의한 본교 대학원 또는 국내·외 타 대학(원)(이하“교류대학”이라 한다)에서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대학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해 이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류학점의 범위는 본교와 학생 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원)에 한한다. 단, 본교와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원)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한 대학(원)은 포함한다.

② 전항의 대학(원)에는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제3조(구분)**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교 대학원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원)(이하“국내대학”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 이수
2.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원)(이하“외국대학”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 이수
3. 외국대학에서의 단기연수(이하 “단기연수”라 한다)에 의한 교과목 이수
4. 해외캠퍼스 파견 프로그램에 따른 해외어학실습수업에 의한 교과목 이수

**제4조(신청자격)**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통사항
  - 가. 본교에서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다.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라. 취득성적이 총 평점평균 B(3.0) 이상인 자
2.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이수
  - 가.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신청 및 선발절차)** ① 국내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공주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지원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④ 전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부(과)별 단기연수)** 학생선발, 인원, 기간, 비용, 출국수속 등 필요한 사항을 학부(과)에서 주관하며, 외국대학에서의 연수실시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교학지원처를 경유하여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류대학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교류대학이 국내 대학인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교류대학 수학계획서를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거쳐 교학지원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교 교학지원처에 수강과목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본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9조(전과목 이수의 포기)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강기간)** ① 교류대학에서의 수강기간은 재학 중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방학기간 중의 계절학기 및 외국대학에서의 단기연수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취득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학위연계과정을 이수 중인 자 또는 우리대학의 성

적평가 이전에 학점인정을 완료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단기연수 기간은 4주 이상 또는 시수로 9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1.13>

④ 수강기간 중 본교 총장의 허가 없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⑤ 국제교류교육원은 외국대학에 교류학생으로 선발 또는 취소 된 자는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류대학에 파견되어 교과목이수 중인 학생은 파견기간 중 본교 정규 및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국내 학점교류 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9조(학점인정)** ① 교류대학의 학기가 종료되었거나 수강기간이 만료되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신청서를 국내대학은 교학지원처에, 외국대학은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교류교육원은 전항에 의해 제출된 학점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에 전달하여야 하며 교학지원처장은 이를 해당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에게 전달하고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전항에 의해 교학지원처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학점인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학지원처에서는 전항에 의해 제출된 학점인정조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성적 실 점수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류대학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실점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국내 교류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에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1개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외국대학에서의 단기 연수에 의한 교과목이수와 국내대학의 계절학기 수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수의 범위내로 한다.

⑥ 인정과목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교육과정에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인정과목의 배점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배점을 준용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류학생의 의무)** ① 교류학생은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전액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교류대학에서의 학점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단기연수 수 학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8조의 수강기간 중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지도)** 교류학생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협약과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과 교류대학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교류대학과 체결한 협약과 상치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08.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휴학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의거 휴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학의 구분)**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한다.

**제3조(휴학의 절차)**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합당한 사유를 기록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휴학의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을 할 수 있다.

① 일반휴학

1.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1선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할 때(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2. 미등록자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계곤란의 구체적 사유 및 입증 자료 첨부)
3. 직장인으로 통학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의 지역으로 전보되었을 경우(재직증명서 및 입증 자료 첨부)
4.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학허가서 등 증빙서류 첨부)
5. 9학기 이상 재수강자로 해당 학기에 설강과목이 없을 경우 (학부(과)장의 확인서 첨부)

② 군입대휴학 : 군 의무 복무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일반휴학 중인 자는 반드시 군 휴학으로 변경, 등록마감일 이후 입대자는 등록을 필한 자 : 현역병 입영통지서 첨부)

③ 특별휴학 :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휴학이 만료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3.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총장이 휴학을 권고한 자

**제5조(휴학의 기간)** 휴학의 기간은 휴학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휴학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① 일반휴학 : 1회에 1년(2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 소멸시 6월(1학기)로 단축할 수 있다. 단, 9학기 이상 재수강자의 휴학기간은 6월(1학기)로 한다.

② 군입대휴학 : 군 의무 복무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휴학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 소멸 시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휴학원 제출시기)** 휴학원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기 중(방학 중 제외) : 질병, 돌발적인 사고 등

② 등록기간 내 : 가사, 유학 및 어학연수

③ 연중 수시

1. 일반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허가)
2. 군 휴학자 : 학기 중에는 입대일 14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마감일 이후 입대자는 등록을 필한 자
3. 직장인 근무지 변경

**제7조(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은 군 입대 휴학만 허가하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과 9학기 이상 재수강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등록마감일 이후 미등록자는 휴학원을 제출할 수 없다. (군 입대자 포함)

**제8조(귀향신고 및 학적변동)** 군 입대로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학적 변동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군입대 휴학한 학생은 일반 휴학으로,
2.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한 학생은 군입대 휴학으로,
3. 수업일수 부족자 또는 미등록자가 등록기일 경과로 등록이 불가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제9조(휴학자의 성적인정)** ① 중간고사를 필한 후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휴학하는 자 중 해당 학기 성적이수를 원하는 자는 조기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휴학원 접수일로부터는 휴학기간이 진행되므로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조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 접수일 2주전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금 인정)** 휴학당시의 학기를 이수한 자는 복학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이수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3조(계획서의 제출)** 졸업논문 심사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 졸업실기(작품)발표 계획서, 졸업연주발표계획서, 졸업종합시험계획서를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을 거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연구)**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제)** ① 논제는 반드시 소속 학부(과)의 전공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 논제의 선정은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소속 학부(과)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은 학기초 15일 이내에 전공을 감안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③ 학부(과)장은 위촉한 지도교수 명단을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를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연주의 지도교수를 위촉하지 않을 경우 전공주임교수 책임 하에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제출 시기)** 논문은 지정된 규격 및 서식에 맞추어 10월말(후기 졸업자는 5월말)까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및 심사)**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명의 전임교원이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결정 하되, 전공주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위원은 학부(과)장이 선임하여 교무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논문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합·부 판정은 심사위원이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부로 한다.

**제9조(실기심사)** ① 실기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학부(과)인 경우 학부(과)장은 주제, 장소 및 심사위원등 필요한 사항을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실기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성적 평균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심사 결과 보고)** 학부(과)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졸업예정자 졸업심사결과표에 따라 11월말(또는 6월말)까지 교학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심사 결과 조치)**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만을 수여한다.

② 논문심사가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37조에 의한 졸업을 인정하되 그 시기는 논문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12조(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졸업소요 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합격된 자가 졸업 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격을 1년간 인정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제14조(논문대치)** 논문 이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과하는 학부(과)일지라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5조(보관)** 졸업논문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졸업종합고사)** ① 졸업 종합시험의 실시 시기는 매년 10월중(후기 졸업자는 5월중)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과목은 각 학부(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5과목 이상을 출제하며 각 과목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졸업종합시험의 채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점 이하를 과목낙제로 하며, 성적평가는 전 과목 성적의 평균치로 하고, 성적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졸업종합시험과목 중 2과목 이하의 과목이 낙제일 경우 1회에 한하여 낙제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으며, 3과목 이상의 과목이 낙제일 경우에는 전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하여야 한다.

⑤ 졸업 종합시험을 실시하는 학부(과)의 학부(과)장은 졸업 종합시험 실시 후 졸업예정자 종합시험성적집 계표를 작성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졸업 종합시험의 부정행위자는 전과목을 무효로 하며, 시험 합격 후 부정 행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18조(졸업 종합시험 관리위원)** ① 해당 학부(과)장은 소속학부(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졸업 종합시험 관리위원을 구성하여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부(과)장은 매년 종합시험 시행시마다 필요한 출제위원, 채점위원, 감독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금지급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규정하기 위하여 학생종합복지위원회를 운영한다.

## 제2장 장학금의 종류

**제3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구분은 등록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내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기탁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1. 예원 장학금
2. 특별 장학금
3. 신입우수 장학금
4. 체육특기 장학금
5. 예능 장학금
6. 보훈 장학금
7.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8. 학부 성적우수 장학금
9. 일반 장학금
10. 근로 장학금
11. 공로 장학금
12. 형제 재학 장학금
13. 후생복지 장학금
14. 외국인 장학금
15. 동창회 장학금
16. 산학장학금
17. 해외유학 장학금
18. 서영춘 장학금
19. 특성화 장학금
20. 총장 장학금<신설 2013.12.4>
21. 희망 장학금<신설 2013.12.4>
22. 교육기부 장학금<신설 2013.12.4>
23. 컬처라이센싱 장학금<신설 2013.12.4>
24. 장애우가정 장학금<신설 2013.12.4.>
25. 나눔장학금<신설 2016.2.15>
26. 창업지원장학금<신설 2016.2.15>
27. 국가장학금유형2(교비)장학금<신설 2016.2.15>

**제5조(교외장학금)**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 내용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제시요건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3장 장학금 선발

**제6조(선발대상)**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인정이수학점인 기준학점을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 장학지급사정에 따른 기준학점은 최저 9학점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해당 종류별로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3. 기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재 입학자
2.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3. 기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

**제9조(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를 선정한다.
2. 장학대상자의 가계사정을 각별히 고려한다.
3. 장학대상자 중 면담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되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 가. 총점순위
  - 나. 100점 환산 순위

**제10조(장학생 배정)** ① 매학기 학부(과)에 배정하는 장학금 지급인원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학부(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다만, 장학금지급이 결정된 자는 재학생수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근로장학생은 근무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학부(과)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자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신청서에 장학종별 및 해당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을 경유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직계자녀장학금 :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자녀증명서(입학 및 복학시에 해당),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3. 형제 재학장학금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12조(추천)** 전공주임교수는 장학금 수혜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순위를 결정한 후 학부(과)장을 경유 교학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제13조(장학생 교체추천)**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 중 교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학부(과)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기간 이전에 교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확정)** 교학지원처장은 각 전공주임교수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성적 및 해당 사항들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제15조(장학생 명단작성 및 공고)** 교학지원처장은 확정된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학부(과)장에게 송부하고 장학생 명단과 장학금 지급내역 등은 학보에 게재 공고 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장학생의 관리)** ① 매 학년 초 근무 부서의 장은 근로장학생의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을 제시한 근로장학생 추천요구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인원배정을 요청한다.

② 교학지원처장은 각 부서에서 요청된 근로장학생 인원을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 배정한다.

③ 교학지원처장은 매월 말일에 근로학생의 소속부서장이 제출한 근무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근로장학생의 월 보수지급표를 작성, 총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지원처에 지급 의뢰한다.

④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수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제한

**제17조(지급시안 작성)** 교학지원처장은 매 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내장학금 학부(과)별 배정표
2. 장학생 선정기준
3. 전학기 장학생 학부(과) 학년별 현황
4. 장학금 예산액
5. 이종추천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

**제18조(장학지급금액 결정 및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금액 결정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유효기간은 해당학기에 한 한다.

**제19조(교내장학금 종류와 지급액)**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원 장학금** : 가.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수업료 전액을 감면하되, 신입생 차석 합격자에게도 수업료 전액을 1년간 지급할 수 있다.  
나. 위 가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전 학기성적을 평점평균 3.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0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2. **특별 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입학자와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입학취업실에서 추천한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특별장학의 종류와 지급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3. **신입우수 장학금** : 신입생중 학부(과)별 수석, 차석 합격자에게는 입학학기동안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2.15>

4. **체육특기장학금** : 개인기능이 우수하여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5. **예능 장학금** : 당해 연도에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예능(음악, 무용, 미술)대회요강을 준하여 동일계열 입학자에게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보훈 장학금** :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 학기말 학업성적이 평균평점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가.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성적 등에 제한 없이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 보훈대상자의 직계 자녀는 교비에서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

### 7. 교직원 직계 장학금

가. 본교 및 부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5년 미만은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를 지급한다.)<개정 2013.12.4>

1종 : 재학중인 직계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100%를 지급한다.

2종 : 재학중인 직계자녀가 2인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를 지급한다.(단,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기타 직원의 경우에는 1,2종의 50%를 적용한다.)

나.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이를 준용한다. 단, 동일학생이 12학기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8. **학부 성적우수 장학금** : 재학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중 성적순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9. **일반 장학금**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중 학부(과)장의 추천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성적 평점평균 2.0 이하자, 징계자는 추천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2.15>

**10. 근로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11. 공로 장학금** :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바탕하여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교학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권위 있는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자

나. 교내·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기타 교내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 형제 재학 장학금** : 당해 학기에 형제가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개정 2013.12.4>

**13. 후생복지 장학금** : 교내 각종 후생시설에서 얻은 순 이익금 중 일부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교학지원처에서 접수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각 학부(과)장에 추천 의뢰하여 선발한다.

**14.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를 따로 정한다.

**15. 동창회 장학금** : 본교 동창회 운영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총동창회에서 선발한다. 다만,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총동창회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16. 산학장학금** : 가계가 곤란한자를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17. 해외유학 장학금**

가. 대학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외에 유학을 희망하는 자가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 국외의 자매대학 또는 희망대학에 교비 장학생으로 해외유학의 특전을 부여한다.

나.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8. 서영춘 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생활이 곤란한 자를 각 학부(과)장 추천을 받아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9. 특성화 장학금** : 학부(과) 특성화에 부합되는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는 학부(과)장 추천과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 총장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승인 한자에 대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으로 우수한자,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한 자, 학업태도가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자, 그 밖에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높여 특별장학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3.12.4>

**21. 희망 장학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중 매학 기 초 해당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신설 2013.12.4>

**22. 교육기부 장학금**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사업(교과목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특기적성 교육 및 멘토링활동 등)을 참여하는 학생(학기당 최소 10시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신설 2013.12.4>

**23. 컬처라이센싱 장학금** : 학기 중 공인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전공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3.12.4>

**24. 장애우가정 장학금** : 학생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장애를 가져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단,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한다.)<신설 2013.12.4.>

**25. 나눔 장학금**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분위에서 2분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내장학금의 중복수혜를 허용한다.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2.15>

**26. 창업지원 장학금** : 본교에서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신설 2016.2.15>

**27. 국가장학금 유형2(교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응하는 교내장학금으로 장학금액과 장학대상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2.15>

**제20조(교외장학생 추천)**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부(과)에 이첩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 명의로 발송한다.
2. 해당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부(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교학지원처장이 학부(과)를 선정하여 배정한다.
3.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행정지원처에 입금시킨 후 동액수의 장학금 지급증서를 발급한다.

**제21조(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교학지원처는 그 명부를 작성하고 장학증서는 학부(과)장이 학생에게 직접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 및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장학증서로 수여하며 지급액은 당해 학기 납입금액에서 학비를 감면한다.

**제22조(유효기간)** 모든 장학금은 본인의 신청 및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학기에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23조(장학증서 현금화 방지)** 교학지원처에서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증서는 등록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

**제24조(지급결과보고)** 교학지원처장은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제25조(이중수혜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근로학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② 1인이 2종이상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 할 수 있다.

③ 교내장학금 수혜총액은 수혜학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26조(실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자
3. 인정 이수학점인 기준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종별에 따라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인 자
5.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
6. 이중수혜자인 경우

**제27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수혜자격이 상실되며, 장학대상 휴학자일 경우 미등록일 경우 수혜승계는 되지 않는다.

**제28조(시행규칙)** 이 규정 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준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통해서 항상 준비해야 할 사항 및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학생은 따로 이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학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증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적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규제서식)**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증은 가로8.5cm 세로5.4cm 크기로 한다.
2. 제1면은 학교로고, 사진, 소속학과, 학번, 성명, 바코드를 기재하여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3. 제2면은 은행카드의 기능을 한다.

**제5조(발급권자)** 학생증은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제6조(발급)**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학생증을 교부받아 졸업시까지 사용한다.

**제7조(등록)** 학생은 학생증에 등록을 완료한 학기의 등록 확인을 교학지원처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한 학생은 그 유효 기간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휴대의무)** ①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시험, 도서관 이용, 기타 교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한 때에는 학생처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교학지원처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재발급절차)** 학생증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발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생증재발급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
2. 교학지원처는 학생증재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재발급 한다.
3. 학생증 재발급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제11조(학생증반납)** 제적, 졸업생의 학생증은 교학지원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활동

**제12조(단체의 조직)** ① 학생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초(3월)에 단체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45조에 의거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단체의 등록 및 활동을 일체 금한다.

③ 기타 학생단체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허가)** 전조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활동기간 재등록)** ① 학생단체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속 활동을 희망할 때에는 매 학년 초(3월)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등록신청이 없는 단체는 해산한 것으로 한다.

③ 신규학생 단체는 1년간 가 등록하여야 하며, 가 등록기간 중 학칙 및 관계규정을 위반 할 때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제15조(변경신고)** 등록된 학생단체의 규칙 및 기타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도교수의 승인 후 교학

지원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6조(활동금지기간)** 학생의 단체활동은 정기시험 7일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는 할 수 없다.

**제17조(허가취소)** 각 학생단체의 활동이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학칙 및 준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본교의 품위를 손상 또는 교내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그 단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장 집회·게시·인쇄물 배포

**제18조(집회신고)** 본교 학생단체 행사 또는 집회 및 결사는 집회신고서(소정양식)을 사전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집회허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교학지원처에 신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광고물 허가)** 교·내외의 학생 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 세칙 및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1조(게시물 게재)** 허가된 광고 또는 게시물(간판, 프랭카드 포함)은 교학지원처장의 검인을 받고, 게시 장소와 게시 시간을 지정 받은 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자가 게재기간 종료시 책임 제거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게시물)** 본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게시 인쇄물 배포시 원안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제5장 행사참여

**제23조(교내행사)**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행사 참석이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학생은 일체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24조(교외행사)** ① 학과별 학술 강연, 운동경기 기타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장은 교학지원처를 경유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실시하는 교외교육실습 및 견학 등은 소속 학부(과)장이 교학지원처를 경유 교학지원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없는 방학기간중의 교외교육, 견학 등은 소속학부(과)장이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대외행사금지)** 정기시험 기간 중에는 일체의 대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행사의 중요성으로 행사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할 수 있다.

### 제6장 학적부 기재변경

**제26조(변경)** 학적부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변경
2. 생년월일 변경
3. 본적지 변경
4. 주민등록 변경

### 제7장 보칙

**제27조(예의)** 학생은 교·내·외의 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일반사회인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며, 학생상호간은 물론 교직원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인격의 존중과 품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개정)** 이 준칙의 개정은 교학지원처장,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 제42조에 의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예원예술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상벌 교화 선도함으로써 생활지도의 성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지도)** 상벌의 지도 실시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제3조(원칙)** 포상은 공개로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주관)** 학생상벌에 관한 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주관한다.

## 제2장 포상

**제5조(포상의 구분)** 포상은 학업상, 모범상, 공로상, 창조상, 체육상으로 나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학업상)** 학업상은 본교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선량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모범상)** 모범상은 각종 선행으로 교내외서 타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8조(공로상)** 공로상은 사상이 건전하고 각 방면으로 본교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9조(창조상)** 창조상은 학술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체육상)** 체육상은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 제3장 징계

**제11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근신은 3일이상 7일이내
2. 유기정학은 7일이상 30일이내
3. 무기정학은 30일이상

**제12조(징계의 발의)** ① 전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필요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부

②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처분 요구학생에 대한 징계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종합복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학생종합복지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16조의 징계사항을 결정한다.

**제13조(징계 중 학생지도)**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담당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징계학생의 권리)**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생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 받은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15조(징계해제의 요청)**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징계의 해제를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사항)** 징계사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근신에 해당되는 사항
  1.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동으로 결례한 자

2.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및 교내의 환경을 더럽힌 자
3. 식당 및 휴게실의 풍기를 문란케 한 자
4.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5. 허가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교내의 지정장소에 붙인 자
6. 교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7. 단체행사에서 무단이탈한 자
8.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유기정학에 해당되는 사항

1. 2회 이상 근신처벌을 받은 자
2. 교내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3. 학우에게 협박 폭행한 자
4. 교내에서 음주하고 소란을 피운 자
5. 학생신분을 망각한 자
6. 교내에서 도박을 행한 자
7.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사항

1. 2회 이상 유기정학을 받은 자
2. 이유 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3. 학우에게 집단폭행한 자
4. 교내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또는 외부로 반출한 자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6. 교내에서 도둑질을 행한 자
7. 상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학기 성적전부를 무효로 한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적처분에 해당되는 사항

1. 2회 이상의 무기정학을 받은 자
2.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한 자
3. 총장의 허가없이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허가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교직원을 폭행한 자
6. 폭행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상처를 입힌 자
7.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8. 성행이 불량하거나 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7조(포상과 징계절차)**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포상절차

1. 교학지원처장은 제 5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2. 교학지원처장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계절차

1. 교학지원처장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다.
2. 교학지원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해명이나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으로부터 징계학생에 대한 징계해제 의견서가 제출되면, 교학지원처장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통보)** 교학지원처장은 포상과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바에 따른다.

**제21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단체 등록·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45조 및 학생준칙 제3장에 의하여 예원예술대학교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단체란 본교 학생회 산하 부서에 있거나 또는 각 동아리, 향우회, 동문회 등을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임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져야 한다.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위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① 학생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승인신청서(소정양식)
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소정양식)
3. 회칙
4.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5. 발기인 명단
6. 발기인총회 회의록

② 학생단체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로서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구비서류를 작성,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09.01>
2.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단체 및 기존단체는 재등록 할 수 있다.
3.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모든 단체는 그 기간 중 건학이념이나 목적에 위배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

**제5조(효력)** 제3조, 제4조에 의거 학생단체등록을 필한 단체는 교학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임원선출, 임기, 결원보고)** ① 각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교학지원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 임기와 같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즉시 보선하여 그 결과를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단체로부터 추대 받아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4>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의 단체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향우회, 동문회 중 1개만 겸직이 가능하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의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지원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10일 이내에 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취임승낙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지원처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동아리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지정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단체운영의 재정은 회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학지원처장은 필요한 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체지원을 위한 학생회비 및 학교보조금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배정하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본교 설립목적과 전통의 확립성의 부합성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
3. 과거 1년간 행사실적<개정, 2007.09.01>
4.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5. 당해 연도 행사계획의 건전성

**제9조(단체의 활동)** 제 단체의 활동시 준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된 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모든 행사는 제10조에 의한 집회허가원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부(과) 별 교내 학생단체 행사는 소속 학부(과)장이 허가하고, 이 사항을 교학지원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단체의 집회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때에는 해당 학부(과)장의 확인과 교학지원처의 수업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야간 옥외 집회 시에 횃불,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 사전에 교학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티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사전지도와 교학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 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6. 모든 게시물은 규격1호(53×76), 2호(90×60)로 한정하고 교학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게시판에 부착한다.
7.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8. 각 단체는 각 행사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집회허가원의 제출절차)** ① 학부(과)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

1. 학생대표가 학부(과)장 동의를 받아 집회허가원 및 기타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
2. 학생회비 요청시에는 교학지원처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학생단체(동아리) 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

1. 학생단체 대표자는 지도교수로부터 집회허가원의 동의를 받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2. 학생회비 요청 시에는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③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 :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 단체대표자는 해당 지도교수의 집회 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허가원 및 기타서류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집회허가원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① 단체의 정기(월례 및 주례) 집회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며, 별도의 집회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교내집회는 5일전, 교외집회는 7일전에 집회허가원을 제출한다.

③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20일 전에 행사계획서, 예산서, 대표학생 서약서, 참가교 동의서 그리고 홍보물제작 배부허가원을 첨부한 집회허가원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게시물 부착)** 본교 학생 및 단체의 집회에 관한 게시물 부착은 학생준칙 제4장 및 학생홍보(게시)물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간행물 발간허가신청)** ① 본교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은 인쇄물 발간 허가원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인쇄, 배부는 학칙 제48조에 의거한다.

③ 기타 자세한 것은 학생홍보(게시)물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4조(봉사활동)** 제 단체의 봉사활동시 준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은 수업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회에 등록된 단체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개시 20일 전에 계획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봉사활동의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작성, 관련부서를 경유 교학지원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은 학교의 지시나 사전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5. 봉사활동시 학교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활동은 할 수 없다.
6. 봉사활동 완료 후 4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단체의 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시킨다.

1. 학칙, 학생준칙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단체
2. 교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
3.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4. 단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여 목적 외 활동을 하는 단체
5.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폐합 할 수 있다.

③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 사유와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결의(재적위원 과반수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가 결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학력증명서 발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학력 및 기타사항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졸업, 수료, 졸업예정, 재적, 재학, 성적, 기타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7호]에 의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개정2002.01.07><개정2007.09.01><개정2008.09.01>

**제3조(증명서 발급명의)**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개정2002.01.07><개정2012.12.21>

**제4조(증명서 발급신청)** ①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창구, FAX민원, 인터넷증명발급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만을 발급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증명서 발급절차)**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한다.

**제6조(발급된 증명서의 보관처리)** 민원창구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은 학적부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오기, 누락,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소정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등재 할 경우에는 신·구 사항을 병기 표시한다.

**제8조(학적부 멸실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① 학적부가 멸실되어 증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증명서는 재적당시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관보, 교지, 회보에 한한다)와 동창생 2인 이상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증명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때에 발급한다.

② 성적이 멸실된 자에 대하여는 성적멸실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증명수수료는 본교 제증명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7)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학증명서] <서식변경, 2012.12.21>

제 호

# 재 학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부(과) :

학 년 :

학 번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취급자인



제 호

# 재 적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부(과) :

재적기간 :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현재까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취급자인

제 호

## 휴 학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과(부) :

휴 학 기 간 :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현재까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취급자인

제 호

# 졸업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부(과) :

졸업일자 : 200 년 월 일

학위종별 :

학위등록번호 : 예원예술대 (학)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취급자인

제 호

# 졸업예정 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과(부) :

졸업예정일 : 200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취급자인

제 호

# 수료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과(부) :

입학일자 : 20 년 월 일

수료일자 : 20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취급자인

## 성 적 증 명 서

No. 1

학부						전공						학번						성명					
입학	년 월 일					졸업	년 월 일					학위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년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성적	등급	학년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성적	등급	학년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성적	등급			
신청학점 :			취득학점 :			평점평균 :																	
<p>- 이 하 여 백 -</p>																							
							총신청학점		총취득학점		평점합계		평점평균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전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의 정의, 담당기구 및 처리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또는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3. 1호 또는 2호에 불응·반박함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및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교직원, 학생, 시간강사 등 전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②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및 기타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성폭력의 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권리
2.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또는 거부할 권리
3. 특정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④ 당사자의 대리인 및 사건상황을 신고한 사람도 제1항과 제2항에 준거한 보호를 받는다.

**제5조(전담기구)** ① 이 규정에 관련된 업무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성상담실(이하 "성상담실"이라 한다)에서 전담한다.

② 성상담실은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사를 수행한다.

**제6조(신고인과 신고기구)** ①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사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성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기타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각급 학생회, 학내 여성단체 등에 접수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되, 이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사항 일체를 성상담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2장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

**제7조(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의 설치)** 이 규정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 또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상담실장 및 교학지원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학지원처장 또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생위원을 2인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단, 학생위원은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개정 2007.3.15>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성상담실에서 조사·보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또는 결정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공개사과, 봉사, 배상 등을 명령
4. 기타 사건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및 결정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으로 하며, 신고 후 6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6호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 축적을 통해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 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근로장학생 선정 기준)** ①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자
  4.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이 경우는 본교 배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 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본교에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 교수추천 등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면제·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4조(근로장소)** ①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공 관련시설 :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등 교내외 시설
  2. 비전공 시설 : 장애우,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학생지원 시설(사업)
- ② 전공 관련시설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내행정실 등의 행정지원부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장학생 지원업무를 위한 근로장학생 2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선정절차)** ① 교학지원처에서 근로장학생 선정계획에 따라 신청 공고를 한다.

- ② 근로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신청을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3. 기타 교학지원처에서 정하는 서류

**제6조(근로기간 및 시간)** ①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학기 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에 따라 방학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로 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액 산정)** 근로장학생의 시간당 지원금액은 노동부가 고시하는 매년도 시간당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매월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자원에 의하여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월 미만 단위로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관리)** 본교에 교부된 근로장학 지원금은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 ① 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실태는 반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결과는 익년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9. 2. 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교조 • 교화 • 교목

### ■ 교조 : 비둘기



활짝 핀 손과 눈은 문화, 예술을 선도하는 예원예술대학교의 당당함을 나타내며, 21세기 새로운 예술의 중심을 응시하고 있는 눈과 그 예술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손은 예원인의 다양한 개성과 창조적 인간을 나타낸다.

색상은 전통색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였으며, 필드의 회색은 예술의 무한 공간이며, 흑백논리의 이분법이 아닌 다양한 사고를 수렴, 표현하는 중도의 색상을 선택하였다.

### ■ 교화 : 장미



모든 꽃 중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꽃이며, 역사적으로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활력이 넘치는 장미와 같이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세계속에 화려하게 꽃 피우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 ■ 교목 : 왕벚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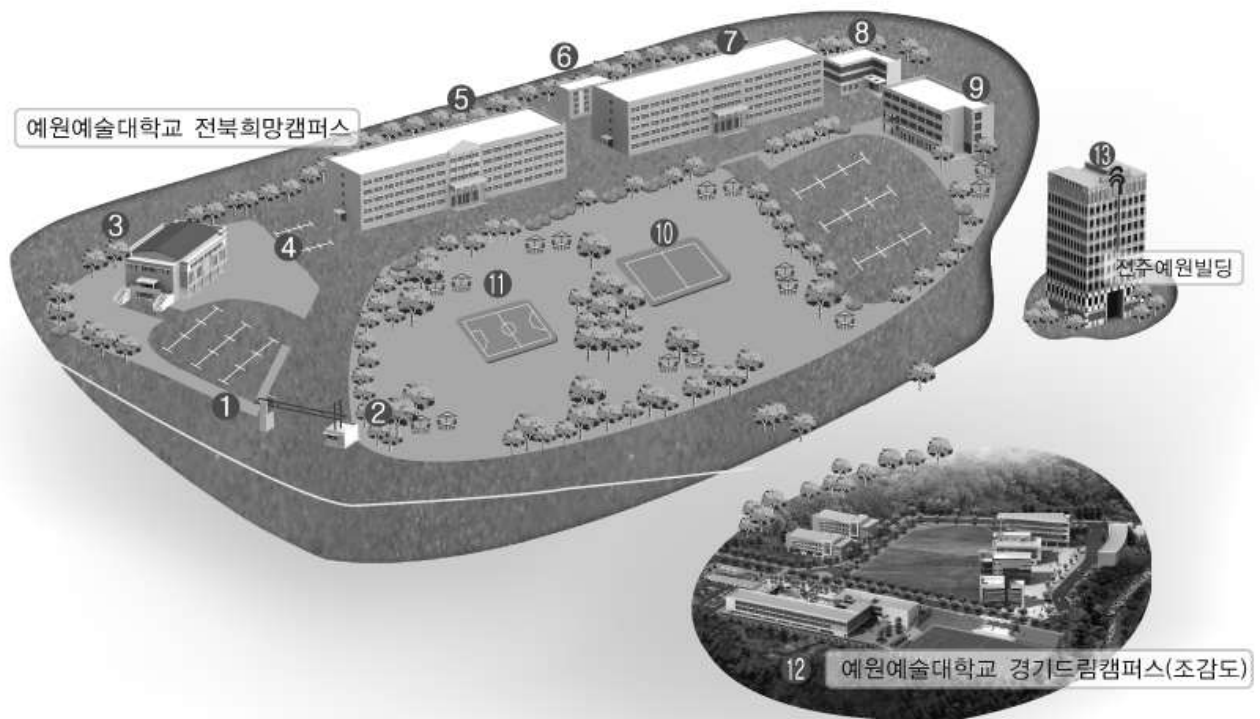


벚꽃은 일본의 나라꽃인줄 알고 있으나, 왕벚나무는 그 중 세계에서 유일한 자생지인 제주도에서 올벚과 산벚의 자연교잡종으로 추정된다. '젊은 날의 고뇌'를 상징하는 벚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진면목을 나타내주는 꽃이다.

# 예원예술대학교 CAMPUS MAP

## 예원예술대학교

- ① 정문      ② 경비실      ③ 웅비관      ④ 농구장
- ⑤ 예지관      ⑥ 조형 실습실      ⑦ 창조관      ⑧ 디지털정보관
- ⑨ 예문관      ⑩ 테니스장      ⑪ 풋살경기장      ⑫ 예원예술대학교 경기드림캠퍼스(조감도)
- ⑬ 전주예원빌딩



# 예원예술대학교 교가

진몽규 작사  
이영철 작곡



오 원천 출 려출-러 섬 진 강을 이루 고



하 늘 에 별 - 들 - 은 모여 하 나가 된 다 감 팔



은 - 별 자 리 를 따 - 라 대 지 를 - 적 시 고 별 들



은 - 이 땅 에 - 아 름 다 음 을 - 노 래 하 네 국 가



인 류 사 회 에 장 조 실 천 봉 - - - 사 아 -



세 계 로 뻗 어 나 가 는 예 원 예 술 대 학 교



교 예 원 예 술 대 학 교